

研究報告書 2001-25

未申告 社會福祉施設の
實態分析及 改善方案

金美淑

趙娟淑

鄭茂晟

鄭熙貞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란 시설생활자들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시설로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도권 밖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미신고 시설은 제도권 내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신고시설들의 엄격한 입소기준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할 수 없게 된 층이 많은데,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복지 수용 능력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법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 결과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시설 설비나 장비가 미비하고, 전문 사회복지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우며,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향후 독거노인의 증가, 가족해체의 확산, 아동 유기의 증가, 후천적 장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소규모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소규모시설이 많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 및 양성화, 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생활인의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등을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분야에서 매우 뜻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향후 미신고 시설의 운영 개선방안이 도출되고, 요보호대상을 위한 질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는 본원의 金美淑 責任研究員의 책임하에 명지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 研究員 趙娟淑 博士, 가톨릭대학교 社會福祉學科 鄭茂晟 教授, 그리고 본원의 鄭熙貞 研究員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각 장의 구성과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1章 序論(金美淑)

2章 未申告施設에 대한 理論的 考察(金美淑, 趙娟淑, 鄭茂晟)

3章 未申告施設 實態調査 結果(趙娟淑, 鄭熙貞, 金美淑)

4章 未申告施設 改善方案(金美淑, 趙娟淑)

5章 結論(金美淑)

본 연구는 시·군·구에서 파악한 未申告 社會施設에 대한 전수를 우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과의 도움과 시·군·구 사회복지과 담당자 공무원들의 도움이 컸다. 이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實態調査가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아울러 사회의 한구석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으면서 조사에 응해주신 未申告施設長님에게 感謝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원고를 검독해 주신 卞俗榮 研究委員, 姜惠圭 責任研究員께도 감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지 연구원의 公式적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1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 長 鄭 敬 培

目 次

要 約	11
第1章 序 論	49
第1節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49
第2節 研究內容	51
第3節 研究方法	53
第2章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理論的 考察	56
第1節 社會福祉施設의 概念 및 設置基準	56
第2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概念 및 發生背景	88
第3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存續理由	91
第4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限界	93
第3章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調查結果	97
第1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實態調查 結果	97
第2節 事例調查 結果	154
第3節 未申告 施設 問題點	159
第4章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改善方案	167
第1節 施設 陽性化	167
第2節 人力 및 프로그램 支援	171
第3節 施設 改善	174

第4節 未申告 施設 實態把握 및 豫防	176
第5章 結 論	178
參 考 文 獻	180
附 錄	183
附錄 1.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調査票	185
附錄 2. 主觀式 問項 應答 結果: 未申告施設에 대한 政府 建議事項	200
附錄 3. 老人住居福祉施設의 施設基準 및 職員配置基準 (第17條 第1項 關聯)	226
附錄 4. 兒童福祉施設의 施設基準(第11條 關聯)	240
附錄 5. 障礙人福祉施設의 設置·運營基準(第33條 關聯)	248
附錄 6. 母子福祉施設의 施設基準(第10條 第1項 關聯)	282
附錄 7. 浮浪人福祉施設設置·運營規則	287

表 目 次

〈表 1- 1〉 實態調査의 調査指標	52
〈表 1- 2〉 事例調査 對象 施設(20個所)	55
〈表 2- 1〉 年度別 社會福祉生活施設 施設數 및 生活人數	85
〈表 2- 2〉 類型別 施設, 生活人 및 從事者 數	86
〈表 2- 3〉 法的 社會福祉施設의 種類	87
〈表 2- 4〉 無許可 社會福祉施設數(1996)	91
〈表 2- 5〉 申告 및 未申告 施設 增加 推移	92
〈表 3- 1〉 申告 및 未申告 施設 比較	98
〈表 3- 2〉 未申告 施設의 類型	99
〈表 3- 3〉 混合施設의 類型 및 分布	100
〈表 3- 4〉 서비스 提供形態에 따른 未申告 施設 種類	101
〈表 3- 5〉 地域別 施設分布	102
〈表 3- 6〉 未申告 施設 設立時期	103
〈表 3- 7〉 施設 運營動機	104
〈表 3- 8〉 施設 運營主體	105
〈表 3- 9〉 運營主體別 施設 運營 動機	105
〈表 3-10〉 主要 프로그램(重複應答)	106
〈表 3-11〉 生活人數의 分布	107
〈表 3-12〉 地域別 生活人數	108
〈表 3-13〉 施設類型別 生活人 規模	109
〈表 3-14〉 平均 生活人數	110
〈表 3-15〉 國民基礎生活保障 受給者 分布	110
〈表 3-16〉 生活人 對比 國民基礎生活保藏 受給者數 比率	111

〈表 3-17〉	申告施設에 入所하지 않은 理由	112
〈表 3-18〉	登録 및 未登録 障碍人數	113
〈表 3-19〉	生活人 年齡 分布	114
〈表 3-20〉	緣故者 比率	115
〈表 3-21〉	入所經路	116
〈表 3-22〉	平均 入所期間	116
〈表 3-23〉	施設의 規模	118
〈表 3-24〉	平均 施設 規模	119
〈表 3-25〉	施設具備 與否(‘有’의 比率임)	120
〈表 3-26〉	建物 許可有無別 便宜施設 具備程度	121
〈表 3-27〉	建物の 所有形態	122
〈表 3-28〉	建物の 許可 有無	122
〈表 3-29〉	建物 許可有無別 施設의 形態	123
〈表 3-30〉	建築 後 經過時間	124
〈表 3-31〉	未申告 施設 所在地域 規模	125
〈表 3-32〉	施設 所在地域의 特性	125
〈表 3-33〉	建物 許可有無別 施設의 安全性	126
〈表 3-34〉	2000年度 平均 收入 및 支出 內譯	127
〈表 3-35〉	收益事業 施行與否	128
〈表 3-36〉	年間 後援者數	129
〈表 3-37〉	1人當 月平均 生活費	130
〈表 3-38〉	負債 有無	131
〈表 3-39〉	負債를 갖게 된 理由	131
〈表 3-40〉	財政 充分程度	132
〈表 3-41〉	施設長의 一般的 特性	133
〈表 3-42〉	施設長의 資格證 所持與否 및 經歷	136

〈表 3-43〉	雇傭形態別 從事者數	137
〈表 3-44〉	從事者 月平均 賃金	138
〈表 3-45〉	從事者 年俸額 比較	139
〈表 3-46〉	從事者의 主 勤務形態	140
〈表 3-47〉	從事人力의 充分性	141
〈表 3-48〉	自願奉仕者 年人員	142
〈表 3-49〉	自願奉仕者의 主要 奉仕 內容(예의 比率임).	143
〈表 3-50〉	自願奉仕人力 充分程度	144
〈表 3-51〉	申告施設로 轉向意向	144
〈表 3-52〉	申告施設로 轉向을 원하지 않는 理由	145
〈表 3-53〉	申告施設로의 轉向 困難 理由	146
〈表 3-54〉	申告施設 設置基準에 대한 見解	147
〈表 3-55〉	未申告 施設의 어려운 점	148
〈表 3-56〉	未申告 施設의 좋은 점	149
〈表 3-57〉	他施設과의 關係	150
〈表 3-58〉	運營主體別 他施設과의 關係	150
〈表 3-59〉	未申告 施設에 대한 住民의 認識	151
〈表 3-60〉	運營主體別 行政機關의 態度	152
〈表 3-61〉	行政機關으로부터 받는 支援 內容	153
〈表 3-62〉	가장 원하는 支援分野	153
〈表 3-63〉	事例調查施設 運營主體 및 類型	155
〈表 3-64〉	事例調查施設 施設 建物 形態 및 問題點	156
〈表 3-65〉	事例調查施設 財政現況	157
〈表 3-66〉	事例調查施設 申告意向	159

그림 目次

[그림 4-1] 未申告 施設 改善 事項 및 效果	169
----------------------------------	-----

要約

第1章 序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1997년 8월 「社會福祉事業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였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 이로써 기존에 무허가 시설을 陽性化하려 하였고,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호를 開放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 사회복지시설이 신고제로 바뀐 후에도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상의 변화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김복일, 2000).
- 1996년 保健福祉部 實態調査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수용시설)의 36% 정도가 미신고 사회복지수용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 최근의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집계되어 지난 몇 년간 사회복지시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음.
- 미신고시설은 公式的 사회복지시설의 補完的 機能과 役割을 하고

있음.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입소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脆弱階層 福祉對象者를 수용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그런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와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대안도 부족한 상태임.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수에 미신고 시설에 대한 實態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첫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유형, 설치기준에 대한 理論的 考察
 - 둘째, 미신고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한 現況 및 問題點 검토
 - 셋째, 미신고 시설의 陽性化 및 효과적 운영 방안 등 改善 方案 마련

2. 研究內容

- －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유형, 신고기준에 대한 理論的 考察을하였음.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아울러 각 시설의 申告 基準을 알아보았음.
- － 두 번째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實態 把握으로 시설일반현황, 시

설 현황, 재정 현황, 인력, 신고의향, 타시설과의 관계, 요망사항 등을 살펴보았음.

- 마지막으로 이론적 고찰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改善方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여기에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陽性化 方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지원방안, 미신고 시설 양산 예방 방안 등이 포함됨.

3. 研究方法

-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뉨.
 -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역할 및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問題點에 관한 文獻研究임.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및 역할 검토하였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존의 연구 문헌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파악하였음.
- 두 번째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實態調查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미신고 시설명단을 사용하여 미신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총 수거된 설문지는 731부로 설문 회수율이 89%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거율을 보이고 있음. 이중 이용시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4개소를 포함시켜 총 637개소 임.
 - 分析對象(unit of analysis)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응답을 통해서 시설 현황 파악하였음.
- 아울러 미신고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파악을 위해서 事例研究를 병행하였음.

- 연구진 3인과 보건복지부 직원 4인이 4팀을 구성하여 총 미신고시설 19개소(팀당 5개소)를 방문하여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한 검증과 함께 시설의 여건을 파악하였고, 실태조사에서는 파악하지 못한 사항을 알아보았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전문가, 시설 관련자, 보건복지부 공무원과의 政策懇談會를 개최하였음.

第 2 章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理論的 考察

1. 社會福祉施設의 概念 및 設置基準

가. 社會福祉施設의 概念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③에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定義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Goffman(1961)은 사회복지시설이란 시설생활자를 어떤 특수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강제력을 갖춘 사회적 제어장치라고 정의함.
 - 미국의 NASW(1987)의 社會福祉辭典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사회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나 시설로 규정함.
 - 이영희(1996:59)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심신의 미발달이나 미성

숙, 장애 혹은 노화 등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피하거나 자립이 곤란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부양기능을 대신하는 시설이나 설비 및 직원 운영조직'이라고 함.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시설이란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社會問題를 갖고 있거나 사회문제를 갖게될 危險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들은 ① 클라이언트 중심적이어야 하고, ② 조직구조가 탄력성이 있어야 하며, ③ 전문적인 조직이 되어야 함.

나. 社會福祉設施의 變遷

- 사회복지시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설의 형태와 보호의 내용이 變化되어 오고 있는데, 그 變遷過程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음(박태영, 1995).
 - 첫째, 社會防圍的 단계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억압과 격리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던 시기임.
 - 둘째, 社會保障的 단계로서 시설보호는 최저생활의 보장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시설생활자가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의 집단시설에서 단독주택(cottage) 형태의 시설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임.
 - 셋째, 社會福祉的 단계로서 사회복지시설은 보호의 連續體(care continuum) 안에서 하나의 선택 기제임.
- 현재 우리 나라의 시설보호는 수급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둘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施設의 設置基準

가. 施設의 設置 및 運營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은 1998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음.
 - 동 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단, 精神療養施設과 교호시설은 개인은 불가능하고,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나. 施設 設置基準 및 必要書類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또한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시감독과 주기적인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設置 基準은 이후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각 법의 하위에 있는 시행규칙에 따로 명시되었음.

다. 施設의 改善, 停止, 閉鎖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의 달성이 되지 않아 시설이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등은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할 수 있음.

3. 社會福祉施設 類型別 設置基準

- 사회복지시설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類型化 할 수 있음.
 - 첫째는 사회복지시설의 設立 및 運營主體에 따라 공립 및 사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둘째는 서비스의 提供形態에 따라 생활(수용)형, 이용(통원)형, 중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셋째는 費用受納 與否에 따라 有料施設, 實費施設, 無料施設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
 - 넷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주된 機能에 따라 생활시설, 재활(교육, 치료)시설, 작업(근로)시설, 이용시설, 복합기능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섯째는 사회복지 關係法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유형화하는 경우임.
- 여기서는 社會福祉 關係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법상으로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환치자 사회복지귀에 관한 사업 등을 사업을 하는 시설들을 포함함.

가. 老人施設

1) 老人福祉의 理念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위해서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

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2) 老人福祉施設의 種類 및 機能

-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뉨(노인복지법 제 31조).

3) 老人施設의 設置 및 基準

- 노인시설의 設置基準은 시설의 규모,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시설장 및 직원에 대한 배치기준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음.

나. 兒童福祉施設

1) 兒童福祉의 理念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아동은 첫째, 자신 또는 父母의 性別, 年齡, 宗教, 社會的 身分, 財産, 障礙有無, 出生地域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差別도 받지 않고 자라나고, 둘째,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家庭環境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셋째, 모든 활동에 있어서 兒童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권리가 있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정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함(아동복지법 제4조).

-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동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2) 兒童福祉施設의 種類 및 機能

-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이 있음(아동복지법 제16조).

3) 兒童福祉施設의 設置 基準

- 아동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음.

4) 從事者 關聯 事項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법 제18조 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함[시행일 2000.7.13].
- 아동복지종사자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그 직종과 수, 자격기준도 법에 명시되어 있음(법 제19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시행일 2000.7.13].

다. 障礙人福祉施設

1) 障礙人福祉의 理念

- 障礙人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함(장애인복지법 제2

조 제1항).

-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있음(법 제1조). 아울러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해야 함(법 제1조).

2) 障 碍 人 福 祉 施 設 의 種 類 및 機 能

- 장애인시설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됨.

3) 障 碍 人 福 祉 施 設 의 基 準 및 設 備

-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지조건으로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라. 母 子 福 祉 施 設

1) 母 子 福 祉 의 理 念

- 모자가정이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여성과 18세 미만(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함.

- 모자가정이 自立·自活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 융자, 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9년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였음(박태영, 2000).

2) 母子福祉施設의 種類 및 機能

- 모자복지시설의 종류로 모자복지법 제19조에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상담소 등으로 규정됨.

3) 施設의 基準

- 모자복지시설의 입지조건으로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마. 浮浪人施設

1) 浮浪人保護의 理念

-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를 말함(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 제2조).
 - 이들의 보호와 재활을 목적으로 부랑인복지시설을 법적으로 두게 되었음.

2) 浮浪人保護施設의 設置基準

- 부랑인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은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 제11조에 제시되어 있음.

4. 社會福祉施設의 數 및 生活人數

- 사회복지생활시설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1985년에는 총 생활 시설수가 588개소이었는데, 1990년에 664개소, 1995년 778개소, 2000년에 879개소로 증가하였음.
- 생활인수는 지난 15년간 약간의 변동을 보여 1985년 7만 3천여 명에서 1990년 8만명으로 증가하다가 1995년 이후 7만 6천여 명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7만 8천여 명으로 다시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시설 현원은 정원을 밑돌고 있어 아동시설 67.9%, 노인시설 68.6%, 정신요양시설 92.0%, 부랑인시설 95.2% 등임. 각 시설에 있어 생활인수가 정원을 밑돌고 있는 이유는 입소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임.

5.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概念 및 發生背景

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概念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란 시설생활자들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도권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함.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대상자를 수용·보호함으로써 제도권 내의 신고시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점차 증대하는 복지수요에 국가가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할 뿐 아니라, 개별적 복지의 문제를 민간부분이 스스로 담당함으로써 국가의 복지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제임.

나.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發生背景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우리 나라의 복지환경의 특수성에서 비롯한 국가적 측면과 시설의 운영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1) 國家的 側面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환경:
 - 첫째, 1980년대부터 시설의 설치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허용기준은 현실보다 높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산을 가져오게 되었음.
 - 둘째, 국가의 정책 또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양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大型化가 추구하고 있었으며, 재정지원방법에 있어서도 수용인원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추세에 시설의 대형화가 추구되었음. 이러한 기준에 못미치는 소형시설은 미신고시설화 하였음.
 -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지연되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양산됨.
- 이러한 복지여건은 1990년대 이후 복지욕구에 대한 증가와 함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확산을 함께 가져왔음.

2) 施設運營者 側面

- 민간인 시설보호사업이 처음부터 복지시설 본래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慈善과 奉仕로서 시작된 후 복지시설로 된 경우가 많게 됨.
 - 경제적 한계로 시설 생활자 인원의 증원, 시설의 환경개선이나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小規模 施設로 운영되고 있음.

6.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存續理由

- 『社會福祉事業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陽性化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 2001년도 현재 미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로 현재 파악된 것은 637개소임(이 중 4개소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임).
- 시설의 增加比率를 보면 신고 시설은 1995년 778개소에서 2000년 879개소로 13% 증가하였는데, 미신고 시설은 1995년 293개소에서 2001년 637개소로 무려 117%나 증가하였음. 미신고시설의 증가폭은 신고시설의 증가폭의 약 9배임.
- 미신고 시설이 존속하는 이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 우선, 法的 측면에서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이 시설의 設置基準에 未達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運營者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받게 되어 있는데, 미신고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로서 열악한 시설환

경, 영세한 자본, 전문 인력 등의 부재로 평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 신고를 꺼리는 면도 있음.

- 다른 조사에서는(아동소공동체의 경우) 신고에 따른 ‘행정적 규제와 감독이 싫어서’라는 응답도 46.4%로 나타났다.
- 施設生活者 측면에서는 신고 사회복지시설에로의 入所資格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신고 시설은 존속함. 아울러 신고시설이 지역간에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군지역 등지에서는 미신고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

7.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限界

가. 財政의 零細性 및 財政 調達의 限界

- 최해경(1997)의 조사에 따르면, 재정규모에 있어서도 미신고 시설은 주로 1년 지출액이 3천만원 미만이 50% 이상 차지하고, 1억원 미만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재정이 영세함.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의 영세성은 재정조달이 어렵다는 데 그 원인이 있음.
 - 미신고 시설에 들어오는 재원은 자체수입, 민간보조 및 외원보조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부터는 제외됨.
-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다른 문제점, 예컨대 시설설비의 미흡, 전문 인력 확충의 어려움, 프로그램 실행의 곤란 등으로 직접 연계되어 악순환을 겪음.

나. 施設의 未備

- 무분별한 시설운영으로 인한 시설 安全性과 시설의 未備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됨.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주거시설 및 건축물은 가정집이나 교회 시설물, 불법건축물, 버려진 축사, 비닐하우스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로 나타나고 있었음.
- 아울러 시설내의 편의시설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함.

다. 프로그램 實施의 어려움

- 財政調達의 한계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도 어렵게 하여 시설 생활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수반함.
 - 從事人力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는 4.9%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입소자가 비전문인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라. 運營의 不透明性 및 人權問題

- 미신고 시설의 다른 문제점은 시설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생활인의 권익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임
 - 시설이 개방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 생활인들이 지급받는 생계 급여 등의 사용에 대해 시설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생활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도와 감독 밖에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거의 불가능함.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요보호대상들에 대한 인권침해, 노동력 착취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어려움.

第3章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調査結果

1. 未申告施設 一般現況

가. 未申告 施設 數

-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파악가능한 미신고 시설을 전수 조사하였는데, 총 637개의 이용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인수는 13,856명에 이르고, 시설당 평균 생활인수는 평균 21.79명으로 집계되었음.
 - 신고시설은 2000년 현재 전국에 879개소가 있고, 생활인원은 78,625명에 이룸. 생활인수에 있어서는 신고시설의 약 17.6%에 이르고 있음. 미신고 시설은 신고시설보다 시설당 인원이 적은 (신고시설: 89명, 미신고시설: 29명) 소규모 운영체제임.

나. 未申告 施設 類型

- 미신고 시설을 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여러 대상을 같이 보호하고 있는 混合施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212개소, 33.3%). 그 다음이 장애인시설 29.7%(187개소), 노인시설 19.5%(124개소), 청소년시설 4.6%(48개소), 아동시설 4.6%(29개소)의 순으로 나타났음.

- 혼합시설인 경우 ‘노인+장애인 시설’이 66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노인+아동+장애인시설’이 38개소였음. 그 다음은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로 17개소, ‘아동+청소년시설’이 12개소였음.
- 즉, 대부분의 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을 함께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 地域別 未申告 施設 分布

- 지역별 미신고 시설의 분포에 있어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31.6% (201개소)이고, 다음이 서울시 120개소(18.8%), 강원 57개소(8.9%), 경북 39개소(6.1%)의 순임.

라. 設立時期

- 응답한 미신고 시설 627개소 가운데 1960년대 및 그 이전에 설립된 시설은 1.1%, '70년대 설립된 시설 3.2%(20개소), '80년대 22.4% (139개소), '90년대 67.4%(418개소), 2000년대 5.8%(36개소)였음.
- 미신고 시설의 72% 이상이 1990년대 이후 신설되고 있어 미신고 시설의 수는 최근 들어 더욱 급격히 增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마. 運營動機

- 운영동기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가 42.7%(246개소)로 가장 많았고, ‘종교적인 이유’가 29.9%(172개소),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어서’ 21.4%(123개소)로 나타났음.

바. 運營主體

-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55.4%(342개소)로 절반 이상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음. 또한 ‘종교기관’이 31.0%로 조사되었음.

사. 主要 프로그램

- 시설의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수용보호 63.3%, 기타 36.0%, 수용보호만 제공 13.1%, 일시보호 15.3%로 주로 일시보호 및 수용보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용보호 외에 약물치료 13.0%, 물리치료 8.2%에 불과함.

2. 生活人 特性

가. 生活人의 年齡別, 性別 構成

- 연령별로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많은 34.2%로 나타났음. 이 가운데 남성 비율이 17.4%인데 반해, 여성 비율은 46.4%임.
 - 0~12세 연령층이 9.6%, 13~17세의 연령층은 8.1%, 18~35세의 청년층 19.1%, 36~64세 29.0%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6.4%로 남자 17.4%로 월등히 높은데 비해, 그 외의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여자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성별로는 남자 45.8%, 여자 54.2%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더 많았음.
 - 國民基礎生活保障 수급자 수는 총 6,286명으로 집계되었음. 수급자 가운데 남자 47.5%, 여자 52.5%로 여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

게 나타남.

- 전체 생활인 대비 國民基礎生活保障 수급자의 비율은 0%인 경우가 8.9%, 100%인 경우는 12.1%였고, 21%에서 80%의 범위에 54.6%의 분포를 보임. 생활인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평균 52.3%로 생활인의 약 받은 수급자임.
- 미신고 시설의 生活人 수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가장 많은 유형이 11~20인의 소규모의 시설로 33.2%가 해당되었음.
 - 그 다음은 21~50인의 중규모 시설로 28.98%, 6~10인 시설 23.7%의 순임. 최소규모인 0~5인의 시설은 전체의 7.4%에 달하고, 51~100인의 중규모 시설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101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도 7개소(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인은 시설당 평균 21.79명(표준편차 21.48)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나. 登錄 및 未登錄 障礙人 數

- 조사된 전체 장애인은 6,156명으로 시설 총인원 13,856명의 약 44.4%로 추정됨. 일반장애인 출현율 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임.

다. 入所經路

- 연고자 또는 주위사람의 의뢰에 의해 입소한 경우가 56.1%를 차지하고 있어, 미신고 시설 구성원의 약 절반은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입소함을 알 수 있음. 그 외에 종교단체 의뢰가 23.2%, 본인의 자진입소 7.3%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라. 緣故者 比率

- 시설의 생활인 중 연고자가 있는 비율은 전체의 88.5%인 것으로 파악되어 대부분이 연고자가 있었음.

마. 平均入所期間

- 평균입소기간은 1~3년이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5년 27.1%, 6~9년 21.7%인데 비해 1년 미만은 5.9%, 10년 이상도 1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施設現況

가. 施設의 規模

- 대지는 50평에서 100평이 24.3%, 50평 미만이 9.0%로 100평 미만이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00평 이상의 대지를 갖는 시설도 1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평의 경우 30~39평이 1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방수의 경우, 4~6개가 3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이 7~9개 20.1%, 1~3개도 18.0%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입실구조의 경우, 2인 1실이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3인 1실 27.7%, 4인 1실 15.9%로 나타났음.
- 종합하면 조사된 미신고 시설의 평균 대지평수는 638.93평, 평균 건평 110.14평, 평균 방의 개수는 9.3개, 평균 입실구조는 3.19명당 1실이었음.

나. 具備된 設備

- 시설 중 화장실은 97.0%가, 조리실은 91.0%가 구비되어 있었음.
 - 생활 필수시설로서 목욕실은 89.9%, 거실 85.4%, 세탁실 79.1%만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시설로서 도서실, 오락실, 양호실, 상담실 등은 조사시설의 10~20% 정도만이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便宜施設 具備 程度

- 편의시설 충분성은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충분) 가운데 평균 2.6으로 부족한 편이었음.
- 생활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충분성 정도를 건물의 허가 여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 허가시설의 경우 부족하다는 비율이 41.3%, 무허가 시설 62.5%에 허가시설에 비해 무려 21.2%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무허가 시설의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라. 建物 所有形態 및 許可 與否

- 건물의 소유형태는 자가 6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전세 12.2%, 월세 9.9%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체 응답시설의 85.2%가 허가된 건물이었으나 無許可 건물도 14.8%나 되었음.

마. 施設 形態

- 미신고 시설의 시설형태는 ‘가정집과 유사한 형태’가 70.7%를 차지하여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신고시설과 유사한 전형적인 시설’은 17.0%로 소수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바. 建築時期

- 시설이 건축된 지 3~9년 지난 비율이 40.1%로 가장 많았고, 10~19년 32.0%, 20년 이상 19.4%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1990년대 이후부터 미신고 시설이 급증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음.

사. 地域의 特性

- 미신고시설의 지역 규모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45.58% (292개소)가 중소도시에 소재 해 있었고, 그 다음이 대도시로 31.2% (199개소)였고, 군지역도 22.9%(146개소)나 되었음.
- 미신고 시설이 있는 지역의 특성은 농촌지역이 41.1%(258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이 일반 주택가 지역 38.3% (240개소)로 나타났음.

아. 施設의 安全性

- 시설의 安全性에 대해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안전)로 질문한 결과 평균 3.64(표준편차 0.95)로 안전한 편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11.4%의 시설은 불안전하다고 지적하여 이러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음.

4. 財政現況

가. 2000年 收入과 支出內譯

- 2000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조사 한 결과 총 637개의 조사대상가운데 476개의 시설이 응답하였고, 각 항목별로 응답 시설수의 차이가 있었음.
- 수입 총액 평균은 약 1억 1천1백여 만원(자체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초생활급여, 투자수익금, 후원금, 기타의 평균 금액을 합친 액수임)으로 조사됨.
 - 수입분포는 자체부담금 19.8%, 정부지원 비중 10.6%, 기초생활급여로 인한 수익금이 19.7%, 투자 수익금 10.7%, 후원금 26.7%으로 후원금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기타 수익금은 수입총액의 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0년도 한해 지출 평균은 약 8천1백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지출 총액가운데 생계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31.7%로 나타남. 이 밖에 인건비 29.5%, 관리운영비 25.0%로 지출 총액의 절반 이상이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나. 收益事業 施行與否, 後援者 數, 月平均 生活費

- 收益事業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시설은 68.4%로 상당수의 시설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반면, 31.6%의 시설은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간 後援者 수는 1~20명이 가장 높은 비율인 34.8%(165개소)로

나타났고, 100명 미만이 68.1%로 월 평균 후원자 수가 1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00명 이상 후원자가 있는 시설은 전체의 28.8%로 나타났음.

- 1인당 月 平均 生活費는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50만원으로 응답하고 있고, 월 평균 1인당 약 23만원(표준편차: 12.76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 負債現況

- 시설에서 부채를 갖고 있는 시설은 256개소로 전체의 45.1%를 차지하여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시설이 부채를 갖고 있었음.

라. 財政의 充分性

- 시설 財政의 充分性 정도에 대해 70%에 이르는 응답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충분하다는 시설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5. 人力現況

가. 施設長의 一般的 特性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장은 52.4%가 남성, 46.2%가 여성으로 남성이 약간 더 많았음.
- 연령층으로는 40세 이상 50대 미만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7.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 시설장의 學歷으로는 36.8%가 대재/대졸, 그리고 24.8%가 대학원 졸 이상으로 높은 평균 학력을 보이고 있었음.
- 宗教는 기독교 60.7%, 천주교 33.8%로 전체 기독교가 94.5%를 차지하며, 불교 3.9%를 차지하였음. 대부분의 시설장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 종교에 대한 신념 및 소명의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음.
- 시설장의 62.4%가 기혼이며, 미혼은 25.6%로 나타났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1, 2, 3급 포함)을 소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3.8%(88명)에 불과하였음.
- 1990년 이후 2000년 이전에 시설장이 된 경우가 68.2%로 가장 많았으며 1980년 이후 1990년 이전이 18.3%로 그 뒤를 이었음.

나. 從事者

- 從事者數: 한 시설에 정규직 종사자 수는 3명 이하 시설이 전체 70.8%로 대체로 소수임을 알 수 있음.
 - 임시직 중 상근직이나 시간제 고용도 비슷한 분포를 보임.
- 月平均 賃金: 시설 정규직 종사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70~90만원 미만이 26.3%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미만이 25.9%, 50~75만원 이하는 24.8%를 차지하였음.
 - 월 평균 임금 110만원 이상은 20.4%에 불과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主 勤務 形態: 근무형태는 ‘매일 거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

를 넘음.

- 종사인력의 充分性: 시설의 종사인력에 대해서 총 73.9%가 종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분하다고는 단지 4.6%만이 응답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주었음.

다. 自願奉仕人力

- 自願奉仕者數: 연 평균 자원봉사자 인원 50명 미만이 3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50~100명 미만도 14.7%로 나타나, 전체의 56.9% 가량이 150명 미만의 자원봉사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자원봉사 活動 領域: 자원봉사자들의 81.2%가 청소, 취사, 세탁 등의 노력봉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또한 42.6%는 이미용 등의 기술봉사를 담당하고 있었음.
- 자원봉사자 充分性: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 총 54.3%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5.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음.

6. 申告 意向

가. 申告 意向

- 현재의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할 意向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8%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나. 申告 忌避 理由

- 신고기피 이유로 시설이 신고기준 미만이어서(33.0%)가 가장 많았으며, 소규모 운영이 더 효과적이어서(24.9%), 그리고 신고 후 행

정적 규제 및 간섭이 싫어서(14.2%)라는 이유도 들었음.

- 이에 신고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申告施設로의 轉向이 어려운 理由

-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원하나 전향이 어려운 이유로 67.6%가 시설의 규모를 신고기준에 맞추기가 힘들어라고 응답하였음. 또한 12.1%는 재정의 압박으로 사회복지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하였음.

라. 申告基準에 대한 見解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위한 시설 설비 및 규모 기준에 대하여 79.9%가 ‘높다’라고 응답하여 시설 설비 및 규모 기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마. 未申告施設의 어려운 점

- 미신고 시설로서 어려운 점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가 67.6%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에 대한 오해가 많다(13.8%)’, 그리고 ‘후원받기 어렵다(11.0%)’의 순으로 나타났음.

바. 未申告施設의 좋은 점

- 미신고 시설로서의 利點은 첫째, ‘생활인의 입퇴소가 용이하다(31.0%)’, 둘째,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25.3%)’, 셋째, ‘행정업무가 많지 않다(24.2%)’라는 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7. 他施設과의 關係

가. 社會福祉施設과의 連繫與否

- 지역 내 다른 시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4.0%, 별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5.2%나 되어 약 40%의 응답자가 지역사회 내 유사기관과의 유대가 없었음.

나. 地域住民의 認識

- 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2%, 약간 도움을 주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0%로, 약 71%의 시설이 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의 도움을 받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行政機關과의 關係

-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태도에 대해 약 20.9%(적극지원)의 시설은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소극적 지원 58.7%, 무관심 17.1%, 시설정리를 권고 3.3%를 차지하고 있어 약 80%의 시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소극적 도움이나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라. 行政機關으로부터 支援 要望 分野

- 행정기관이 支援해 주는 분야는 행정적 편의가 27.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어 주부식·피복 등 물품지원 23.6%이었고, 금전적 지원은 19.7%에 불과하였음.

마. 가장 원하는 支援分野

- 행정기관에서의 가장 원하는 지원분야로 시설신축이 27.7%(166명)로 가장 높아 시설의 낙후에 대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음. 다음으로 종사자 인건비 21.4%, 생계유지비 21.4%로 주로 기초적인 시설과 인건비 및 생계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8. 未申告施設의 問題點

가. 財政의 劣惡性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최대의 問題點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운영비를 자체부담하거나 後援金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는 재정문제임.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의 2000년도 한해 지출 평균은 약 8천1백여 만원 정도로 나타났음.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영세성은 재정조달의 한계에서 기인함. 이러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다른 문제점, 즉, 시설설비의 미흡, 전문인력 확충의 어려움, 프로그램 실행의 곤란 등으로 연계되어 미신고 시설 열악성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됨.

나. 施設 設備의 劣惡性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시설의 협소, 설비 미비, 편의시설 미비가 문제점으로 드러났음.
 - 상당수의 미신고 시설들이 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원하고 있었음.

다. 프로그램 未備

- 財政調達의 限界는 시설설비의 확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여 시설 생활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수용보호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은 일시보호 및 수용보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라. 專門人力 不足

- 프로그램의 미비는 종사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6%가 미신고 시설에서 종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분하다 응답한 경우는 단지 4.7%에 불과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재정적인 문제로 충분한 인력을 보강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自願奉仕者들의 도움을 받고자 함. 그렇지만 자원봉사 인력도 충분치 못한 상황임. 54.9%의 시설에서 자원봉사 인력도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마. 混合施設의 過多

- 실태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 중에는 혼합시설이 전체 미신고 시설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 장애인, 아동의 혼합시설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종류의 보호인이 함께 보호받는 상황임.

- 혼합시설에서는 단일 종류의 보호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됨.

바. 情報의 制限

- 사회복지혜택을 위한 장애인등록에 대한 정보와 등록절차를 모르거나, 시설의 신고 기준을 모르거나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설도 상당수 있었음.
- 地方自治團體에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 법적인 요건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고 시설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사. 他施設과의 連繫性

- 설문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의 대외적 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타 시설이나 유관기관과 ‘관계 없다’가 약 40%인 반면 ‘관계 있다’는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미신고 시설은 행정기관과의 연계조차 쉽지 않아서 행정기관의 지원과 관심대상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있음.

아. 施設에 대한 認識 問題

- 미신고 시설의 시설장들은 시설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認識이 부정적이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는다고 지적하였음.
- 미신고 시설은 不法施設이고 문제시설로 인식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단체로부터의 지원도 받기 어렵고 자원봉사자가 꺼리고 있음.

-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施設開放이 요구됨.

第4章 未申告施設 改善方案

1. 施設 陽性化

가. 施設 陽性化

- 양성화 작업을 위해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규정을 완화하고, 중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시설을 제도권내에 흡수하여 양성화 한 후, 대규모 시설은 기존의 시설 기준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함.
 - 2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하되, 생활인에 필요한 기본설비인 방,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추고 시설장이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신고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함. 특히 의무실, 상담실, 조리실, 오락실 등의 세부기준은 완화하도록 한다.
 -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시설로 규정함.
 - 2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성화시킨 후, 시설의 설비 및 기타의 조건이 신고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준 후, 시설의 구비요건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 기준에 충족되면 신고 시설로 편입시킴.

나. 施設에 대한 認識 改善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조속히 양성화되어 불법시설에서 합법화된

시설로 전환되어야 함.

2. 인력 및 프로그램 支援

가. 從事者 人件費 支援

- 현행 인력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업무의 과중이 따르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인력 지원은 생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중의 하나임.
-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 도우미를 활용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從事者 教育

-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
- 현재 신고시설 종사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
- 미신고 사회시설에 전문인력이 보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미신고 시설이 소재한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의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의뢰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임.

다. 프로그램 開發

- 생활인의 상태와 여건에 따른 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생활인의 수요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생활인의 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함.

라. 地域 資源 發掘 및 連繫

- 미신고 시설들은 지역사회와 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역사회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後援者를 발굴하게 되고, 自願奉仕人力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지역 병원이나 보건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생활인의 건강증진이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행정기관, 특히 구청은 미신고 시설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 미신고 시설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시설의 상황과 생활인의 복지상태 등을 파악하여 시설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시설의 어려운 점을 인지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施設 改善

가. 施設의 增改築

- 몇몇 시설들은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현행 건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 시설에 대한 증개축을 통해서 생활인의 복지가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증개축 비용을 위해 정부는 저

리의 용자를 대출해 줌.

나. 便宜施設의 具備

- 미신고 시설에서는 일반생활시설은 물론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도 편의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음.
- 시설에 알맞는 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개별실태 조사를 기초로 필요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때 설치비용은 시설과 정부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함.

다. 施設의 單一化

- 시설 내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특성을 갖는 대상자를 보호하게 되면 효과적인 프로그램 실시가 어려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함.
- 혼합된 대상자를 연령과 기타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설에 전원 시켜야 함.

라. 施設의 擴充

- 시설의 분포에 있어서 지역간에 형평성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군 지역에는 시설들이 없는 지역이 많은데, 그 만큼 시설의 수가 부족함을 나타냄. 따라서 인구규모와 비례해서 시설이 확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시설을 증설할 때 장애인시설을 우선적으로 건립해야 할 것임.

4. 未申告 施設 實態把握 및 豫防

가. 未申告 施設 實態把握

- 미신고 시설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생활인의 상황 및 욕구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 생활인의 인구사회학적 구성과 복지욕구,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을 점검하여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나. 家族의 機能 強化

-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가족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임.
 - 빈곤가족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토록 함. 특히 가족이 경제적 부양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수당 도입 등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함.
 -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등 가족적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 보충급여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第 5 章 結 論

- 향후 신고시설로의 입소기준이 현재와 같은 한, 독거노인의 증가, 가족해체의 확산, 미혼모의 증가,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임.
- 소수의 미신고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들은 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설비나 장비,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사회복지인력이 기피하며,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임.
 -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개선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
-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안은 미신고 시설을 제도권에 흡수하여 생활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임.
- 정부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한다는 전제하에 미신고 시설들을 법적 시설화를 해야 하고, 앞으로 생기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를 통하여 미신고시설의 양산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가족의 기능을 보강하여 가족에서 우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第1章 序論

第1節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사회복지시설이란 社會福祉事業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아동, 노인, 장애인 기타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통원, 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便益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이영희, 1999).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1998년 이후부터 이외에도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申告하도록 되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2000년 현재 총 879개의 시설에 78,625명이 생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과거에는 시설 허가 기준이 許可制였다.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였다(1998년 7월부터 시행). 이로써 기존에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려 하였고,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陽性化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이 申告制로 바뀐 후에도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상의 변화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났다(김복일, 2000).

1996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수용시설)의 36% 정도가 미신고 사회복지수용시설이었다. 최근의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20% 정도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집계되어 지난 몇 년간 사회복지시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宗教界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중에는 소규모의 미신고시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톨릭의 경우 전체 기관 및 시설 중 43.8%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인숙, 1997; 최해경, 1997).

制度的, 運營的, 需要者的 측면에서 공식적 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공식적 사회복지시설의 補完的 機能과 役割을 하고 있다(김복일 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입소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수용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非公式的으로 운영되어 와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대안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實態를 파악하고 이를 支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정확한 수와 시설의 유형과 시설에 대한 운영관련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役割 및 限界에 대한 理論的 考察
- 둘째, 미신고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한 現況 및 問題點 檢討
- 셋째, 미신고 시설의 制度化 및 陽性化 등 支援 方案 마련

第2節 研究內容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理論的 考察을 하였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상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아울러 각 시설의 申告 基準을 알아보았다.

두 번째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實態 把握으로 시설일반현황, 시설현황, 재정현황, 인력, 신고의향, 타시설과의 관계, 요망사항 등을 살펴보고(表 1-1 참조). 施設 一般事項에는 시설현황(시설설립연도, 설립배경, 운영주체, 시설유형)과 이용자 특성(보호대상자 수, 연령별 장애인수, 연고자 여부, 대상자 입소 경로, 평균 입소기간, 주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시설 현황과 관련해서는 시설규모, 방수, 입실구조, 시설 내부구성, 건물 소유형태, 건물허가여부, 건축시기, 지역의 특성, 시설의 안정성, 편의시설 구비정도 등을 살펴보았다. 재정현황에 있어서는 재정규모(수입 및 지출), 재원 및 구성, 후원자 규모 및 후원액, 1인당 최저생활비, 부채여부, 재정에 대한 만족수준 등을 살펴보았다.

人力에는 시설장, 종사자, 자원봉사자가 포함된다. 시설장의 경우 성, 연령, 학력, 종교 등의 사항과, 종사기간, 복지시설 근무 연수 등을 살펴보았고,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 수, 정규직 및 임시직 수, 주 근무형태, 월평균 임금수준, 인력의 충분성을 알아보았다.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는 수, 참여빈도, 활동영역, 충분성 등을 살펴보았다.

〈表 1-1〉 實態調査의 調査指標

구분	중지표	소지표
일반 현황	일반 현황	- 미신고시설 수 및 생활인 수 - 시설 유형 - 시설 설립 연도 - 시설설립 배경 - 운영주체(법인, 개인, 종교단체 등) - 주요 프로그램
	이용자 특성	- 보호대상자 수 (성, 연령, 국민기초보장 수급 여부) - 연령별 장애인 수 (등록 및 미등록) - 연고자 여부 - 대상자 입소 경로 - 평균 입소기간
시설 현황	시설 및 설비	- 시설규모, 방수, 입실구조 - 시설 내부 구성: 상담실, 거실, 목욕실, 도서실 등 - 건물 소유형태, 건물 허가여부, 건축시기 - 시설 소재지 및 지역의 특성 - 시설의 안전성 - 편의시설 구비 정도
재정 현황	재정 규모 및 재원	- 재정규모(수입 및 지출) - 재원 및 구성: 재원 중 후원금의 비율 및 정부보조금 비율 - 수익사업 여부 - 후원자 규모 및 후원액 - 1인당 최저 생활비 - 부채 여부 - 재정에 대한 만족정도
인력	시설장	- 일반사항: 성, 연령, 종교, 학력 - 자격증 유무, 종사기간
	종사자	- 종사자 수: 정규직, 임시직 - 성, 주 근무 형태, 월평균 임금 - 인력의 충분성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수, 연인원, 참여빈도 - 자원봉사활동 영역 - 자원봉사자 충분성
신고 의향	미신고 이유 및 신고 의향	- 향후 신고 의향 - 미신고 이유 - 신고시 가장 어려운 점 - 현 법정 신고 기준에 대한 견해 - 어려운 점, 좋은점
타 시설 과의 관계	시설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타 복지시설과의 연계여부 - 지역주민의 인식 -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지원수혜 여부
	행정기관과의 관계	- 일선행정기관과의 관계 - 지원 요망 분야 및 지원 내용
요망 사항	건의사항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건의 사항

이어서 본 연구의 주요 초점으로서 未申告 理由 및 申告意向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현 법정 시설 기준에 대한 견해와 애로사항, 미신고 시설이어서 좋은 점도 살펴보았다. 또한 타복지시설과 행정기관과의 관계의 近接성과 지원받기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민간에 대한 建議事項을 파악하였다. 건의사항을 제외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3장에 제시하였고, 건의사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支援方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 방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지원방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예방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第 3 節 研究方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문헌고찰, 실태조사, 정책간담회로 나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및 역할 및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文獻研究이다.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및 역할 검토하였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존의 연구 문헌을 통해 現況과 問題點 파악하였다. 단 기존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선행 연구가 별로 없어 소수의 연구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實態調査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미신고 시설명단을 사용하여 미신고 시설 81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 공무원을 통해서 지역 시설에 설문이 배포되었다. 설문조사는 2001년 8월 27일에서 9월 15일까지

1) 변용찬외(1996), 김영모외(1997), 이태수(1997), 김복일(2000) 등이다.

실시하였다. 이러한 공무원의 협조에 힘입어 수거된 설문지는 총 731부로 설문 회수율이 89%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거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이용시설은 제외하고 생활시설 633개소만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이용시설 중 보호작업장 4개소를 포함시켜 총 637개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에 우선 미신고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unit of analysis)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고, 응답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을 통해서 시설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실태파악)와 고급통계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파악을 위해서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진 3인과 보건복지부 직원 4인이 4팀을 구성하여 총 미신고 생활시설 19개소(팀당 5개소)를 방문하여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한 검증과 함께 시설, 재정상태를 파악하였고, 실태조사에서는 파악하지 못한 사항 등도 알아보았다.

사례조사 대상 시설은 시설유형별로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 대상지역으로는 시설이 밀집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선정하였는데, 사례대상시설은 <表 1-2>에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형의 미신고 시설 시설장과 관계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表 1-2〉 事例調査 対象 施設(20箇所)

지역	시설종류	시설번호
강원 (5개소)	노인시설	1
	아동시설	2
	정신요양 시설	3
	부랑인시설	4
	혼합시설	5
서울 (4개소)	노인시설	6
	장애인시설	7
	장애인시설	8
인천 (5개소)	부랑인시설	9
	노인시설	10
	청소년시설	11
	장애인 시설	12
	정신요양시설	13
경기 (5개소)	혼합시설	14
	노인시설	15
	청소년시설	16
	장애인시설	17
	부랑인시설	18
	혼합시설	19

주: 총 - 19개소

第2章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理論的 考察

第1節 社會福祉施設의 概念 및 設置基準

1. 社會福祉施設의 概念 및 變遷

가. 社會福祉施設의 定義

社會福祉施設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③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이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따라서 社會福祉施設이란 이러한 사업을 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定義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Goffman(1961)은 사회복지시설이란 시설생활자를 어떤 특수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강제력을 갖춘 사회적 제어장치라고 정의함으로써 시설생활자들에 대해 공식적인 권한을 갖는 기관에 의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NASW(1987)의 社會福祉辭典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사회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사무직원, 기타 직원들로 구성되는 조직이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영희(1996:59)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심신의 미발달이나 미성숙, 장애 혹은 노화 등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피하거나 자립이 곤란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부양기능을 대신하는 시설이나 설비 및 직원 운영조직’이라고 하였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시설이란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社會問題를 갖고 있거나 사회문제를 갖게될 危險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서비스의 제공방법은 다양한데 과거에는 시설에서 제공받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다가 최근에 와서는 탈시설화, 즉, 가정에서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대상은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외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즉, 사후 치료적 접근방식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박태영, 2000).

사회복지조직으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유형의 영리조직과 같은 다른 공식조직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최성재·남기민, 2001; Hasenfeld, 1991).

첫째, 사회복지조직에 투입되는 原料가 人間이라는 것이다. 다른 관료조직과는 대조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의 원료는 가치 중립적이지 아니며,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고 사회적·도덕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

간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조직의 目標가 모호하고 애매하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사회복지조직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얻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조직은 소기의 結果를 얻는 데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 사회과학적 지식의 不確實性和 원조관계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결과의 성공률이 그리 높지 못하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조직의 핵심적인 活動은 조직 성원과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와의 關係이다. 따라서 일선조직 요원들의 활동이 중요시된다.

다섯째, 사회복지조직들은 專門性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점점 더 크게 의존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를 확실하고 타당하게 測定할 수 있는 표준척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과의 평가에 대한 논란이 많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이 다른 조직에서보다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들은 ① 클라이언트 중심적이어야 하고, ② 조직구조가 탄력성이 있어야 하며, ③ 전문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들은 환경변화에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사회체계가 전반적으로 폐쇄체계(closed system)에서 개방체계(open system)로 변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들도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관료제 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수급권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하며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최일선(front line)에 위치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은 社會性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존재의 正當性은 사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나. 社會福祉施設の 變遷

사회복지시설의 형태와 보호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박태영, 2000). 박태영(2000)은 시설이 요보호자의 유형과 발생 정도, 정부의 대응방식, 요보호자 보호에 대한 주민의 정서 및 보호 이념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社會防圍的 단계로서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抑壓과 隔離을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요보호자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혐오스럽게 느끼도록 열악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어서 시설의 요보호자수를 줄이려고 하던 시기이다.

둘째, 社會保障的 단계로서 시설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였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자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單獨住宅(cottage)형태의 시설을 많이 두었다.

셋째, 社會福祉的 단계로서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보호방법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시기이다.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를 선호하고, 시설의 규모도 소규모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시설생활자와 주민은 상호간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보호받을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한하여 최저한의 생활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의 변천단계에서 볼 때, 제2단계인 사회보장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박태영, 2000)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정부의 복지기능이 미약하여 민간부문의 사회

복지가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의 사회복지체계는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시설들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설립되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난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업 행태가 타율적이고 정부 의존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행정 행태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자율적이며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사업방향의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보다는 중앙본부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책임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재정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들간의 중복, 경합 등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정무성, 1999).

더구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고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하여 법정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그 동안 노출된 일부 시설 내 비리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우리 나라도 21세기 선진 복지사회를 맞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福祉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정상화의 이념이 실현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외계층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2. 施設の 設置 및 運營基準

가. 施設の 設置 및 運營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은 1998년부터 시행되는 社會福祉事業法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시설의 설치, 운영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환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단, 정신요양시설과 교호시설은 개인은 불가능하고,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 두 유형의 시설에서 보호되는 생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나. 施設 設置基準 및 必要書類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法的인 基準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설의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필요설비, 비치되어야 하는 서류, 종사자 조항(시설장 및 종사자의 수 및 종류), 생활인 명부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장은 상근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시감독과 주기적인 評價를 받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은 2000년 이전에는 社會福祉事業法施行規則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각 법의 하위에 있는 시행규칙에 따로 명시되었다. 각 시설마다의 구비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설치기준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시설의 설치 기준이 충족된 후 개인이 시설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되었다. 개정된 법 상에는 시설의 재산기준이 5억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 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총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1부

다. 施設の 主要 義務事項

시설이 설치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 외에 보다 구체적 주요 의무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시설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시설장이 상근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제35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시설의 장)

- ①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시설에는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비치토록 규정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보다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아래에 제시된 社會福祉事業法施行規則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 (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시설이 구비해야 하는 의무사항 중의 하나가 시설에 대한 評價를 받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 받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시설의 평가)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평가지 평가의 대상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설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

-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6>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施設の 改善, 停止, 閉鎖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의 달성이 되지 않아 시설이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不當行爲가 발생했을 때 등은 시설의 改善, 사업의 停止, 閉鎖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4.30>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3의 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社會福祉施設 類型別 設置基準

사회복지시설은 구분하는 基準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시설의 設立 및 運營主體에 따라 公立 및 私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립민영 혹은 사립공영 등 복합적인 형태의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는 서비스의 제공형태에 따라 생활(수용)형, 이용(통원)형, 중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는 비용수납 여부에 따라 유료시설, 실비시설, 무료시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넷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주된 기능에 따라 생활시설, 재활(교육, 치료)시설, 작업(근로)시설, 이용시설, 복합기능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섯째는 사회복지 관계법에서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유형화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사회복지 關係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類型化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상으로는 우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환치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사업을 하는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과 부랑인보호시설을 중심으로 각 시설의 이념과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老人施設

1) 老人福祉의 理念

노인은 우리 사회를 위해 평생 기여해 온 자로서 국가, 사회 가정은 노인을 공경할 의무가 있고, 노인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노인복지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위해서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노인의 권리를 보다 자세하게 나타냈다. 노인은 첫째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둘째,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셋째,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법 제2조).

노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로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해야 한다(제3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노인복지시설도 법에 명시된 이러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념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2) 老人福祉施設의 種類 및 機能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뉜다(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뉜다. 각 시설의 기능 및 역할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老人醫療福祉施設에는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다. 각 시설의 기능은 老人福祉法 제34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老人餘暇福祉施設이란 노인의 餘暇를 위한 시설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다. 각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노인복지법 제36조).

1.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

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은 가정에 있는 노인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있다. 각 시설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노인복지법 제38조).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미신고시설은 주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주류인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가 없는 노인과 주거지가 없고 동시에 신체적으로 허약한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3) 老人施設の 設置 및 基準

노인시설의 設置基準은 시설의 규모,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시설장 및 직원에 대한 배치기준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우선 시설의 공통사항으로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입소정원이 상이한데,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2: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 입소정원 10인 이상
- (2) 유료양로시설 : 입소정원 5인 이상
- (3) 실비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있어서도 상세하게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다음과 같은 구비 조건을 제시하였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2: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3)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구비요건에 대해서는 부록의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別表 1, 別表 2에 제시하였다.

나. 兒童福祉施設

1) 兒童福祉의 理念

兒童이란 법적으로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 아동을 위한 복지의 이념은 兒童福祉法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아동은 첫째,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고, 둘째,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셋째,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정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4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동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兒童福祉施設の 種類 및 機能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이 있다(아동복지법 제16조). 각 시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아동복지법 제16조).

1.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

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이외에도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사업에는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이 포함된다. 각 사업의 내용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 이하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일 2000.7.13]

3) 兒童福祉施設の 設置 基準

아동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요한 시설설치기준만을 소개하였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에 아동복지시행규칙 원문을 수록하였다.

각종 아동복지시설의 공통된 시설기준에는 시설의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조건이 포함된다. 먼저 시설의 입지조건으로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아동복지법시행규칙).

시설의 규모에 있어서는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즉, 생활시설의 경우 아동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있어서는 첫째,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 둘째, 다음의 설비를 갖추는 것(다만, 수용을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거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필요한 설비에는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이 포함된다.

시설별로 필요한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에는 (1) 강당 또는 오락실: 66제곱미터 이상, (2) 도서실: 열람좌석수 10석 이상, 도서 500권 이상, (3) 놀이터: 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이소·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1) 심리검사·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직업훈련장: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훈련과목 및 그 과목 수에 따라 적절히 가감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립지원시설은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상담소는 (1)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 (3)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아동복지관은 (1) 강당: 99제곱미터 이상, (2) 오락실: 50제곱미터 이상, (3) 도서실: 열람좌석수 20석 이상으로 하되, 도서 1,000권 이상, (4) 놀이터: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이소,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 등, (5) 상담실: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 (6)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아동종합시설에는 (1) 당해 종합시설이 행하는 시설별 기준을 갖추었고,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놀이터,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시설의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시설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4) 從事者 關聯 事項

아동복지시설의 장은(법 제18조 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시행일 2000.7.13].

아동복지종사자는 專門人力을 배치해야 하고 그 직종과 수, 자격

기준도 법에 명시되어 있다(법 제19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시행일 2000.7.13].

다. 障礙人福祉施設

1) 障礙人福祉의 理念

장애인이란 身體的·精神的 障礙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항).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있다(법 제1조). 아울러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법 제1조).

장애인복지의 基本理念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법 제3조).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尊重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법 제4조).

2) 障礙人福祉施設の 種類 및 機能

장애인시설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

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포함된다. 각 시설의 기능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1.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치료,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障礙人福祉施設의 基準 및 設備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지조건으로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시설의 규모는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은 예외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

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장애인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다. 각 시설에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및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설은 각각 1인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 이상,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인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장애인시설에 필요한 설비로는 거실, 사무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의 관리운영요원 배치기준은 시설장, 총무,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생활보조원, 영양사,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시설관리기사, 취사원, 세탁원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 障 碍 人 福 祉 法 施 行 規 則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인력기준도 많은 미신고 시설들은 인건비의 부족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라. 母子福祉施設

1) 母子福祉의 理念

母子家庭이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여성과 18세 미만(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여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모자복지법 제4조)

모자가정이 自立·自活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9년 母子福祉法을 제정하였다(박태영, 2000). 이 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모자복지 책임의 主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모든 국민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해 사회의 모든 영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법에서 제시하였다(법 제2조).

2) 母子福祉施設의 種類 및 機能

모자복지시설의 종류는 모자복지법 제19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상담소 등이다. 각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여성복지관: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모자가정상상담소: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施設의 基準

모자복지시설의 입지조건으로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성질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재해방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모자복지법).

모자복지시설에 필요한 설비로는 거실, 사무실, 교양교육실, 의무실, 상담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산후회복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탕, 세탁장 및 건조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 시설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 모자복지법시행규칙에 수록되어 있다.

마. 浮浪人施設

1) 浮浪人保護의 理念

浮浪人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를 말한다(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 제2조). 이들의 보호와 재활을 목적으로 부랑인복지시설을 법적으로 두게 되었다.

2) 浮浪人保護施設의 設置基準

浮浪人保護施設의 설치기준은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 제11조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 제11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입소정원 1인당 면적을 15.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입소정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갖출 것

$$\text{시설 면적} = 15.48\text{제곱미터} \times 100 + 15.48\text{제곱미터} \times 0.7(\text{입소정원} - 100)$$
3.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침실의 면적은 원생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남·녀별, 장애별로 구분하여 보호할 것
5. 정신질환자·알코올중독자 및 전염병환자 등은 격리하여 수용할 것

시설이 갖추어야 設備로는 위탁보호실, 의무실, 전문상담실, 직업훈련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수세식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적당한 면적의 옥외운동장, 주·부식 및 시설의 비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적당한 면적의 창고시설 등이다.

부랑인시설에는 다양한 從事者를 두도록 되어있다(시행규칙 제12조). 종사자의 종류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 1인
2. 총 무: 1인
3. 상담원(사회복지사 1급): 1인 이상
4.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원생 50인당 1인 이상
5.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 이상
6.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사: 1인 이상
7. 보조원: 원생 50인당 1인 이상
8. 영양사: 1인(원생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9. 사무원: 1인 이상
10. 경비원: 1인 이상
11. 설비기사: 1인 이상
12.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한편 18세 미만의 浮浪兒童을 수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 1인
2. 총 무: 1인
3. 상담원(사회복지사 1급): 1인 이상
4. 보육사: 원생 10인당 1인 이상
5.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 이상
6.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사: 1인 이상
7. 영양사: 1인(원생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부랑인시설의 의무규정으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0. 입소자의 입·퇴소명단, 보호의 경과 및 지도와 신상에 관한 서류, 11. 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었다.

4. 社會福祉施設의 數 및 生活人 數

사회복지생활시설은 꾸준히 增加趨勢에 있다. <表 2-1>에 제시되었듯이 1985년에는 총 생활시설수가 588개소이었는데, 1990년에 664개소, 1995년 778개소, 2000년에 879개소로 증가하였다.

생활인수는 지난 15년간 약간의 변동을 보여 1985년 7만 3천여 명에서 1990년 8만명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1995년 이후 7만 6천여 명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7만8천여 명으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시설 현원은 정원을 밑돌고 있어 아동시설 67.9%, 노인시설 68.6%, 정신요양시설 92.0%, 부랑인시설 95.15% 등이다(변용찬 외, 1999). 이와 같이 각 시설에 있어 생활인수가 정원을 밑돌고 있는 이유는 입소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시설입소의 문턱이 높다.

〈表 2-1〉 年度別 社會福祉生活施設 施設數 및 生活人數

(단위: 개소, 명)

구 분	1985	1990	1995	2000
시 설 수	588	664	778	879
생활인수	73,518	80,548	76,860	78,625
남자	42,036	44,568	42,058	41,107
여자	31,482	35,980	34,82	37,518
종사자수	-	-	-	13,443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방안』, 2001.

우리 나라의 시설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김미혜, 1995). 생활시설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는 '88년 인구 12,267명당 시설이 1개소인 반면, 우리 나라는 '94년의 경우 인구 60,942명당 1개소이다(김미혜, 1995).

従事者數는 2000년 현재 13,443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종사자수도 일본은 종사자 1인당 1.8명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종사자 1인당 7.6명으로 거의 4배 이상에 달한다(김미혜, 1995). 이로 인해 종사자의 업무과중이 생기고,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

시설의 種類別로 보면 <表 2-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아동시설이 가장 많은 269개소이고, 노인시설 250개소, 장애인시설 196개소, 여성시설 59개소 등이 있다. 생활인수에 있어서도 아동시설이 가장 많은 17,720명이고, 장애인 17,257명, 노인 13,907명, 부랑인 13,062명 등이다. 특이하게도 부랑인은 시설수에 비해 생활인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한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수가 다른 시설에 비해 매우 많음을 나타낸다. 성별 생활인 수는 남자가 41,107명, 여자 37,518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많았다.

〈表 2-2〉 類型別 施設, 生活人 및 従事者 數

(단위: 개소, 명)

구 분	시설수	생활인수			종사자수
		전체	남자	여자	
아동시설	269	17,720	9,968	7,752	3,176
노인시설	250	13,907	3,597	10,310	3,166
장애인시설	196	17,257	10,342	6,915	4,814
여성시설	59	3,137	892	2,245	269
정신요양시설	55	12,676	7,591	5,085	970
부랑인시설	45	13,062	8,309	4,753	970
결핵나장애시설	5	866	408	458	78
전체	879	78,625	41,107	37,518	13,443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방안』, 2001.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 시설별 개별적인 종류는 <表 2-3>에 제시되었다.

5. 現行 社會福祉施設 關聯法の 意義 및 問題點

가. 施設 關聯法の 意義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고 각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수립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의 의의는 큰데, 개정된 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에서 시설 규모를 30인 이상 수용해야 하는 조항을 철폐하고 소규모 시설도 신고만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은 것은 큰 의의라 하겠다(윤찬영, 1997).

이로써 국가의 감독 밖에 있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도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규모시설에서 발생했던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 정부보조금이나 후원금의 횡령 등의 각종 비리 사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윤찬영, 1997).

〈表 2-3〉 法的 社會福祉施設の 種類

구 분	시설의 종류
아동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노인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4)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시설
여성시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상담소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부랑인보호시설(성인, 아동)

자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정신보건법, 부랑인복지시설 운영규칙

다른 한편으로 무허가 시설의 陽性化를 이태수(1997b)는 그 동안 민간이 주도적으로 담당해오던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公式化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의 복지는 한 단계 성숙된 단계로 진일보한다는 것이다(이태수b, 1997).

나. 施設 關聯法の 問題點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한 것이 많은 소규모 시설을 양성화시켜 법적인 시설로 승격시킴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제공하고, 시설 내의 불법성을 근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헌을 하였으나, 현행법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법인 시설은 정기적인 評價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을 대규모 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결과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대규모시설과 분리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은 강제는 아니지만,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소규모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대규모시설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설치의 의무규정으로 하되, 중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권장사항으로 소규모시설의 경우에는 면책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윤찬영, 1997).

셋째, 시설의 설비 및 운영 기준이 소규모 시설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다. 20인 미만의 시설에서는 일인당 필요 면적과 설비 및 구비 요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소규모 시설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第 2 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概念 및 發生背景

1.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概念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란 시설생활자들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가의 제도권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김복일, 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시설보호대상자)에 의거하여 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대상자를 수용·보

호함으로써 신고시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제도권 내의 신고시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변용찬외, 1996). 미신고 시설은 점차 증대하는 복지수요에 국가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별적 복지의 문제를 민간부분이 스스로 담당함으로써 국가의 복지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未申告 社會福祉施設の 發生背景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우리 나라의 복지 환경의 특수성으로부터 비롯한 국가적 측면과 시설의 운영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 國家的 側面

서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규모화된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역기능이 제기되면서 시설생활자들의 탈시설화 추구,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규모공동체 시설이나 그룹홈이 활성화된 반면, 우리 나라는 이러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환경이 서구와 다른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김복일, 2000).

첫째, 1980년대부터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이 대규모화되고 있고, 시설의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1980년대부터 시설의 설치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許容基準은 현실보다 높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산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둘째, 국가의 정책 또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양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대형화가 추구하고 있었으며, 재정지원방법에 있어서

도 수용인원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추세에 시설의 대형화가 추구되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의 시설들은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제도권 안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셋째, 더욱 현실적인 이유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지연되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양산되었다. 생활보호법시행령(제6조 2호)에 의하면 시설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부양자가 없어야 하며, 서류상으로 부양의 의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한다.

미신고 시설은 이러한 입소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나 연고자의 소개만으로도 입소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미신고 시설이 더욱 증대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나. 施設運營者 側面

민간인 시설보호사업의 운영이 처음부터 복지시설 본래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자선과 봉사로서 시작하여 오늘날의 복지시설로 된 경우가 많게 됨에 따라 경제적 한계로 시설 생활자 인원의 증원이나 시설의 환경개선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소규모 시설로 운영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김복일, 2000).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현재에도 미신고 복지시설로 운영되는데 따른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기초하고 있다.

第 3 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の 存續理由

『社會福祉事業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陽性化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신고제로 바뀐 후에도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상의 변화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복일, 2000). 1996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생활시설은 778개소이고 미신고 社會福祉 生活施設은 28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表 2-4 참조). 미신고 시설 중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시설이 가장 많은 130개소인데 반해, 신고 시설은 아동시설이 가장 많은 269개소이다. 즉, 일반 장애인시설의 부족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미신고 시설은 노인시설 76개소, 아동시설 37개소 순이었다.

〈表 2-4〉 無許可 社會福祉施設數(1996)

(단위: 개소)

구 분	개 소 (허가시설수)
노인시설	76 (146)
아동시설	37 (269)
장애인시설	130 (174)
모자/부녀시설	3 (66)
정신요양시설	5 (75)
부랑인시설	27 (42)
결핵시설	4 (2)
나장애인 시설	1 (4)
계	283 (778)

주: 괄호 안은 허가시설 수입(1995년 12월 말 현재). 미신고시설수는 총 293개중에서 조사에 응한 시설수입.

출처: 변용찬 외,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p.91.

2001년도 현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수와 유형은 다음 장에 소개되었는데, 현재 파악된 미신고 생활시설수는 633개소이고 보호작업장²⁾ 수는 4개소이다. 시설의 증가비율을 보면 연도는 약간 다르지만, 신고 시설은 1995년 778개소에서 2000년 879개소로 13% 증가하였는데, 미신고 시설은 1995년 293개소에서 2001년 637개소로 무려 117%나 증가하였다(表 2-5 참조). 즉, 미신고시설의 증가폭은 신고시설의 증가폭의 약 9배가 됨을 알 수 있다.

미신고 시설이 존속하는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법적 측면에서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이 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영모, 199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2조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설의 설치 기준과 요건이 상당히 높아서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시설이 많아 미신고 시설로 된 것이다.

〈表 2-5〉 申告 및 未申告 施設 増加 推移

(단위: 개소, %)

구 분	1995	2000년/2001년	증가비율
신고시설	778	879 (2000년)	13
미신고 시설	293	637 (2001년)	117

주: 신고시설은 생활시설만을 포함하고, 미신고 시설은 생활시설(633개소)과 장애인 보호작업장(4개소)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 방안, 2001(신고시설); 변용찬 외,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미신고 시설, 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2001(미신고 시설, 2001).

2)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용시설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포함시켰다. 나머지 이용시설은 분석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운영자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받게 되어 있는데, 미신고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로서 열악한 시설환경, 영세한 자본, 전문 인력 등의 부재로 평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 신고를 꺼리는 면도 있다(김복일, 2000). 다른 조사에서는(아동소공동체의 경우) 신고에 따른 ‘행정적 규제와 감독이 싫어서’라는 응답도 46.4%로 나타났다(이태수a, 1997). 아울러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도 충족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설생활자 측면에서는 신고 사회복지시설에로의 입소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신고 시설은 존속한다. 또한 지역간에 시설 설치율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어서 군지역에서는 주위에 갈 수 있는 신고시설이 없어서 미신고시설로 부득이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第 4 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の 限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신고 사회복지시설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1. 財政의 零細性 및 財政 調達의 限界

최해경(1997)의 조사에 따르면, 재정규모에 있어서도 미신고 시설은 주로 1년 지출액이 3천만원 미만이 50% 이상 차지하고, 1억원 미만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재정이 영세하다는 것이다³⁾.

3) 신고시설은 1~3억(31.6%), 3~5억(19.4), 5~10억(16.8%), 10억 이상도 8.4%를 차지하고 있어 미신고 시설에 크게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의 영세성은 재정조달이 어렵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특히 생활인의 自立的인 활동을 지원하고 돕도록 하는데 그 존립 목적이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專門人力의 확보와 良質의 프로그램 실시에 많은 財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신고 시설에 들어오는 재원은 자체수입, 민간보조 및 외원보조(변용찬 외, 1996)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부터는 제외된다.

이러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다른 문제점, 예컨대 시설설비의 미흡, 전문인력 확충의 어려움, 프로그램 실행의 곤란 등으로 직접 연계되어 악순환을 겪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施設 設備 問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시설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 안전성과 시설 설비의 미비에 있다. 변용찬 외(1996)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주거시설 및 건축물은 가정집이나 교회시설물, 불법건축물, 버려진 축사, 비닐하우스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전체 시설 가운데 11.6%인 34개소는 구조물 상태가 목조, 비닐하우스, 흙벽돌, 슬래트축사 등으로 되어 있어 방치할 경우 화재 등 安全事故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변용찬 외, 1996). 또한 편의시설의 설치 비율이 낮아서 장애인 및 노인에게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시설의 설비 및 안전성의 미비는 예산의 부족과 직결된다. 이러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한 신고시설로 편입될 수 없기 때문에 영세한 미신고 시설의 문제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實施의 어려움

재정의 한계는 시설설비의 확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우수한 專門人力의 확보를 어렵게 하여 시설 생활자들에게 良質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從事人力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는 4.9%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입소자가 非專門人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변용찬, 1996). 한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중 무급 종사자가 많고, 임금을 받고 있는 종사자라 하더라도 평균 임금 31만원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변용찬 외, 1996)이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運營의 不透明性 및 人權 問題

미신고 시설의 다른 문제점은 시설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생활인의 권익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시설이 개방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 생활인들이 지급받는 생계 급여 등의 사용에 대해 시설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으로 시설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외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족액이 어느 시설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시설이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후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또한 일반인이 안다고 해도 법적인 시설이 아니라 제도권 밖의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후원을 기피한다.

생활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도와 감독 밖에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요보호대상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설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요보호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통한 재활, 자립, 및 삶의 질 제고는 요원할 것이다.

第3章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調査結果

第1節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實態調査 結果

1. 未申告 施設 一般現況

가. 未申告 施設 數

미신고 시설이 전국에 몇 개소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파악가능한 미신고 시설을 전수 조사하였다(表 3-1 참조).

생활인 수는 637개소를 합한 결과 13,856명⁴⁾으로 집계되었다. 시설당 평균 21.79명의 생활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2000년 현재 전국에 879개소가 있고, 생활인원은 78,625명에 이른다. 평균 생활인 수는 89.45명으로 미신고 시설에 비해서 4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미신고 생활시설은 수는 신고 시설 수에 있어서 신고시설보다 약간 적은 상황이고, 生活人 數에 있어서는 신고시설의 약 17.6%에 달하고 있고, 평균 생활인수는 미신고 시설이 신고시설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4) 1995년 무허가시설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수 293개소에 총 5,704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변용찬, 1996).

나. 未申告 施設 類型

조사에 응한 시설을 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여러 대상을 같이 보호하고 있는 混合施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12개소, 33.3%) (表 3-2 참조). 그 다음이 장애인 시설 29.7%(187개소), 노인시설 19.5%(124개소), 청소년시설 4.6%(48개소), 아동시설 4.6%(29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3-1〉 申告 및 未申告 施設 比較

(단위: 개소, 명, %)

구 분	신고시설 (2000년)			미신고시설 (2001년)		
	시설수	생활인수	평균 생활인수	시설수	생활인수	평균 생활인수
아동청소년시설	269	17,720	65.87	77	1,001	12.80
노인시설	250	13,907	55.63	124	2,015	16.38
장애인시설	196	17,257	88.05	189	3,670	19.42
여성시설	59	3,137	53.17	5	49	9.80
정신요양시설	55	12,676	23.05	3	53	17.67
부랑시설	45	13,062	290.27	3	150	50.00
노숙자시설	-	-	-	3	85	28.33
결핵나장애시설	5	866	173.20	8	160	30.30
혼합시설	-	-	-	212	6,238	29.42
기 타	-	-	-	13	372	28.62
전체	879	78,625	89.45	637	13,856	21.79

주: 노숙자시설은 전부 미신고시설이나, 대부분의 시설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미신고 노숙자시설은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된 시설을 말함.

미신고 장애인시설에는 이용시설인 보호작업장 4개소를 포함시켰음.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 방안』, 2001(신고시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2001(미신고 시설).

노숙자시설, 부랑인시설, 결핵시설, 나장애인시설 등에 비하여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그만큼 노인시설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表 3-2〉 未申告 施設の 類型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노인시설	124	19.5
아동시설	29	4.6
청소년시설	48	7.5
장애인시설	189	29.7
모자부녀시설	5	0.8
정신요양시설	3	0.5
부랑인시설	3	0.5
노숙자시설	3	0.5
결핵시설	5	0.8
나장애인시설	3	0.5
혼합시설	212	33.3
기타시설	13	2.0
계	637	100.0

障 碍 人 施 設 의 경 우, 신 고 시 설 의 수 가 2000년 말 현재 196개소이고 17,257명이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시설의 입소율은 86.5%이나(박옥희, 2000), 시설 중에는 입소 대기자가 있는 곳도 있는 등 시설간의 편차가 크고 예산부족, 전문인력 부족, 프로그램 미비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박옥희, 2000).

老 人 施 設 의 경 우, 노 령 화 사 회 의 진 전 으 로 노 인 인 구 의 빠 른 속 도 로 의 증 가 현 상 과 밀 접 한 관 련 이 있 다 고 할 수 있 다. 1999년 현재 65세 이상 290만 명 노인의 단지 0.3%만이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

다는 것이다⁵⁾. 이와 같이 입소 비율이 낮은 이유는 첫째,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 입소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시설 수가 부족하고, 둘째, 시설설비나 서비스 수준이 낮으며, 셋째, 기존의 양로원 시설이나 요양원 시설에 대한 노인이나 자녀의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에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이석원, 1999).

混合施設에 있어서 어떤 시설들인지 분석한 결과 노인+장애인 시설이 66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노인+아동+장애인시설이 38개소였다(表 3-3 참조). 그 다음은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로 17개소였고, 아동+청소년시설이 12개소이었다. 즉, 대부분의 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을 함께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3-3〉 混合施設의 類型 및 分布

(단위: 개소)

구분	빈도
노인시설 + 장애인시설	66
노인시설 + 아동시설 + 장애인시설	38
노인시설 + 아동시설 + 청소년시설 + 장애인시설	17
아동시설 + 청소년시설	12
노인시설 + 청소년시설 + 장애인시설	7
노인시설 + 장애인시설 + 정신요양시설	6
아동시설 + 청소년시설 + 장애인시설	6
아동시설 + 장애인시설	6
노인시설 + 아동시설	4
노인시설 + 장애인시설 + 기타시설	4
노인시설 +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 노숙자시설	4
노인시설 + 노숙자시설	4

5) 일본노인의 입소비율은 2.1%, 미국 5%, 서구 유럽의 4~7%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극히 소수의 노인만이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석원, 1999).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生活施設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포함시켰는데, 생활시설은 634개소이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4개소로 나타났다(表 3-4 참조).

〈表 3-4〉 서비스 提供形態에 따른 未申告 施設 種類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백분율
생 활 시 설	633	99.4
장애인보호작업장	4	0.6
전 체	637	100.0

다. 地域別 未申告 施設 分布

미신고 시설의 地域別 분포는 다음 <表 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역별 미신고 시설의 분포에 있어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31.6%(201개소)를 나타내었고, 다음이 서울 18.8%(120개소), 강원 8.9%(57개소), 경북 6.1%(39개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 경기도는 정신요양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이 골고루 있었고, 서울특별시에는 정신요양시설, 결핵시설, 나장애인 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시도에서는 주로 노인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혼합시설 등이 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광역시는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장애인시설과 혼합시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에서 다른 시설에 비해 장애인 시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강원도와 충청남도에서는 노인시설의 비율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3-5〉 地域別 施設分布

(단위: 개소, %)

구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청소년	장애인	모자 부녀	정신 요양	부랑인	노숙자	결핵 시설	나장 애인	혼합 시설	기타 시설	전체
서울	18	14	17	36	3	-	2	3	-	-	18	9	120 (18.8)
부산	1	2	2	3	-	-	-	-	-	-	3	1	12 (1.9)
대구	-	-	2	1	-	-	-	-	-	-	4	-	7 (1.1)
인천	7	1	3	8	1	1	-	-	-	1	10	-	32 (5.0)
광주	1	-	2	12	-	-	-	-	-	-	4	1	20 (3.1)
대전	1	-	2	4	-	-	-	-	-	-	5	-	12 (1.9)
울산	-	-	-	-	-	-	-	-	-	-	1	-	1 (0.2)
경기	46	7	11	63	1	-	1	-	4	1	66	1	201 (31.6)
강원	16	2	4	11	-	1	-	-	-	-	23	-	57 (8.9)
충북	5	-	2	9	-	-	-	-	-	-	13	1	30 (4.7)
충남	10	1	-	11	-	-	-	-	-	-	11	-	33 (5.2)
경북	5	1	1	6	-	-	-	-	-	1	25	-	39 (6.1)
경남	1	-	1	5	-	1	-	-	-	-	4	-	12 (1.9)
전북	6	1	-	8	-	-	-	-	-	-	19	-	34 (5.3)
전남	7	-	1	8	-	-	-	-	1	-	5	-	22 (3.5)
제주	-	-	-	4	-	-	-	-	-	-	1	-	5 (0.8)
전체	124	29	48	189	5	3	3	3	5	3	212	13	637 (100.0)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노숙자시설, 결핵시설, 나장애인시설은 시도별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 몇 되지 않았는데, 정신요양시설은 인천광역시 1개소, 강원도 1개소, 경상남도 1개소 모두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랑인 시설은 서울, 경기도에 모두 3개소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자 시설은 서울에만 3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시설은 경기도와 전라남도 두 지역에 총 4개소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장애인시설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에 모두 3개소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設立時期

응답한 미신고 시설 627개소 가운데 1960년대 및 그 이전에 설립된 시설은 1.1%로 모두 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70년대 설립된 시설은 3.2%(20개소), '80년대 22.4%(139개소), '90년대 67.4%(418개소)로 조사된 미신고 시설의 72%이상이 1990년대 이후 신설되고 있어 미신고 시설의 수는 최근 들어 더욱 급격히 增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3-6 참조).

〈表 3-6〉 未申告 施設 設立時期

(단위: 개소, %)

연 도	빈도	비율
1960년대 및 이전	7	1.1
1970년대	20	3.2
1980년대	139	22.4
1990년대	418	67.4
2000년대	36	5.8
계	620	100.0

마. 運營動機

運營動機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가 42.7%(246개소)로 가장 많아 위의 미신고 시설 設立推移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적인 동기가 主流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3-7 참조). ‘종교적인 이유’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29.9%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이 영리추구나 사업적 운영보다는 ‘박애’나 ‘사랑’과 같은 가치의 실현이라는 동기가 일반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시설장은 21.4%(123개소)로 나타났다.

〈表 3-7〉 施設 運營動機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율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46	42.7
종교적인 이유로	172	29.9
친인척이 운영하던 시설	1	0.2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어서	123	21.4
기타	34	5.9
전 체	576	100.0

바. 運營主體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55.4%(342개소)나 되어 절반 이상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表 3-8 참조). 다음이 ‘종교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31.0%로 나타나, 미신고 시설은 대부분 개인 혹은 종교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3-8〉 施設 運營主體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율
개 인	342	55.4
재 단	29	4.7
종 교 기 관	191	31.0
임 의 단 체	36	5.8
기 타	19	3.1
전 체	617	100.0

한편 運營主體가 재단인 경우는 4.7%(29개소), 임의단체 5.8%(36개소)로 약 10%정도만이 재단이나 임의단체 형식으로 설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表 3-9 참조).

〈表 3-9〉 運營主體別 施設 運營 動機

(단위: %, 개소)

구분	개인	재단	종교기관	임의단체 및 기타	전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46.6	46.4	39.3	29.4	42.7(241)
종교적인 이유로	26.1	21.4	39.9	19.6	29.6(167)
친인척이 운영하던 시설,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어서	23.5	25.0	15.7	31.4	21.8(123)
기타	3.9	7.1	5.1	19.6	5.9(33)
계	54.4 (307)	5.0 (28)	31.6 (178)	9.0 (51)	100.0 (564)

주: $\chi^2=38.181^{***}$ *** p<.001

다음은 운영주체에 따라 시설의 운영동기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운영주체가 개인 및 재단인 경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가 각 46.6%, 46.4%로 다른 운영주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종교기관은 역시 ‘종교적인 이

유'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분석되어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동기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신고 시설의 一般現況을 綜合해 볼 때,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절대 빈곤수준을 벗어나면서 물질적·정신적으로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돌보기 원하는 동기로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 主要 프로그램

시설의 프로그램 실시 현황과 관련하여 '보기의 예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두 개를 기입하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미신고 시설의 프로그램은 수용보호 63.3%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일시보호는 15.3%, 약물치료 13.0%, 물리치료 8.2% 등 시설의 프로그램 실시는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表 3-10〉 主要 프로그램(重複應答)

(단위: %)

구분	실시 함	실시하지 않음	계
일시보호	15.3	84.7	100.0
약물치료	13.0	87.0	100.0
수용보호	63.3	36.7	100.0
보장구 지급	2.1	97.9	100.0
물리치료	8.2	91.8	100.0
작업치료	5.6	94.4	100.0
수용보호만 제공	13.1	86.9	100.0
기타	36.0	64.0	100.0

수용보호만 제공하는 시설도 1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미신고 시설의 프로그램은 一時保護 및 收容保護에만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表 3-10 참조). 따라서 미신고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2. 生活人 特性

가. 生活人數 分布

미신고 시설의 생활인 수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가장 많은 생활인 수는 11~20인에 분포된 시설이 33.2%로 비교적 小規模 시설임을 알 수 있다(表 3-11 참조). 10명 이하의 생활인이 생활하는 시설이 31.1%로 나타나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64%를 상회하여 미신고 시설의 상당수는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表 3-11〉 生活人數의 分布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0~ 5인	47	7.4
6~ 10인	151	23.7
11~ 20인	211	33.2
21~ 50인	184	28.9
51~100인	36	5.7
101인 이상	7	1.1
계	636	100.0

〈表 3-12〉 地域別 生活人數

(단위: 명, 개소)

지역	시설수	생활인원
서울	119	2,148
부산	12	256
대구	7	145
인천	32	939
광주	20	444
대전	12	209
울산	1	15
경기	201	4,447
강원	57	1,121
충북	30	680
충남	33	731
경북	39	1,017
경남	12	186
전북	34	991
전남	22	473
제주	5	54
합 계	636	13,856

시설유형별로 보면 생활인 수의 분포를 보면, 노인시설은 6~10인 및 11~20인 시설이 각 31.7%, 26.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21인 이상이 생활하는 노인시설도 2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3-13 참조). 아동시설 11~20명 규모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34.5%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0~5인 및 6~10인 시설이 각각 27.6%로 비교적 소규모의 시설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시설은 11~20명 규모의 시설이 각각 47.9%, 35.4%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 규모의 소규모 시설은 아님을 알 수 있다.

〈表 3-13〉 施設類型別 生活人 規模

(단위: %, 개소)

구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청소년	장애인	모자 부녀	정신 요양	부랑인	노숙자	결핵 시설	나장 애인	혼합 시설	기타 시설	전체
0~5	14.6 (18)	27.6 (8)	8.3 (4)	5.3 (10)	40.0 (2)	-	-	66.7 (2)	-	-	0.5 (1)	15.4 (2)	7.4 (47)
6~10	31.7 (39)	27.6 (8)	31.3 (15)	28.0 (53)	40.0 (2)	-	-	-	20.0 (1)	33.3 (1)	14.2 (30)	15.4 (2)	23.7 (151)
11~20	26.0 (32)	34.5 (10)	47.9 (23)	35.4 (67)	-	66.7 (2)	-	-	40.0 (2)	-	34.0 (72)	23.1 (3)	33.2 (211)
21~50	25.2 (31)	6.9 (2)	12.5 (6)	26.5 (50)	20.0 (1)	33.3 (1)	66.7 (2)	-	40.0 (2)	33.3 (1)	39.6 (84)	30.8 (4)	28.9 (184)
51~100	2.4 (3)	3.4 (1)	-	4.8 (9)	-	-	33.3 (1)	33.3 (1)	-	33.3 (1)	9.0 (19)	7.7 (1)	5.7 (36)
101+	-	-	-	-	-	-	-	-	-	-	2.8 (6)	7.7 (1)	1.1 (7)
계	100.0 (123)	100.0 (29)	100.0 (48)	100.0 (189)	100.0 (5)	100.0 (3)	100.0 (3)	100.0 (3)	100.0 (5)	100.0 (3)	100.0 (212)	100.0 (13)	100.0 (636)

障碍人施設の 경우, 11~20명 규모 시설 35.4%, 6~10인 규모 시설 28.0% 등 장애인 시설은 생활인원으로 볼 때, 중소규모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浮浪人 施設은 다른 시설에 비해 중규모의 시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나타낸다. 混合施設은 21~50인 규모가 가장 많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중규모 및 대규모의 시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101인 이상의 大規模 미신고 시설에는 혼합시설 6개소와 기타시설 1개소가 있다.

평균 생활인 수는 21.79명으로 나왔고 최대 214명(표준편차 21.48)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表 3-14 참조).

〈表 3-14〉 平均 生活人數

응답시설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636	1	214	21.79	21.48

나. 國民基礎生活保障 需給者數

시설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분포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하나도 없는 시설은 전체 시설의 9.0%(56개소)로 나타났다. 1~5명이 있는 시설이 32.5%, 6~10명 26.3%로 약 60%에 이르는 시설에서 10명 이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3-15 참조). 21명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생활하는 시설도 12.0%(75개소)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表 3-15〉 國民基礎生活保障 受給者 分布

(단위: %, 개소)

구 분	빈도	비율
0명	56	9.0
1~5명	203	32.5
6~10명	164	26.3
11~20명	126	20.0
21명 이상	75	12.0
계	624	100.0

전체 수급자는 6,286명으로 조사되었고, 남자수급자 2,986명, 여자수급자 3,297명으로 여자 수급자 수가 약간 더 많았다.

전체 생활인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8.9%, 100%인 경우는 12.1%였고, 21%에서 80%의 범위에

54.7% 내외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表 3-16 참조). 생활인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평균 52.3%였다. 즉, 생활인의 받은 수급자이다.

〈表 3-16〉 生活人 對比 國民基礎生活保藏 受給者 數 比率

구 분	빈도	비율
0%	56	8.9
1~10%	41	6.5
10~20%	46	7.3
21~40%	128	20.4
41~60%	109	17.4
61~80%	106	16.9
81~99%	66	10.5
100%	76	12.1
계	628	100.0

주: 평균 - 52.3%

신고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이유를 질문할 결과 기타가 가장 많은 33.1%였고, 그 다음은 지역에 받아들여 줄 시설이 없어서의 이유로 31.0%였다(表 3-17 참조). 이 밖에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이 싫어서(8.3%), 신고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을 몰라서(5.2%) 등이었다.

이로써, 신고시설에 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고 그 중에서 상당수는 주변에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아 시설이 불충분함을 알 수 있다.

〈表 3-17〉 申告施設에 入所하지 않은 理由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신고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을 몰라서	26	5.2
신고시설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93	18.8
신고시설에 대한 인식이 싫어서	41	8.3
인근지역에 받아줄 시설이 없어서	154	31.0
시설 옮기는 것이 귀찮아서	18	3.6
기 타	164	33.1
계	496	100.0

다. 障碍人數

장애인 수를 登錄 및 未登錄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18세 이하, 18세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된 전체 장애인은 6,156명으로 파악되어 시설 총인원 13,856명의 약 44.4%로 추정된다. 즉, 미신고시설에는 장애인의 비율이 생활인의 절반에 가까워 일반 장애출현율 3%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유형은 정신지체 34.6%, 지체장애 24.1%로 정신 및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어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복장애를 갖는 사람도 1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3-18 참조).

장애인 가운데 등록된 장애인은 조사된 장애인의 77.4%인데 비해,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약 22.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등록장애인 가운데 18세 미만은 12.3%인데 비해 18세 이상이 87.7%나 차지하고 있어 후천적 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18세 이

하와 이상의 비율 차이는 더욱 높아 18세 이상이 94.5%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表 3-18〉 登録 및 未登録 障碍人數

(단위: 명, %)

구분	등록장애인		미등록장애인		계	
	18세 이하	18세 이상	18세 이하	18세 이상	빈도	비율
중복장애	160	489	24	182	855	13.9
지체장애	82	1,127	10	266	1,485	24.1
청각, 언어장애	9	143	2	91	245	4.0
시각장애	14	258	3	79	354	5.6
정신지체	244	1,663	18	206	2,131	34.6
신장, 심장질환	11	91	2	71	175	2.8
뇌병변	10	115	1	114	240	3.9
정신장애	16	243	6	297	562	9.1
발달장애	40	51	10	8	109	1.8
소 계	586 (12.3)	4,180 (87.7)	76 (5.5)	1,314 (94.5)	6,156	100.0
합 계	4,766(77.4)		1,390(22.6)		6,156(100.0)	

라. 生活人 年齡分布

생활인의 年齡分布를 보면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34.2%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장년층인 36~64세 연령대로 29.0%를 차지하였다(表 3-19 참조). 다음이 18~35세로 19.1%를 차지하였고, 아동층인 0~12세는 9.6%로 나타났다. 13~17세의 청소년층은 가장 적은 8.1%로 집계되었으나, 연령간격이 짧은 이유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로써 미신고 시설에서는 모든 연령층에 고루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노인층과 장년층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性別 생활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0~12세와 13~17세의 어린 연령

층과 18~35세, 36~64세의 청장년 연령층에서는 남자 생활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여자 생활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12세 아동층에서는 남자 생활인 수가 559명으로 10.9%, 여자 생활인 수가 514명 8.1%를 차지하고 있고, 13~17세 청소년 연령층에서 남자가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여자는 7.2%로 나타나고 있다.

〈表 3-19〉 生活人 年齡 分布

(단위: 명, %)

구 분	남 자		여 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12세	559	10.9	514	8.1	1,073	9.6
13~17세	436	8.5	468	7.2	904	8.1
18~35세	1,288	25.0	1,127	17.7	2,415	19.1
36~64세	1,963	38.2	1,294	20.4	3,257	29.0
65세 이상	895	17.4	2,948	46.4	3,843	34.2
계	5,141	100.0	6,351	100.0	11,222	100.0

18~35세 연령층의 남자 비율은 25.0%, 여자는 17.7%, 36~64세 연령층의 남자 비율은 38.2%, 여자는 20.4%로 유아, 청소년 및 장년 연령층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의 상대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노년 연령층에서 여자의 비율은 46.4%인데 비해, 남자는 17.4%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평균 수명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긴 차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 緣故者 比率

시설의 생활인 중 연고자가 있는 비율은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88.5%가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表 3-20 참조). 그중 연고자가 있는 비율이 평균 60~100%라는 시설이 제일 많은 34.3%였고, 그 다음은 연고자 평균이 10% 이하인 시설이 19.3%, 11~20%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고자가 없거나 무응답한 경우는 11.5%에 해당한다.

〈表 3-20〉 緣故者 比率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1~10%	94	19.3
11~20%	61	12.5
21~40%	56	11.5
41~60%	53	10.9
61~100%	167	34.3
없음/무응답	56	11.5
계	637	100.0

바. 入所經路

‘현 생활인의 주 입소경로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연고자 또는 주위사람의 의뢰에 의해서가 절반이 넘는 56.1%를 차지하고 있어 미신고 시설 구성원의 약 절반은 잘 아는 사람의 연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3-21 참조). 그 외에 종교단체 의뢰가 23.2%, 본인의 자진입소 7.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 平均入所期間

평균입소기간은 1~3년이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5년 27.1%, 6~9년 21.7%의 순으로 나타났다(表 3-22 참조). 1년 미만은 5.9%에 불과한 반면 10년 이상은 1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시설 생활인의 평균 입소기간이 5년 이하가 61.5%, 5년 이상이 38.5%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5년 미만이나 5년 이상의 장기 생활인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21〉 入所經路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행정관서 의뢰	22	3.8
경찰관서(법원 등) 의뢰	7	1.2
종교단체 의뢰	136	23.2
연고자 또는 주위사람 의뢰	329	56.1
병원에서 후송	9	1.5
타 시설에서 전원	13	2.2
본인이 자진입소	43	7.3
기타	27	4.6
전체	586	100.0

〈表 3-22〉 平均 入所期間

(단위: %, 개소)

구분	빈도	비율
1년 미만	36	5.9
1~3년	173	28.5
4~5년	165	27.1
6~9년	132	21.7
10년 이상	102	16.8
계	608	100.0

3. 施設現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곤란을 느끼고 있는 사람, 심신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자립생활이 곤란한 자들의 생활의 장으로서 물적·심적 환경조건을 갖추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사람에 대해 적절한 원조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신고 시설이 과연 생활인들이 생활하는데 어떠한 시설여건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신고 시설의 現況을 시설규모, 편의시설 구비 정도, 건물의 소유 형태 및 허가 유무, 지역적 특성, 시설의 안정성, 타시설과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물었다.

가. 施設の規模

시설의 規模는 대지, 건평, 방의 수, 그리고 입실구조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表 3-23>, <表 3-24>와 같다.

대지의 경우, 50평에서 100평이 24.3%, 50평 미만이 9.0%로 100평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 응답시설의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00평 이상의 비교적 대규모 시설도 1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평의 경우 20평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3.4%로 나타났고, 100~149평인 시설이 14.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건평 50평 미만의 시설은 전체 응답시설의 36.0%, 50~99평까지는 30.8%로 나타나 100평 미만의 시설이 전체의 약 65%를 상회하고 있어 건평규모에 있어서 小規模인 것을 알 수 있다. 250평 이상의 비교적 대규모의 시설은 전체 응답시설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방 수의 경우, 4~6개가 3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이

7~9개 20.1%, 1~3개 18.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1개 이상은 7.1%로 나타났다.

〈表 3-23〉 施設의 規模

구분	항 목	빈도	비율
대지	50평 미만	48	9.0
	50~100평	130	24.3
	101~150평	53	9.9
	151~200평	47	8.8
	201~300평	71	13.3
	301~400평	37	6.9
	401~500평	37	6.9
	501~999평	48	9.0
	1,000평 이상	64	12.0
	계	535	100.0
건평	20평 미만	20	3.4
	20~29평	58	9.8
	30~39평	82	13.8
	40~49평	54	9.1
	50~59평	53	8.9
	60~69평	52	8.8
	70~79평	32	5.4
	80~99평	46	7.7
	100~149평	84	14.1
	150~199평	36	6.1
	200~249평	29	4.9
	250~349평	15	2.5
	350평 이상	33	5.6
		계	594
방수	1~3개	109	18.0
	4~6개	186	30.7
	7~9개	122	20.1
	10~12개	57	9.4
	13~15개	60	9.9
	16~20개	29	4.8
	21개 이상	43	7.1
	계	606	100.0
입실구조	1인 1실	37	7.1
	2인 1실	181	34.6
	3인 1실	145	27.7
	4인 1실	83	15.9
	5인 1실	47	9.0
	6인 1실	9	1.7
	7~8인 1실	11	2.1
	9~10인 1실	6	1.1
	11인 이상	4	0.8
	계	523	100.0

입실구조의 경우, 2인 1실이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3인 1실 27.7%, 4인 1실 15.9%로 나타나 거의 80%에 이르는 시설의 입실구조는 2인 내지 4인이 1실로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1실은 7.1%인 반면, 11인 이상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시설 규모를 종합하면 조사된 미신고 시설의 평균 대지평수는 638.93평(표준편차: 1866.39), 평균 건평 110.14평(표준편차: 171.64), 평균 방의 개수는 9.3개(표준편차: 8.99), 평균 입실구조는 3.19명당 1실(표준편차: 2.02)로 나타낼 수 있다(表 3-24 참조).

〈表 3-24〉 平均 施設 規模

구 분	대지(평)	건평(평)	방 수(개)	입실구조(인)
표본수	537	594	607	525
최소값	7	8	1	1
최대값	30,000	2,700	120	21
표준편차	1866.39	171.64	8.99	2.02
평균	638.93	110.14	9.30	3.19

나. 具備된 設備

‘각 시설별로 구비되어 있는 것을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물음에 대해 90%이상 구비되어 있는 시설로는 화장실 97.0%, 조리실 91.0%로 정도여서 각 3.0%, 9.0%는 화장실 및 조리실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表 3-25 참조).

그 외 생활 필수시설로서 목욕실 89.9%, 거실 85.4%, 세탁실 79.1%의 시설만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필수 시설은 아니지만 공동시설로서 도서실, 오락실, 양호실, 상담실 등은 조사시설의 10~20% 정도가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의 영세성을 추측할 수 있다.

〈表 3-25〉 施設具備 與否(‘有’의 比率임)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거실	532	85.4
사무실	364	58.4
양호실	93	14.9
상담실	214	34.3
조리실	568	91.0
목욕실	560	89.9
세탁실	493	79.1
건조장	197	31.6
화장실	605	97.0
급배수시설	370	59.3
강당	178	28.5
도서실	97	15.5
운동장,마당	410	65.7
비상시설	103	16.5
오락실	79	12.7
쓰레기소각	191	30.6
기타	61	9.8

다. 便宜施設 具備 程度

위의 물음과 관련하여, 시설의 편의시설 적정 수준과 관련하여 ‘귀 시설에는 생활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충분)를 사용했을 때, 평균 2.60으로 부족한 편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빈도와 비율로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시설이 12.5%(76개소), 부족한 편 31.9%로 나타나 전체 응답시설의 44.4%가 시설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表 3-26 참조).

생활인을 위한 便宜施設의 충분성 정도를 건물의 허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허가 시설의 경우 부족(매우부족+부족한편)하다는 비율이 41.3%로 무허가 시설 62.5%에 비해 약 20%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무허가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보완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충분(매우충분+충분한편)하다는 시설은 허가 시설이 16.9%인데 반해 무허가 시설은 겨우 5.7%에 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허가여부에 따라 편의시설 구비정도에 있어서 나타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로 해석된다.

〈表 3-26〉 建物 許可有無別 便宜施設 具備程度

(단위: 개소, %)

구 분	허가	무허가	전체
매우 부족	9.8	28.4	12.5(76)
부족한 편	31.5	34.1	31.9(194)
보통	41.7	31.8	40.3(245)
충분한 편	15.2	5.7	13.8(84)
매우 충분	1.7	-	1.5(9)
계	85.5 (520)	14.5 (88)	100.0 (608)

주: $\chi^2=29.273^{***}$ *** $p<.001$

라. 建物 所有形態

건물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6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전세 12.2%, 월세 9.9%로 나타났다(表 3-27 참조).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곳도 1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세 및 월세라고 응답한 시설에 대해 그 가격을 물어본 결과, 전세의 경우 평균 전세금액은 약 4600만원 정도이고 최저 60만원부터 최고 3억 5천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월세의 경우, 평균 월세금

액은 약 52만원 정도이며, 최소 1만원부터 최고 230만원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表 3-27〉 建物の 所有形態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율
자 가	419	67.1
전 세	76	12.2
월 세	62	9.9
무 료	67	10.7
계	624	100.0

마. 建物 許可 與否

다음, 시설의 허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허가건물이 전체 응답시설의 85.2%로 대부분 허가된 건물이었으나 무허가 건물도 14.8%나 되었다(表 3-28 참조).

〈表 3-28〉 建物の 許可 有無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허 가	531	85.2
무허가	92	14.8
계	623	100.0

바. 施設 形態

시설 형태와 관련하여 ‘가정집과 유사한 형태’가 70.9%를 차지하여 미신고 시설의 시설형태는 가정집과 유사한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신고시설과 유사한 전형적인 시설형태’도 16.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表 3-29 참조). 한편 ‘가건물 또는 비닐하우스 형태’는 30개 시설로 4.8%, 그 밖의 형태가 7.4%를 나타내 안전하지 못한 시설상태에 있는 시설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형태를 건물의 허가 유무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허가시설의 경우 가정집과 유사한 형태가 73.6%를 나타내 허가시설 가운데 상당수의 미신고 시설이 가정집과 유사한 형태의 소규모 시설인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전형적인 시설 형태의 대규모 시설도 18.2%를 차지하고 있었다.

허가시설로 가건물, 비닐하우스 형태나 그 밖의 형태에 있는 시설은 약 8%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허가 시설의 경우 역시 가정집과 유사한 형태가 53.4%를 나타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무허가 시설로서 허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시설 형태는 가건물, 비닐하우스 형태와 기타 시설형태로 가건물, 비닐하우스 25.0%(허가 1.5%), 기타 11.4%(허가 6.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허가과 무허가에 따라 시설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3-29〉 建物 許可有無別 施設の 形態

(단위: 개소, %)

구 분	허가	무허가	전체
가정집과 유사한 형태	73.6	53.4	70.7(432)
전형적인 시설 형태	18.2	10.2	17.0(104)
가건물, 비닐하우스 형태	1.5	25.0	4.9(30)
기타	6.7	11.4	7.4(45)
계	100.0 (523)	100.0 (88)	100.0 (611)

주: $\chi^2=93.878^{***}$ *** $p<.001$

사. 建築時期

시설의 특성을 건축 후 지난 기간정도, 시설의 소재지역 특성, 시설의 안정성 정도에 대한 인식,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물었다.

시설의 건축 후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묻는 물음에 3~9년이 40.1%로 가장 많았고, 10~19년 32.0%, 20년 이상 19.4%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1980년대 이후부터 미신고 시설이 증가된 것과 함께 건축 후 기간도 시설의 설립과 함께 지나온 것을 알 수 있다(表 3-30 참조). 건물의 허가 여부에 따른 건축시기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表 3-30〉 建築 後 經過時間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2년 이하	53	8.6
3~9년	248	40.1
10~19년	198	32.0
20년 이상	120	19.4
전 체	619	100.0

아. 地域의 特性

미신고시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45.58(292개소)가 中小都市에 소재 해 있었고, 그 다음이 대도시로 31.2%(199개소), 군지역도 22.9%(146개소)나 되었다(表 3-31 참조).

시설의 소재지역 특성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41.1%(258개소)로 나타났고, 다음이 일반 주택가 지역에 위치한 시설로 38.3%(240개소)로 나타났다(表 3-32 참조). 농촌지역에는 물가가 저렴해서 미신고 시설의 설치가 용이하여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딴 지역에 위치한 시설이 12.4%, 그 외 상가지역 3.8%, 기타 3.2%, 공단지역 1.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表 3-31〉 未申告 施設 所在地域 規模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대도시	199	31.2
중소도시	292	45.8
군지역	146	19.4
계	637	100.0

〈表 3-32〉 施設 所在地域의 特性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주 택 가	240	38.3
상가지역	24	3.8
공단지역	7	1.1
외딴지역	78	12.4
농촌지역	258	41.1
기 타	20	3.2
계	627	100.0

자. 施設의 安全性

시설의 安全性과 관련하여 ‘귀 시설의 안전성은 어떻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안전) 가운데 평균 3.64(표준 편차: 0.95)로 안전한 편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빈도와 비율로 살펴보면, 2.5%(18개소)가 매우 불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불안정한 편이라고 응답한 시설도 9.9%(72개소)나 되어 약 12.4%의 시설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表

3-33 참조).

시설의 安全性을 건물의 許可 有無別로 차이가 있는 가를 교차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허가 시설의 경우 불안전(매우불안전+불안전한편)하다는 비율은 8.7%로 나타난 반면 무허가 시설은 26.1%로 나타나 역시 무허가 시설의 경우 시설의 안전성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안전(매우안전+안전한편)은 허가시설의 경우 64.5%로 나타난 반면 무허가 시설의 경우 38.0%로 나타나 시설의 안전성에 있어서 건물의 허가 여부에 따라서 시설의 안전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로 해석된다.

미신고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안전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表 3-33〉 建物 許可有無別 施設의 安全性

(단위: 개소, %)

구 분	허가	무허가	전체
매우 불안전	1.7	7.6	2.6(16)
불안전한 편	7.0	18.5	8.7(54)
보통	26.8	35.9	28.2(175)
안전한 편	45.2	33.7	43.5(270)
매우 안전	19.3	4.3	17.1(106)
계	88.2 (529)	14.8 (92)	100.0 (621)

주: $\chi^2=37.383$ *** $p<.001$

4. 財政現況

財政現況에 대해서는 2000년 한 해 동안 수입과 지출내용, 후원금 지원자 수, 1인당 월평균 생활비, 부채여부, 재정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정도 등으로 나누어 물었다.

가. 收入과 支出

2000년 한 해 동안의 收入과 支出 내역을 조사 한 결과 총 637개의 조사대상가운데 476개의 시설이 응답하였으나, 각 항목별로 응답자 수의 차이가 있다.

수입의 총액은 심한 편차가 있기는 총액 평균은 약 1억 1천백여 만원(자체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초생활급여, 투자수익금, 후원금, 기타의 평균 금액을 합친 액수임)으로 조사되었다(表 3-34 참조).

〈表 3-34〉 2000年度 平均 收入 및 支出 內譯

(단위: 개소, 원, %)

구분		응답 시설수	평균	비중	표준편차
수 입	총 액	476	111,879,516	100.0	84696119.94
	자체부담금	300	22,217,391	19.8	31441211.38
	정부지원금	78	11,832,383	10.6	25710013.35
	기초생활급여	368	22,142,670	19.7	25397383.05
	투자수익금	58	11,952,835	10.7	24322798.79
	후 원 금	426	29,913,458	26.7	64332436.42
	기 타	165	13,820,779	12.4	26487566.34
지 출	총 액	461	81,347,104	100.0	79417191.27
	관리운영비	450	20,355,516	25.0	33658965.57
	생 계 비	455	25,813,579	31.7	36626890.67
	인 건 비	283	23,986,971	29.5	37612547.32
	기 타	267	11,191,038	13.8	19855591.80

이 가운데 자체부담금은 평균 2220여 만원으로 수입 총액의 1/5 수준인 19.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부지원 비중은 수입총액 평균의 10.6%로 자체부담금의 절반 수준이다. 기초생활급여로 인한 수익금이 19.7%, 투자 수익금 10.7%, 후원금이 26.7%로 수입 총액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수익금이 약 1천4백만원으로 수

입총액의 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출 총액은 광범위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2000년도 한 해 지출 평균(관리운영비, 생계비, 인건비, 기타 평균 금액을 합친 액 수입)은 약 8천1백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출 총액 가운데 生計費의 비중이 가장 높은 31.7%로 나타났다. 인건비 29.5%, 관리운영비 25.0%로 지출 총액의 절반 이상이 시설의 관리유지에 소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收益事業 施行與否

수익사업 시행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시설은 68.4%로 상당 시설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반면, 31.6%의 시설은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表 3-35 참조).

〈表 3-35〉 收益事業 施行與否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수익사업 시행	193	31.6
수익사업 시행하지 않음	418	68.4
계	611	100.0

다. 後援者 數

연간 後援者 수와 관련하여 ‘귀 시설에 후원금을 낸 분은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라는 물음에 전혀 없음이 3.0%(14개소), 1~20명이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매월 후원자 수가 2명도 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表 3-36 참조). 다음

이 101~300명으로 16.2%, 21~40명이 12.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36〉 年間 後援者數

(단위: 개소, %)

구 분	개인	재단	종교단체	임의단체 및 기타	전체
없 음	3.4	4.3	1.4	4.3	3.0(14)
1 ~ 20명	40.8	17.4	28.3	28.3	34.8(165)
21 ~ 40명	14.6	8.7	9.4	6.5	12.0(57)
41 ~ 60명	11.6	8.7	12.3	8.7	11.4(54)
61 ~ 80명	3.0	4.3	4.3	2.2	3.4(16)
81 ~ 100명	6.0	-	8.0	8.7	6.5(31)
101 ~ 300명	11.6	30.4	21.7	19.6	16.2(77)
301 ~ 500명	4.1	13.0	8.0	8.7	6.1(29)
501명 이상	4.9	13.0	6.5	13.0	6.5(31)
계	100.0 (267)	100.0 (23)	100.0 (138)	100.0 (46)	100.0 (474)

주: 각 셀의 사례수가 5 이하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라. 月平均 生活費

1인당 月平均 生活費와 관련하여 ‘귀 시설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1인당 최저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20~29만원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이 10~19만원 29.7%로 약 60% 이상의 시설 1인당 월 평균 생활비가 10~29만원임을 알 수 있다(表 3-37 참조). 반면,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시설도 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술통계량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50만원으로 1인당 월 평균 약 23만원(표준편차: 12.76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表 3-37〉 1人當 月平均 生活費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10만원 미만	33	6.2
10~19만원	158	29.7
20~29만원	180	33.8
30~39만원	104	19.5
40~49만원	35	6.6
50만원 이상	22	4.1
계	535	100.0

주: 평균: 23.38만원.

마. 負債有無

시설에서 負債를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귀 시설은 부채를 갖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시설은 256개소로 약 45%를 차지하였고, ‘아니오’의 응답은 약 55%로 조사되어 미신고 시설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수가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38 참조).

부채의 액수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4억 2천만까지 부채액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액수는 5332만원이고 표준편차는 6385.94만원이다.

부채의 존재 여부가 運營主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 본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채가 있는 경우, 운영주체가 개인인 비율이 54.8%, 임의단체 및 기타 56.9%로 다른 운영주체(재단 14.3%, 종교단체 29.3%)에 비해 부채를 갖는 비율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表 3-38〉 負債 有無

(단위: 개소, %)

구 분	개인	재단	종교단체	임의, 기타	전체
부채 있음	54.8	14.3	29.3	56.9	45.1(256)
부채 없음	45.2	85.7	70.7	43.1	54.9(311)
계	55.4 (314)	4.9 (28)	30.7 (174)	9.0 (51)	100.0 (567)

주: $\chi^2=42.975^{***}$ *** $p<.001$

부채를 갖고 있는 시설에 한하여 그 理由를 물은 결과, ‘시설증·개축을 위해’가 56.5%로 가장 많아 미신고 시설의 시설 증개축의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表 3-39 참조). 다음이 운영비 부족 16.2%, 생계비 부족 3.7%, 인건비 부족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응답도 20.8%로 조사되었다.

〈表 3-39〉 負債를 갖게 된 理由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 율
시설의 증·개축을 위해	122	56.5
운영비 부족으로	35	16.2
인건비 부족으로	6	2.8
생계비 부족으로	8	3.7
기타	45	20.8
전 체	216	100.0

바. 財政 充分 程度

각 시설의 財政與件과 관련하여 ‘귀 시설의 재정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거의 70%에 이르는 응답자가 ‘부족’(매우 부족+부족한편)하다고 응답했고, 충분(매우충분+충분한편)하다는 시설

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表 3-40 참조). 그 외에 약 30%의 시설은 ‘보통’으로 조사되었다.

〈表 3-40〉 財政 充分程度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부족	111	17.7
부족한 편	318	50.8
보통	187	29.9
충분한 편	7	1.1
매우 충분	3	0.5
전 체	626	100.0

5. 人力

가. 施設長의 一般的 特性

1) 人口社會學的 特性

미신고 시설은 小規模로 운영되는 곳이 주를 이루어 施設長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미신고시설의 시설장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表 3-41 참조).

未申告 社會福祉施設長은 52.4%가 남성, 46.2%가 여성으로 男性이 약간 더 많았다.

시설장의 學歷으로는 36.8%가 대재/대졸, 그리고 24.8%가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높은 평균 학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 이하도 11.6%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宗教는 기독교 60.7%, 천주교 33.8%, 그리고, 불교 3.9%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시설장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 종교에 대한 信念 및 소명의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와 천주교가 94.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表 3-41〉 施設長の 一般的 特性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전체	637	100.0
성별		
남 성	324	52.4
여 성	294	46.2
무응답	19	-
학력		
초등학교 이하	29	4.8
중학교졸	41	6.8
고등학교졸	135	22.4
대재/대졸	222	36.8
대학원졸 이상	150	24.8
기타	27	4.5
무응답	33	-
종교		
불교	24	3.9
기독교	377	60.7
천주교	210	33.8
종교없음	9	1.4
기타	1	0.2
무응답	16	-
결혼상태		
기혼	380	62.4
미혼	156	25.6
사별	30	4.9
별거/이혼	18	3.0
기타	25	4.1
무응답	28	-

〈表 3-41〉 계속

전체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연령			
20세 이상 30세 미만	2	0.3	48.87 (9.576)
30세 이상 40세 미만	94	15.9	
40세 이상 50세 미만	239	40.5	
50세 이상 60세 미만	161	27.3	
60세 이상	94	15.9	
무응답	47	-	
사회복지 시설 근무 연수			
5년 미만	98	24.8	9.42 (6.734)
5년 이상 10년 미만	109	27.6	
10년 이상 20년 미만	158	40.0	
20년 이상 30년 미만	22	5.6	
30년 이상	8	2.0	
무응답	242	-	

시설장의 62.4%가 기혼이며, 미혼 25.6%로 기혼이 주를 이루었지만 미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平均年齡은 48.87세이며, 40세 이상 50대 미만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7.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0세 이상 40세 미만도 15.9%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60세 이상도 15.9%로 나이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높은 연령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 근무 연수는 평균 9.42년이며, 40.0%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7.6%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4.8%나 되어 시설을 설립함과 동시에 시설장이 된 경우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2) 資格證所持 與否 및 經歷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專門性의 문제이다. 또한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도 바로 이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설장의 전문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가 6.8%(43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소지자가 6.1%(39명)로 전체 사회복지사 자격증(1, 2, 3급 포함)을 소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3.8%(88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무응답이 59.8%(381명)로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응답률보다 더 높는데 무응답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 않았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시 요구되는 사례관리 또는 상담기법 등의 전문성이 전혀 교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장들을 위한 보수 교육 등 필요한 지식 습득을 위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겠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외에 교사 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4%(168명)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외에 다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表 3-42 참조).

시설장이 된 연도를 묻는 항목에 1990년 이후 2000년 이전에 시설장이 된 경우가 68.2%로 가장 많았으며 1980년 이후 1990년 이전이 18.3%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000년 이후도 10.5%로 최근 신생된 시설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미신고 시설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아 신생 시설들이 자꾸 생성되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表 3-42〉 施設長の 資格證 所持與否 및 經歷

(단위: 개소, %)

전체	빈도	비율
자격증		
1급 사회복지사	43	6.8
2급 사회복지사	39	6.1
3급 사회복지사	6	0.9
교사자격증	37	5.8
기타	131	20.6
무응답	381	59.8
전 체	637	100.0
시설장이 된 연도		
1970년 이전	4	0.7
1970년 이후 1980년 이전	13	2.3
1980년 이후 1990년 이전	103	18.3
1990년 이후 2000년 이전	384	68.2
2000년 이후	59	10.5
무응답	74	-
전 체	637	100.0

나. 従事者

1) 従事者數

미신고시설의 종사자 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종사자 수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해 정확한 종사자의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表 3-43>을 통해 전체적인 경향은 살펴볼 수 있다. 시설 종사자 規模는 시설에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이 임시직보다 많지만 전체 종사자 중 임시직 비율도 많았다. 한 시설에 정규직 가운데 종사자 수 2~3명이 전체 4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가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1.1%로 종사자 3명 이하 시설이 전체 70.8%로 대체로 종사자 수가 작았다.

임시직 중 상근직 역시 49.0%가 2~3명, 33.3%가 1명으로 정규직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임시직 시간제는 이보다 적은 인원수로 66.7%가 1명, 22.8%가 2~3명으로 임시직 시간제 고용은 정규직이나 임시직 상근직과 비교한다면 소수이지만 인원수는 역시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表 3-43〉 雇傭形態別 従事者數

(단위: 개소,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1명	127	55.8	147	44.8	64	21.1
2~3명	85	36.8	124	37.8	151	49.7
4~5명	8	3.5	38	11.6	51	16.8
6명 이상	9	3.9	19	5.8	38	12.5
전체	231	100.0	328	100.0	304	100.0
임시직 상근직						
1명	55	63.2	68	62.4	34	33.3
2~3명	28	32.2	36	33.0	50	49.0
4~5명	4	4.6	5	4.6	13	12.7
5명 이상	0	0	0	0	5	4.9
전체	87	100.0	109	100.0	102	100.0
임시직 시간제						
1명	13	68.4	47	73.4	53	66.7
2~3명	4	21.1	14	21.9	16	22.8
4~5명	2	10.5	3	4.7	3	5.3
5명 이상	0	0	0	0	3	5.3
전체	21	100.0	64	100.0	57	100.0

2) 月平均 賃金

시설 정규직 종사자들의 월 평균 賃金은 7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이 2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50만원 미만이 25.9%,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은 24.8%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表 3-44 참조). 결국 월 평균 임금 90만원 미만이 77.0%를 차지하는 것이다. 월평균 임금 110만원 이상은 20.4%에 불과하여 4인 기준 最低生活費가 98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表 3-44〉 従事者 月平均 賃金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백분율
정규직		
50만원 미만	69	25.9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66	24.8
7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70	26.3
90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27	10.2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6	2.3
13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2	.8
150만원 이상	26	9.8
전 체	266	100.0
임시직 상근직		
50만원 미만	36	37.9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2	33.7
7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7	7.4
90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9	9.5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	1.1
13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2	2.1
150만원 이상	8	8.4
전 체	95	100.0
임시직 시간제		
50만원 미만	29	52.7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16	29.1
7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4	7.3
90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2	3.6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0	0.0
13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	1.8
150만원 이상	3	5.5
전 체	55	100.0

시설 정규직보다 임시직 상근직이나 임시직 시간제 종사자는 훨씬 더 낮은 임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임시직 상근직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37.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가 33.7%로 70만원 이하가 전체 71.6%를 차지하였다. 마찬가지로 임시직 시간제 종사자는 월평균 임금 50만원 이하가 52.7%, 5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가 29.1%이다.

2001년 韓國社會福祉士協會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사회복지사의 평균 연봉액은 1671만원(표준편차 696.79)로 나타났다(<表 3-45> 참조). 이에 반해 미신고시설 종사자들의 연봉액은 정규직 882.72만원(표준편차 725.96), 임시상근직이 773.04만원(표준편차 736.02), 그리고 임시시간제가 604.32만원(표준편차 476.81)로 임금 수준이 일반 사회복지사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表 3-45〉 従事者 年俸額 比較

(단위: 명, 만원)

구분		표본수	평균 연봉액	표준편차
신고시설	일반사회복지사	5,455	1,671.00	696.79
미신고 시설	정규직	266	882.72	725.96
	임시상근직	64	773.04	736.02
	임시시간제	55	604.32	476.81

주: 일반사회복지사의 연봉액은 한국사회복지사(2000),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 p.58을 재구성함.

3) 主 勤務 形態

종사자의 주 근무형태는 ‘매일 거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 70.5%였다. 이는 종사자들이 시설에서 근무한다기보다는 입소자

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시설이 가정 내에 있는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表 3-46 참조). 일반적으로 생활시설의 경우는 2교대 근무도 많이 하는데 미신고 시설의 경우에는 특히 ‘매일 거주’가 다수 차지하여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表 3-46〉 従事者の主 勤務形態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매일 출퇴근	95	18.3
매일 거주	366	70.5
2교대로 거주	12	2.3
기 타	46	8.9
계	519	100.0

4) 従事人力의 充分性

시설의 従事人力에 대해서 시설의 73.9%가 종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분하다고는 단지 전체의 4.6%만이 응답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준다(表 3-47 참조).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와 제반 여건상 충분한 인력을 보강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시급한 문제는 인건비 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종사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생활인들에게 단지 숙식만을 제공하는 응급구호적인 단계를 지나 이제는 생활인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한다면 종사원의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하겠다.

다행히 근래 들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

족한 인력분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통해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보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表 3-47〉 従事人力의 充分性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부 족	430	73.9
보 통	125	21.5
충 분	27	4.6
계	582	100.0

다. 自願奉仕人力

1) 自願奉仕者數

自願奉仕 人力도 충분치는 못한 상황이다. 연 평균 자원봉사자 인원 50명 미만이 전체 시설의 3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50명 이상 100명 미만 14.7%,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이 9.8%로 연 평균 자원봉사자 인원이 150명 미만이 56.9%를 차지한다(表 3-48 참조).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종사인력의 부족분을 자원봉사로 완화시키기에 限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48〉 自願奉仕者 年人員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50명 미만	172	32.4
50명 이상 100명 미만	78	14.7
100명 이상 150명 미만	52	9.8
150명 이상 300명 미만	82	15.4
300명 이상 500명 미만	46	8.7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55	10.4
1,000명 이상	46	8.7
계	531	100.0

2) 自願奉仕 活動領域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活動領域을 보면, 봉사자의 81.2%가 청소, 취사, 세탁 등의 노력봉사를 주로 하고 있었다. 봉사자의 42.6%는 이미용 등의 기술봉사를 담당하고 있었다(表 3-49 참조). 이외에도 교육봉사 15.9%, 말벗이나 상담 등의 정서봉사를 15.9%가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외출에 필요한 차량 지원 및 동행, 간병봉사, 그리고 질병상담 및 진료 등 의료 봉사에도 참여하여 단순업무부터 전문적 봉사까지 다양하게 담당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자원봉사의 주요 활동영역은 노력봉사로 다양한 봉사활동의 전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表 3-49〉 自願奉仕者の 主要 奉仕 内容(예의 比率임).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노력봉사	480	81.2
간병봉사	49	8.3
정서봉사	94	15.9
의료봉사	45	7.6
교육봉사	94	15.9
기술봉사	252	42.6
외출보조 봉사	53	9.0
업무지원 봉사	10	1.7
기타봉사	39	6.6

3) 自願奉仕者 充分性

요즈음 일반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의무화되면서 자원봉사 인력이 전에 비해 많이 확충되었다. 하지만 소규모거나 미신고 시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또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자원봉사 인원도 대개 큰 기관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규모 미신고 시설의 자원봉사 인력이 충분치는 못하리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 부족한 종사인력의 부족분을 자원봉사인력으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원봉사인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54.3%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5.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表 3-50 참조). 자원봉사인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시설은 전체의 10.2%에 불과하다. 현 자원봉사 인력으로는 시설의 종사인력의 부족분을 채우기에는 충분치 못하므로, 자원봉사 인력의 擴充이 필요하다.

〈表 3-50〉 自願奉仕人力 充分程度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부 족	319	54.3
보 통	208	35.4
충 분	60	10.2
계	587	100.0

6. 申告 意向

가. 申告 意向

현재의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轉換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신고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8%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表 3-51 참조). 신고를 원하지 않는 시설은 전체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表 3-51〉 申告施設로 轉向意向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신고 의향 없음	220	37.2
신고 의향 있음	371	62.8
계	591	100.0

나. 申告忌避 理由

신고시설로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시설을 대상으로 신고를 원하지 않는 理由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이 시설이 신고 基準

未滿이어서(33.0%)였다. 그 다음으로 소규모 운영이 더 효과적이어서(24.9%), 그리고 신고후 行政的 規制 및 干涉이 싫어서(13.9%)라는 이유 등도 지적하였다(表 3-52 참조).

〈表 3-52〉 申告施設로 轉向을 원하지 않는 理由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시설이 신고기준 미만이므로	69	33.0
신고 후 행정적 규제 및 간섭이 싫어서	29	13.9
신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18	8.6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운영되므로	5	2.4
사회사업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16	7.7
소규모 운영이 더 효과적이어서	52	24.9
기 타	20	9.6
계	209	100.0

또한 신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8.6%), 사회사업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7.7%)라는 이유도 있었다. 이에 신고기준 미만 또는 신고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신고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또한 ‘신고 후 행정적 규제 및 간섭이 싫어서’라는 응답도 13.9%를 차지하는데 사회복지 시설들이 지나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현실을 생각하여 행정적 규제에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다. 申告施設로의 轉向이 어려운 理由

또한 신고시설로 전환을 원하지만 전환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질

문한 결과, 해당 시설의 과반수 이상인 67.6%가 ‘시설의 규모를 신고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하였다(表 3-53 참조). 또한 12.1%는 재정의 압박으로 사회복지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3.5%)라는 이유가 신고 미전향 이유와 중복되었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접수를 거부하기 때문에라는 경우도 소수(2.9%) 있었다. 그 외 시설장이 상근하기 어려워서의 응답은 0.6%, 기타의 이유도 13.3% 있었다.

〈表 3-53〉 申告施設로의 轉向 困難 理由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시설의 규모를 신고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213	67.6
재정의 압박으로 사회복지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서	38	12.1
시설장이 상근하기 어려워서	2	0.6
지방자치단체가 접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9	2.9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11	3.5
기타	42	13.3
계	315	100.0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미신고 시설의 다수가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으로나 운영지침 등에 따르기 힘든 경우가 많아 전향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申告施設로의 미전향 이유를 보다 심층 분석하여 신고시설로 전향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는 시설들이 전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라. 申告施設 設置基準에 대한 見解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위한 시설 설비 및 규모 기준에 대하여 79.9%가 ‘높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알맞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45%에 불과하여, 약 80% 가량이 시설 설비 및 규모 기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3-54 참조).

앞에서 미신고이유가 신고기준에 미달되어서,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등 申告 基準 또는 節次에 대한 언급이 되었었다. 이에 영세한 소규모 시설을 위해 신고기준을 多樣化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겠다.

〈表 3-54〉 申告施設 設置基準에 대한 見解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너무 높다	180	31.7
높은 편이다	274	48.2
알맞다	76	13.4
낮은 편이다	30	5.3
매우 낮다	8	1.4
계	568	100.0

마. 未申告施設의 어려운 점

미신고시설로서의 어려운 점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으며(67.6%), ‘시설에 대한 오해가 많다(13.8%)’, 그리고 ‘후원받기 어렵다(11.0%)’라는 이유는 소수로 그 뒤를 이었다(表 3-55 참조).

〈表 3-55〉 未申告 施設の 어려운 점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398	67.6
후원받기 어렵다	65	11.0
자원봉사자가 꺼린다	5	0.8
시설에 대한 오해가 많다	81	13.8
기타	40	6.8
계	589	100.0

결국 78.6%가 支援金 부족에 대한 애로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신고 시설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미신고 시설의 경우 일반인들이 편견을 갖기 쉬운데, 시설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13.8%나 되었다. 이는 또한 재정적인 후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신고 시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개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담당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바. 未申告 施設の 좋은 점

미신고 시설로서의 利點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타났다(表 3-56 참조); 첫째, ‘생활인의 입퇴소가 용이하다(31.0%)’, 둘째,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25.3%)’, 셋째, ‘행정업무가 많지 않다(24.2%)’.

위 세 가지 이유(80.5%) 모두 다 행정적 업무 차원으로서, 역으로

신고시설일 경우 생활인은 입소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시설의 입소가 어렵고, 종사자들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적 규제로 인해 자율적 의사결정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신고시설에 대한 입소 및 업무규제가 너무 엄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설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재편될 필요가 있겠다.

〈表 3-56〉 未申告 施設の 좋은 점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행정업무가 많지 않다	139	24.2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	134	25.3
시설평가에서 자유롭다	49	8.5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9	3.3
생활인의 입퇴소가 용이하다	178	31.0
기타	44	7.7
계	574	100.0

7. 他施設과의 關係

가. 社會福祉施設과의 連繫與否

지역 내 다른 시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귀 시설과 지역사회 내의 다른 복지기관 및 시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4.0%, 별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25.2%나 되어 약 40%의 응답자가 지역사회 내 타 시설과의 유대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表 3-57 참조). 반면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 시설이 29.3%, 매우 밀접한 시설 3.8%로 전체 시설의 약 3분의 1은 다른 시설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57〉 他施設과의 關係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 율
전혀 관계가 없다	88	14.0
별 관계가 없다	158	25.2
그저 그렇다	174	27.7
밀접한 편이다	184	29.3
매우 밀접하다	24	3.8
전 체	628	100.0

운영주체별로 다른 시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관계 없다’, ‘그저 그렇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두 30% 내외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운영주체가 재단인 경우 다른 시설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가 60% 이상을 차지하여 개인, 종교단체, 그리고 임의단체 및 기타의 운영주체와 비교된다(表 3-58 참조).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表 3-58〉 運營主體別 他施設과의 關係

(단위: 개소, %)

구분	개인	재단	종교단체	임의단체,기타	전체
관계없다	41.8	17.9	38.1	37.0	39.1(238)
그저그렇다	27.0	25.0	29.1	29.6	27.8(169)
밀접한 관련있다	31.2	57.1	32.8	33.3	33.1(201)
계	55.4 (337)	4.6 (28)	31.1 (189)	8.9 (54)	100.0 (608)

주: $\chi^2=9.604$ $p=0.142$

나. 地域住民의 認識

시설에 대한 주민의 認識과 관련하여 ‘귀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의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시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응답은 25.2%를 차지하였고, 약간 도움을 주는 편이라고 한 응답자도 46.0%를 차지하여 약 70% 이상의 시설은 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3-59 참조). 한편 무관심하다고 응답한 시설도 25.3%, 혐오시설로 접촉을 기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3.5%(22개소)나 되었다.

〈表 3-59〉 未申告 施設에 대한 住民의 認識

(단위: 개소, %)

구분	빈도	비율
시설에 대하여 여러 도움	158	25.2
약간 도움	289	46.0
무관심	159	25.3
혐오시설로 접촉을 기피	22	3.5
전체	628	100.0

다. 行政機關과의 關係

시설에 대한 行政機關의 態도와 관련하여 ‘귀 시설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21.0%에 불과하였고, 소극적으로 지원한다 58.6%로 나타났다(表 3-60 참조). 시설에 대해 무관심 17.1%, 시설정리를 권고한다는 경우도 3.3%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시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소극적인 도움이나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運營主體別로 행정기관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시설운영에 적극 지원한다는 법인이 34.5%로 다른 운영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소극적 지원은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가 60.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 ‘무관심하다’는 임의단체 및 기타의 비율이 약간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表 3-60〉 運營主體別 行政機關의 態度

(단위: 개소, %)

구 분	개인	법인	종교단체	임의, 기타	전체
시설운영에 적극지원	21.1	34.5	19.8	16.4	20.9(126)
어느정도 소극지원	60.2	41.4	57.8	61.8	58.7(354)
무 관 심	13.9	24.1	20.3	21.8	17.1(103)
시설정리 권고	4.8	-	2.1	-	3.3(20)
계	100.0 (332)	100.0 (29)	100.0 (187)	100.0 (55)	100.0 (603)

주: $\chi^2=20.233$ $p=0.163$

라. 行政機關으로부터 支援 分野

행정기관의 支援分野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귀 시설을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지원해 주는 분야는 주로 어느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행정적 편의가 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주부식·피복 등 物品支援 23.6%, 금전적 지원 19.7%의 순으로 나타나 행정기관의 지원은 주로 물질적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이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表 3-61 참조). 그 외에 입소자 알선 및 관리는 3.3%에 불과한 반면, 지원 안함도 1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기관의 지원이 한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表 3-61〉 行政機關으로부터 받는 支援 內容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금전적 지원	106	19.7
주부식, 피복 등 물품지원	127	23.6
행정적 편의	147	27.3
입소자 알선 및 관리	18	3.3
기타	65	12.1
지원 안함	76	14.1
전체	539	100.0

마. 가장 원하는 支援分野

원하는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귀 시설에서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시설신축이 27.7% (166개소)로 가장 높아 시설의 낙후에 대한 요청이라고 해석된다(表 3-62 참조). 그 다음이 종사자 인건비 21.4%, 생계유지비 21.4%로 주로 기초적인 시설과 인건비 및 생계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表 3-62〉 가장 원하는 支援分野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비율
시설 신축	166	27.7
시설 증개축	54	9.0
시설관리, 유지, 보수	72	12.0
종사자 인건비	128	21.4
생계유지비	128	21.4
교육비	15	2.5
의료비	11	1.8
기타	25	4.2
계	599	100.0

이 외에도 시설관리·유지·보수 12.0%, 이것과 관련하여 시설 증·개축이 9.0%로 시설과 관련한 지원에 대한 요망이 전체의 절반 가량 차지하고 있어 시설문제의 해결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第 2 節 事例調査 結果

미신고 시설 사례조사 20개소 결과를 종합해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완하려 하였다. 점검항목으로는 크게 시설운영주체 및 유형, 시설형태, 거주자 보호현황, 재정상황, 신고관련 사항을 살펴보았다.

1. 施設運營 主體 및 從事者, 生活人數

사례조사 대상 시설의 운영주체는 거의 대부분 개인이고, 나머지는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었다.

종사자수는 실태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1명에서 2명 정도의 소수만을 고용하고 있었다. 보호인원은 6명에서 80명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규모가 다양하나, 대부분의 시설은 2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나타나 實態調査 結果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表 3-63 참조).

보호인은 대부분 연고자가 있어서 미신고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3-63〉 事例調査施設 運營主體 및 類型

시설번호	운영주체	종사자수	보호인원	시설유형
1	개인	2	25 (22)	장애인보호작업시설
2	천주교회	1	7 (7)	그룹홈 형태의 아동시설
3	교회	2	22 (13)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4	개인(목사)	1	5 (2)	알콜중독 부랑인 수용
5	개인	1	12 (2)	장애인재활시설(그룹홈)
6	개인	2	6 (4)	노인생활시설(그룹홈)
7	개인	1	6 (3)	장애인 보호작업장
8	개인	58(직원)	58 (0)	장애인 고용시설
9	개인(목사)	2	80 (17)	부랑인시설
10	개인, 교회	2	30 (21)	노인시설
11	개인	2	6 (2)	청소년시설
12	개인	3	16 (1)	장애인시설
13	개인	2	13 (1)	정신요양시설
14	개인	1	11 (4)	혼합시설
15	개인	1	9	노인시설
16	개인	6	20	청소년시설
17	개인	4	13	장애인시설
18	개인	2	35	부랑인시설
19	개인	없음	7	혼합시설

주: ()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임.

2. 施設 建物 形態 및 問題點

시설 건물 형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은 주택에서 생활인을 보호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었다(表 3-64 참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는 편의시설이 미비한 곳이 대부분이다.

시설형태가 아니라 가정집에서 주로 생활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협소하고, 건물은 낡은 곳이 많다. 특히 화재, 사고 등으로

부터 취약한 상황이다. 장소가 협소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목욕시설, 세면시설, 세탁장 등 필수적인 공간이 없는 곳도 있어, 미신고시설의 시설의 열악성을 볼 수 있다.

〈表 3-64〉 事例調査施設 施設 建物 形態 및 問題點

시설번호	시설 건물 형태	문제점 및 특성
1	주택건물 2개동	가정적 분위기를 선호
2	결손가정 아동보호시설(2층 건물)	소재지가 청소년 유해환경시설과 인접함.
3	건물 60평	프로그램의 미비
4	주택가의 민가를 개조	안전설비 미비
5	컨테이너 3동에서 황태 임가공	작업환경 열악, 체계적 직업재활이 어려움.
6	가정집에서 노인보호	시설기준 미비
7	가게를 임대하여 장애인 고용	장소 열악, 편의시설미비
8	건물 지하 및 1층 사용, 2층은 기숙사	시설 협소, 편의시설미비
9	교회에서 부랑인 보호	장소 협소
10	단층 슬라브집 구식 개인주택	목욕 세면시설 부족
11	주택가 개인가정집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12	공원부지 개인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	건물이 낡고 시설부족
13	재래시장 거리 위치(지하)	공기가 탁하고 화재위험
14	빌라 반지하 개인주택	목욕실, 세탁실 부재
15	7명 정원, 방 3개(2인 1실)	방의 확충 필요
16	23명 정원, 방 4개 (5인 1실)	교육 장비 필요
17	9명 정원, 방 6개 (2인 1실)	자립을 위한 교육필요
18	35명 정원, 방 14개 (3인 1실)	방의 확충 필요
19	13명 정원, 방 4개 (3인 1실)	난방시설 부족

3. 財政現況

施設 財政現況은 재원은 대부분 자부담이고, 후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에 의존하고 있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도 1개소 있었다(表 3-65 참조).

시설 대부분이 경비, 운영비, 교육비, 식비 등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재정의 어려움이 없는 시설은 주식회사 형태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개소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용의 부족으로 시설의 증개축이나 전문 종사자의 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表 3-65〉 事例調査施設 財政現況

시설번호	재원	문제점
1	자부담	-
2	행정기관의 간접 우려. 신고를 꺼림	학자금 융자 필요
3	자부담	후원금 등 재원 부족으로 복지서비스 미비
4	자부담	시설건축비 부족, 프로그램 미비
5	노동부 고용장려금을 받음	운영비 부족(난방비 등)
6	자부담(건물임대 수입)	경비 부족
7	자부담(납품수익)	운영비 부족, 판로부족, 자금대출의 어려움
8	자부담(판매수익)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원금	없음 (장애인시설을 경기도에 건축할 계획임)
9	자부담, 기초수급자 지원액 공동 사용	운영비 부족
10	교회와 연계하여 운영, 기초생활급여	예산 부족
11	자부담, 예산: 연 3,300만원	예산 부족
12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자부담	보육사 인건비 지원 요망
13	자부담, 후원 없음	예산 부족
14	자부담, 후원 없음	예산 부족
15	총 2000만원 수입, (1800만원 자부담)	큰 어려움 없음
16	자부담	증축비용이 많이 듦
17	자부담, 연구자가 생활비 지원	교육공간 부족, 인력부족
18	자부담: 90%, 기타 후원금, 정부수급	생활비 부족, 후드뱅크요망
19	매달: 300만원 지출 (1/3은 부채임)	부식비라도 지원 요망

장애인 작업시설의 경우는 보호인원이 작업을 해서 수입을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약간의 재정 지원으로 시설의 보호대상자들의 복지가 상당히 향상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장애인 시설의 경우는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드물므로, 재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생활하도록 문턱없애기,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등의 편의시설이라고 구비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申告意向

사례대상 시설의 78% 이상은 申告意向이 있었다(19개소 중 15개소). 신고를 원하지 않는 시설은 19개소 중 5개소였다(表 3-66 참조). 그럼에도 신고가 어려운 이유는 시설의 여건이 신고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신고를 통해서 시설의 지원을 받기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의 여건이 신고기준 미만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건물의 증개축이나 사회복지사 고용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장들은 시설의 신고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表 3-66〉 事例調査施設 申告意向

시설번호	신고의향	비고
1	신고의향 있음	신고기준 미달, 지역주민의 오해로 어려움
2	간섭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림	
3	신고의향 있음	신고기준 미달, 지역기관과의 연계 원함
4	신고의향 있음	신고기준 미달
5	신고의향 있음	신고시설로의 전환요건 완화 요구
6	지원받기 위해 신고의향 있음	신고기준 미달
7	신고의향 있음	신고기준 미달
8	신고의향 있음	신고기준 미달
9	신고의향 없음	정부의 지원, 감독 불필요
10	신고의향 있음	신고기준 완화 요구
11	신고의향 있음	신고기준 완화 요구
12	신고의향 있음	유자격 보육사 고용 불가
13	신고의향 있음	신고기준 완화 요구
14	신고의향 있음	시설 건립 요망
15	신고의향 없음	미신고시설로서 불편없음
16	신고의향 있음	신고했으나 탈락
17	신고의향 있음	신고조건 완화 요구
18	신고의향 없음	신고조건을 모름
19	신고의향 있음	신고기준이 너무 높음

第 3 節 未申告 施設 問題點

이상의 實態調査와 事例調査를 통해서 미신고 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財政의 零細性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은 정부의 支援을 받지 못하고 시설 운영비를 자체부담하거나 후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는 財政問題이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전체의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의 2000년도 한해 지출 평균은 약 8천1백여 만원 정도로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충분성에 대해 응답시설의 70%에 이르는 응답자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충분하다는 시설은 1.6%에 불과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시설 가운데 부채가 있는 시설은 45%에 이르고 있었고, 시설당 평균 5천3백여 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의 영세성은 재정조달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시설이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기업의 기탁이 어렵고, 후원도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 실시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설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신고 시설의 재원은 주로 후원금, 후민간보조, 외원보조, 기타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다른 문제점, 시설설비의 미흡, 전문인력 확충의 어려움, 프로그램 실행의 곤란 등으로 연계되어 미신고 시설 열악성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미신고 시설의 설립동기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박애 정신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미신고 시설의 자체부담금 비중은 19.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후원금 26.7%, 기초생활급여로 인한 수익금 19.7%, 정부지원금 10.6%, 투자 수익금 10.7%, 기타 수익금 약 12.4%로 구성되고 있다.

재정과 관련하여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26.7%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 한 해 평균 실제 후원자 수 평균은 약 166명(표준편차 418.40)으로 편차가 심한 가운데 월 평균 10명 내외로 후원자도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10,000명 이상의 후원자가 있

는 2개 시설은 추계에서 제외되었음).

미신고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후원자의 후원을 받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100명 이하의 후원자 수는 약 80%나 차지하는 반면, 종교단체 63.7%, 임의단체 및 기타 58.7%, 재단 43.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재단인 경우 101명 이상의 후원자 수가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이 임의단체 및 기타가 41.3%, 개인 20.6%로 나타나고 있어 개인 미신고 시설 재정의 한계를 추측할 수 있다.

부채에 있어서도 개인 미신고 시설인 경우 부채가 있는 비율이 다른 운영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57.8%(재단 13.6%, 종교단체 33.9%)를 나타내고 있어 개인 미신고 시설의 재정의 열악성을 알 수 있다.

2. 施設 設備의 劣惡性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시설 설비의 미비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시설의 규모와 설비는 시설의 신고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인데, 현행 신고 기준에 의하면 미신고시설 중 陽性化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 실태조사 결과, 60% 이상의 시설들이 신고를 원하지만, 신고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건물의 老朽性에 있어서도 본 연구 조사 결과 응답시설의 51%가 건축 후 10년 이상 된 시설이었으며, 20년 이상도 20%를 넘고 있다.

시설의 규모에 있어서는 대부분 4인 1실 이하의 입실구조를 갖으나 5인 1실 이상의 입실구조를 갖는 미신고 시설도 14.7%로 나타났고, 시설설비에 있어서는 목욕실 89.9%, 거실 85.4%, 세탁실 79.1%만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생활 필수시설조차 완벽하게 구비되지 못하고

있어 일상 생활의 불편을 추측할 수 있다.

공동시설로서 도서실, 오락실, 양호실 등은 10~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시설의 영세함을 추측할 수 있다. 시설의 편의수준 충분성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2.60(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충분)로 부족한 편에 더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신고 시설이 원하는 지원분야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시설신축 27.7%이었다. 시설과 관련하여 시설관리·유지·보수 12.0%, 시설증개축 9.0% 등 시설 증·개축 및 유지와 관련된 욕구들이 많았다. 부채를 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의 시설 증개축을 위해서 부채를 지게되었다고 지적하여 시설의 열악성이 미신고 시설의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건물의 許可 有無와 관련하여 대부분 허가건물이었으나 무허가 건물도 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허가 여부는 시설의 안전성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시설의 安全性에 있어서 허가 시설보다는 무허가 시설의 응답자들이 시설의 安全性이 부족(허가 7.8%, 무허가 28.4%)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사실은 무허가 시설의 안전성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3. 프로그램 未備

재정조달의 한계는 시설설비의 확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우수한 專門人力의 확보를 어렵게 하여 시설 생활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의 거점으로서뿐 아니라 人格形成의 場으로서, 또한 自立的이고 獨立的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수용보호가 가장 많은 66.3%로 나

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은 일시보호 및 수용보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인의 평균 입소기간을 보면 10년 이상의 장기 생활인들이 15.3%, 6~10년 21.7%로 거의 40%에 이르는 생활인이 5년 이상 생활하고 있다. 즉 생활시설에서 평생을 보내는 보호인들이 많으므로 시설에서는 단순한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교육, 직업훈련, 재활 등 생활인을 유형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귀를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人力 不足 및 專門性 未備

프로그램의 미비는 從事人力의 不足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9%가 미신고 시설에서 종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인력이 충분하다는 경우는 단지 4.6%에 불과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신고 시설 從事者 규모는 정규직 중 종사자 수 2~3명이 전체 4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1.1%로 종사자 3명 이하 시설이 전체 70.8%로 인력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시설장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1, 2, 3급 포함)을 소지한 비율이 13.8%에 불과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입소자가 비전문인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정적인 문제로 충분한 인력을 보강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부족한 인력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보충하고자 하나 자원봉사 인력도 충분치는 못한 상황이다. 미신고 시설의 54.3%는 자원봉사 인력도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보아 미신고 시설의 인력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 混合施設의 過多

실태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 중에는 혼합시설이 전체 미신고 시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이 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혼합시설에서는 전문화된 단일 종류의 보호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양한 보호대상자로 인해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혼합된 시설의 보호인원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에 맞는 시설로 전원시켜, 각 시설은 단일 종류의 시설이 되어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이 效果的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6. 情報의 制限

미신고 시설이 복지시설로서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있어 情報가 制限되어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⁶⁾.

사례조사결과 시설신고의 신고 기준을 모르거나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설장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 법적 인 요건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고 시설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실제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를 물었다. 한 미신고 시설의 시설장은 같은 처지의 인근지역 미신고 시설장의 모임이 비정기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주로 미신고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친다고 말한다(2001년 11월 5일).

7. 他施設과의 連繫性 微弱

미신고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서 운영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소재지역의 住民뿐 아니라, 유사기관이나 행정기관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의 타 시설과의 관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즉, 타시설이나 유관기관과의 ‘관계 없다’가 39.2%인 반면 ‘관계 있다’는 33.1%에 불과한 나타났다.

재단인 경우에는 비교적 유사기관이나 타 기관과의 유대를 갖는 것으로 보이나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아울러 미신고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서 필요한 정보나 재정 및 물품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미신고 시설은 행정기관과의 연계조차 쉽지 않아서 행정기관의 지원과 관심대상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향후에는 미신고 시설도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8. 施設에 대한 認識 問題

미신고 시설의 시설장들은 시설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認識이 부정적이어서 여러 가지 不利益을 겪는다고 지적하였다(부록 주관식 문항 응답 참조).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지역주민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부터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미신고 시설을 불법시설이나 문제가 있는 시설로 인식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단체로부터의 지원도 받기 어렵고 자원봉사자가 꺼리기도 한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선의의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설들이 재정 및 인적 지원면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이어서 어려운 점으로 ‘시설에 대한 오해’라고 응답한 경우(13.8%)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항목(67.6%)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즉, 미신고 시설은 제도권 밖의 시설이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민간으로부터도 물적 및 인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방이 요구된다.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여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일 때 시설에 대한 편견을 불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第4章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改善方案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열악한 재정과 인적 및 물리적 환경 속에서 사회의 요보호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고시설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나, 법적인 시설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는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많은 대상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미신고 시설의 實態 및 事例調査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림 4-1 참조). 이러한 정책 대안을 통해서 미신고 시설은 당면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第1節 施設 陽性化

1. 施設 陽性化

1998년에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을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려고 사회복지사업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권 밖의 사회복지시설은 양산되고 있다. 이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상이나 개별 사회복지법 상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사회복지에 뜻이 있어서 시설을 시작한 경우는 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 비록 현행

법상에서 5억이라는 재산기준이 철폐되기는 했지만, 시설설비 기준은 거의 과거의 재산기준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들이 제도권 밖에 있는 한 인적, 물적인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고, 사회에서도 불법시설로 주목을 받고 사회적인 낙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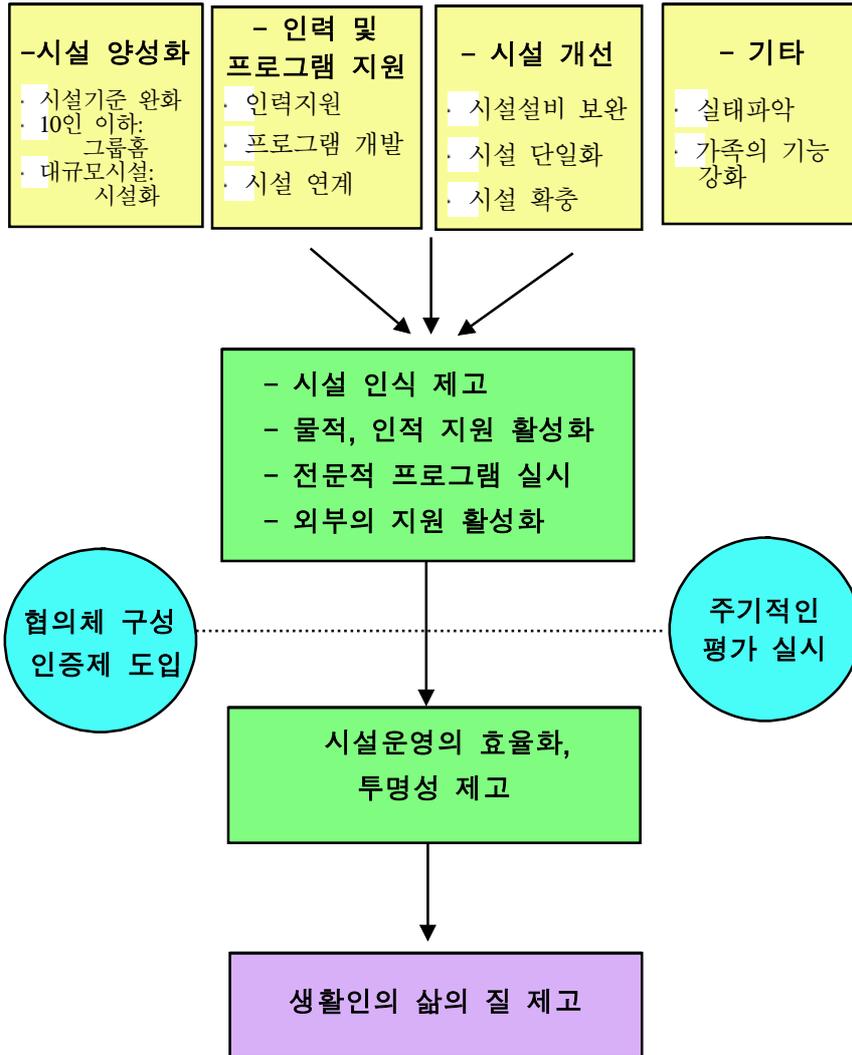
따라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양성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양성화 작업을 위해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규정을 완화하고, 중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시설을 제도권내에 흡수하여 양성화 한 후, 대규모 시설은 기존의 시설기준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한다.

2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신고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한 시설의 경제적 한계로 인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시설이 드물다. 개별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하되, 생활인에 필요한 기본설비인 방,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추고 시설장이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신고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특히 의무실, 상담실, 조리실, 오락실 등의 세부기준은 완화하도록 한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시설로 규정한다. 현행 가정위탁제도를 개정하여 가정위탁시설 기준을 10인 미만의 시설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만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도 포함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이 아니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2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성화시킨 후, 시설의 설비 및 기타의 조건이 신고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준 후, 시설의 구비요건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 기준에 충족되면 신고 시설로 편입시킨다.

[그림 4-1] 未申告 施設 改善 事項 및 效果



중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하는 시설에 한하여 저금리로 융자를 해 주도록 한다. 이밖에 시설장 및 종사자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시설장에 대한 재교육과 인건비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절에서 설명하였다.

미신고 시설은 생활시설뿐 아니라 공부방,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시설도 포함된다. 미신고 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개별 사회복지복지법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시설에 준하는 미신고 시설을 모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시켜 지원 및 지도와 감독의 대상화해야 되어야 하겠지만, 예산의 제한 및 시설 생활인 욕구충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미신고 생활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2. 施設에 대한 認識 改善

미신고 시설에 대한 認識의 改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미신고 시설의 운영 동기가 대부분 ‘이웃 사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는 불법 시설같은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신고 시설이라는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러한烙印이 없을 때 시설은 민간기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가 편견없이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불법인 시설에 지원했을 때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꺼린다. 따라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조속히 양성화되어 불법시설에서 합법화된 시설로 전

환되어야 한다.

第2節 人力 및 프로그램 支援

1. 従事者 人件費 支援

인력지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은 소수의 종사자가 시설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생활지도이외에 총무, 취사, 차량유지 및 관리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인력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업무의 과중이 따르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력 지원은 생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중의 하나이다.

미신고 시설은 대개 소규모로서 별도의 종사자 없이 시설장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 도우미를 활용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従事者 教育

조사결과 施設長은 사회복지 전공자가 드물었다. 시설장 및 종사자가 사회복지에 뜻은 있으나 전문지식이 많지 않아 생활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신고시설 종사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미신고 시설 종사자들도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습득과 함께 사회복지사 2~3급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질적인 제고를 도모한다.

아울러 미신고 사회시설에 전문인력이 보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미신고 시설이 소재한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의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의뢰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 생활시설이 없다면 가까운 시도의 시설과 접촉하여 시설 종사자의 교육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 주도록 한다.

3. 프로그램 開發

복지시설은 생활인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생활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설의 프로그램 실시 현황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미신고 시설의 프로그램은 주로 일시보호 및 수용보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보호를 통한 생활인의 자립이라는 목적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평균 입소기간에 있어서 6~9년 21.1%, 10년 이상도 15.8%나 차지하고 있어 한 번 입소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생활인이 상당수 있어 재활기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수용인원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경제활동 연령인 35~65세까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18~35세, 36~64세까지의 경제활동 연령에 해당하는 생활인이 남성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도 어린 청소년 계층

과 노인 연령층을 제외한 경제활동 연령에 있는 생활인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職業教育의 실시는 생활인의 상태와 여건에 따른 교육 및 직업훈련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인의 수요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생활인의 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4. 地域 資源 發掘 및 連繫

실태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은 다른 시설이나 지역사회,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별로 밀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시설들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後援者를 발굴하게 되고, 自願奉仕人力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 병원이나 보건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생활인의 건강증진이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신고 시설의 개별적인 노력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지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시설의 홍보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행정기관은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못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해서 미신고 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 미신고 시설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 행정기관은 미신고 시설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시설의 상황과 생활인의 복지상태

등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시설의 어려운 점을 인지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第 3 節 施設 改善

1. 施設의 増改築

미신고 시설장들이 정부로부터 가장 원하는 사항은 시설의 신축에 있었다. 특히 몇몇 시설들은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개발제한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현행 건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시설에 대한 증개축을 통해서 생활인의 복지가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便宜施設의 具備

미신고 시설의 시설 구비 상태를 조사한 결과 거실, 조리실,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은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본 생활 외에 生活人이 自活하고 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문화시설,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생활시설은 물론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도 편의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시설에 알맞는 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개별실태 조사를 기초로 필요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설치비용은 시설과 정부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施設의 單一化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혼합시설의 과다에 있다. 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 중 제일 많은 33.3% 가량은 혼합시설로 나타났다. 시설 내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특성을 갖는 대상자를 보호하게 되면 효과적인 프로그램 실시가 어려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한다.

혼합된 대상자를 연령과 기타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설에 전원시켜야 한다.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시설 전원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지역 내의 신고 및 미신고 시설과 연계하여 비슷한 연령 및 유형의 보호대상자들은 유형에 맞는 시설로 전원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들이 전원하는 데 커다란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施設의 擴充

미신고 시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일반시설에의 입소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일반시설의 입소기준이 현재와 같은 한 많은 요보호대상자들은 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하여, 미신고 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부양자가 있더라도 상황을 참작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시설로의 입소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

둘째, 미신고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역에 입소할 신고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신고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미신고 시설에 입소하는 이유는 지역에 입소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시설의 분포에 있어서 지역간에 형평성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군지역에는 시설들이 없는 지역이 많은데,

그 만큼 시설의 수가 부족함을 나타낸다. 인구규모와 비례해서 시설이 확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신고 시설 중에서 장애인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만큼 장애인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시설을 증설할 때 장애인시설을 우선적으로 건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이러한 시설을 지역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반국민에게 시설에 대한 홍보와 인식전환을 실시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고, 일반국민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혐오시설로 기피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적극 유치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第 4 節 未申告 施設 實態把握 및 豫防

1. 未申告 施設 實態把握

미신고 시설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생활인의 상황 및 욕구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미신고 시설을 지원하고 양성화하기 이전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확한 개별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인의 인구사회학적 구성과 복지욕구,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을 점검하여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家族의 機能 強化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가족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 빈곤가족의 경제적 기능

의 약화로 가족 해체가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성원들은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빈곤가족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토록 한다. 특히 가족이 경제적 부양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수당 도입 등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계비가 지급되고는 있으나,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등 가족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 보충급여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第5章 結 論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제도권 밖에서 補完적으로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기존의 시설이 미비하고, 제도권에 있는 시설들의 入所 基準이 높기 때문에 입소할 수 없는 요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 福祉國家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逆機能이 제기되면서 脫施設化가 추진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규모 공동체나 시설, 그룹홈이 활성화되었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시설보호의 效率性을 위하여 시설의 중대형화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서, 소규모 시설은 신고 기준에 미달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산이 초래되었다. 또한 정상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부양자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양자가 있다 할지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미신고 시설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향후 신고시설로의 入所基準이 현재와 같은 한, 독거노인의 증가, 가족해체의 확산, 미혼모의 증가,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소수의 미신고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들은 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설비나 장비, 인력이 부족하고, 전

문 사회복지인력이 기피하며,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호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개선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改善되어야 할 사안이다.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안은 미신고 시설을 제도권에 흡수하여 생활인에 필요한 支援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후원금이나 생활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자체예산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후원금의 액수는 적고 생활인이 받는 保障費는 한정되어 있으며, 자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설들은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등 필요한 항목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한다는 전제하에 미신고 시설들을 법적인 시설화 해야 하고, 향후에는 미신고시설의 양산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족의 보호기능을 강화하여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자를 줄이도록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원 후에는 감독과 평가가 뒤따라서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시설에서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원된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김미혜,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운영개선」, 『한국적 복지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김복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영모, 「시설보호 지원방안의 과제」, 『연구논문집』 제18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97.
- 김영모, 임유경, 「비인가 시설보호의 실태와 과제」, 『사회정책연구』, 18, 1997, pp.1~69.
- 김인숙 외, 『한국가톨릭 사회복지의 실태와 전망』,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1997.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0.
-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2000.
- 변용찬,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의 과제」, 『서울사회복지포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1996.
- 변용찬 외,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변용찬 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건강증진 및 시설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방안』,

2001.

- 윤찬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책토론회 자료, 1997.
- 이영희 편저, 『사회복지시설행정』,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6.
- 이영희, 『한국사회복지법규 개설』, 홍익출판사, 1999.
- 이원석,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태수a, 「아동을 위한 소공동체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97 아동심포지움 자료집. 1997.
- 이태수b,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책토론회 자료,
1997.
- 정무성,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대회 자료
집, 1999.
- 최성재·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1.
- 최해경, 「가톨릭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실태와 발전방향」, 『가톨릭사회
복지』통권 8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1997,
pp.32~49.
- Goffman, E., *Asylums*, Penguin Books, 1961.
- Hasenfeld, Y. (ed.) *Human Services as Complex Organizations*, Sage,
1992.
- NASW, *Social Work Dictionary*, 1987.

附 錄

1.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調査票 / 185
2. 主觀式 問項 應答 結果 / 200
3. 老人住居福祉施設의 施設基準 및 職員配置基準 / 226
4. 兒童福祉施設의 施設基準(第11條關聯) / 240
5. 障礙人福祉施設의 設置·運營基準(第33條關聯) / 248
6. 母子福祉施設의 施設基準(第10條第1項關聯) / 282
7. 浮浪人福祉施設의 設置·運營規則 / 287

附錄 1. 未申告 社會福祉施設 調査票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조사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미신고 사
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에서는 미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미신고시설의 시설장님을 대상으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의 시설, 재정, 인력, 미신고의 이유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
은 미신고시설의 지원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이며 정보가 절대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처리에만 사용되고, 절
대로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
다.

2001. 8.

연구책임자: 김미숙 책임연구원

전화: 02-355-8003 (144) 팩스: 02-382-4582

주소: 122-705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 소재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_____번지 (_____통 _____반)
시설명	_____전화번호_____

※ 다음의 문항들을 읽으시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생각하시는 것과 가장 근접한 항목을 하나만 골라
각 번호 앞의 박스()에 √로 체크하거나 혹은 해당란에 기록해 주십시
오.

A. 일반 현황

1. 귀 시설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_____년
2. 귀 시설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 ② 종교적인 이유로
 - ③ 친인척이 운영하던 시설이어서
 - ④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어서
 - ⑤ 기타 (_____)
3. 귀 시설의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 ① 개인 ② 재단 ③ 종교기관 ④ 임의단체
 - ⑤ 기타(_____)
4. 귀 시설은 어떠한 시설입니까?
 - ① 노인시설 ② 아동시설 ③ 청소년시설
 - ④ 장애인시설 ⑤ 모자/부녀시설 ⑥ 정신요양시설
 - ⑦ 부랑인시설 ⑧ 노숙자시설 ⑨ 결핵시설
 - ⑩ 나장애인시설 ⑪ 혼합시설 ↓ (문 4-1로)
 - ⑫ 기타시설(_____)

4-1 (문 4의 ⑩의 경우) 혼합시설의 경우 어떠한 시설입니까?

(), (), ()

(※ 문 4번 보기에서 찾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 시설의 생활인은 총 몇 명이고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다음 표로 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연 령	남자	여자	계
0 ~ 12세	_____명	_____명	_____명
13 ~ 17세	_____명	_____명	_____명
18 ~ 35세	_____명	_____명	_____명
36 ~ 64세	_____명	_____명	_____명
65세 이상	_____명	_____명	_____명
총 계	총 _____명	총 _____명	총 _____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	총 _____명	총 _____명	총 _____명

6. 생활인 중 등록 및 미등록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아래의 표에 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분류	등록 장애인		미등록 장애인		합 계
	18세 미만	18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중복장애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지체장애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청각·언어장애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시각장애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정신지체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신장·심장질환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뇌병변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정신장애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발달장애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합 계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총 _____명

7. 생활인 중 연고자가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_____%

8. 귀 시설의 현 생활인의 주 입소경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 ① 행정관서(시·군·구청 등) 의뢰
- ② 경찰관서(법원, 경찰서 등) 의뢰
- ③ 종교단체 의뢰
- ④ 연고자 또는 주위사람 의뢰
- ⑤ 병원에서 후송
- ⑥ 타 시설에서 전원
- ⑦ 본인이 자진입소
- ⑧ 기 타(_____)

9. 귀 시설 입소자의 평균 입소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5년
- ④ 6-9년 ⑤ 10년 이상

10. 귀 시설에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 대표적인 2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적어주십시오.

(1) _____, (2) _____

<보기>			
①일시보호	②약물치료	③수용보호	④보장구지급
⑤물리치료	⑥약물치료	⑦작업치료	⑧수용보호만 제공
⑨기타(구체적으로 _____)			

6. 귀 건물은 건축한지 약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① 2년 이하 ② 3-9년 ③ 10-19년
 ④ 20년 이상

7. 귀 시설이 소재한 곳의 지역적 특성은 어떠합니까?

- ① 주택가 ② 상가지역 ③ 공단지역
 ④ 외딴지역 ⑤ 농촌지역 ⑥ 기타(_____)

8. 귀 시설의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불안전 ② 불안전한 편 ③ 보통
 ④ 안전한 편 ⑤ 매우 안전

9. 귀 시설에는 생활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 ① 매우 부족 ↓ (문 9-1로) ② 부족한 편 ↓ (문 9-1로)
 ③ 보통 ④ 충분한 편 ⑤ 매우 충분

9-1. (문 9의 ①②의 경우)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면 보완되어야 할 시설은 무엇입니까?

10. 귀 시설과 지역사회 내의 다른 복지기관 및 시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관계가 없다 ② 별 관계가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밀접한 편이다 ⑤ 매우 밀접하다

11. 귀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문 11-1로) ② 아니오

11-1. (문 11의 ①의 경우) 하신다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 재정 현황

1. 귀시설의 작년 한해(2000년)동안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 입	지 출
총액 : _____ 원	총액 : _____ 원
가. 자체부담금 : _____ 원	가. 관리운영비 : _____ 원
나. 정부지원금* : _____ 원	나. 생계비 : _____ 원
다. 기초생활급여* : _____ 원	다. 인건비 : _____ 원
라. 투자수익금 : _____ 원	라. 기타 : _____ 원
마. 후원금 : _____ 원	
바. 기타 : _____ 원	

* 정부지원금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를 제외한 여타의 정부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 기초생활급여는 귀 시설의 기초보장수급자들에게 입금되는 급여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2. 귀 시설에 후원금을 낸 분은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_____ 명

3. 귀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드는 1인당 최저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_____ 만원/1인당

2. 귀 시설 종사자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구분	남자	여자	총계	월평균 임금
1) 정규직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_____ 만원
2) 임시직	상근직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_____ 만원
	시간제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_____ 만원

3. 귀 시설 종사자의 주 근무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매일 출퇴근 ② 매일 거주 ③ 2교대로 거주
 ④ 기타 (_____)

4. 귀 시설의 종사 인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부족 ② 부족한 편 ③ 보통 ④ 충분한 편
 ⑤ 매우 충분

5. 귀 시설의 자원봉사자 연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연인원 _____ 명

6. 귀 시설의 자원봉사자자의 참여빈도별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여 빈도	인원	참여 빈도	인원
1) 매일	_____ 명	3) 매월 1-2회	_____ 명
2) 주당 1-2회	_____ 명	4) 수시 자원봉사자	_____ 명

1-2. (문 1의 ②의 경우) 신고시설로 전환을 원하지만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설의 규모를 신고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② 재정의 압박으로 사회복지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서
 ③ 시설장이 상근하기 어려워서
 ④ 지원단체가 반대하므로
 ⑤ 지방자치단체가 접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⑥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⑦ 기타 (_____)

2.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위한 시설 설비 및 규모 기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현행법상 각종 설비 및 구조에 대한 규정이 있음**)

- ① 너무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알맞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3. 미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운 점**을 1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② 후원받기 어렵다
 ③ 자원봉사자가 꺼린다 ④ 시설에 대한 오해가 많다
 ⑤ 기타 (_____)

4. 미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좋은 점**을 1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행정업무가 많지 않다 ②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시설평가에서 자유롭다 ④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⑤ 생활인의 입퇴소가 용이하다
 ⑥ 기타 (_____)

5.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 귀 시설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보호)가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2로) ② 없다 → (설문종료)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 표에 채워주세요

	0~12세	13~17세	18~35세	36~50세	51~64세	65세 이상	총인원
수급자수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선정 과정	수급자수
① 시설에 입소후 시설에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_____명
② 시설에 입소후 수급자가 신청	_____명
③ 시설로 올 때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상태	_____명
총 인 원	_____명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신고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귀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신고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 ② 신고시설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 ③ 신고시설에 대한 인식이 싫어서
- ④ 인근지역에 받아들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 ⑤ 시설을 옮기는 것이 귀찮아서
- ⑥ 기타 (_____)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명

※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를 의미합니다.

6. 입소자 중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을 현재 시설로 옮기지 못해서
 ②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므로
 ③ 본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④ 신청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서
 ⑤ 기타 ()

※ 다음은 정부지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7. 귀 시설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 ① 시설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② 수급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③ 기타 ()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① 시설(시설장 또는 총무 등)에서 관리하여 사용한다 ↓ (문 8-1로)
 ②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여 사용한다 → (문 8-2로)
 ③ 시설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 → (문 8-2로)

8-1. (문 8의 ①의 경우) 시설에서 관리하는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① 시설 운영비에 포함하여 사용한다

② 개인 수급자에게 일부를 주고, 일부는 시설 운영비에 포함하여 사용한다

③ 모두 수급자에게 주거나 수급자 당사자의 필요경비로 지출한다.

8-2. (문 8의 ②③의 경우)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급자는 시설에 일부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① 예 (지불한다) ② 아니오 (지불하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9.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시설을 어느 정도 자주 방문하십니까?
- ① 1개월에 1회 이상 ② 2개월에 1회 이상
- ③ 1년에 4회 이상
- ④ 1년에 1~2회 ⑤ 거의 찾아온 적이 없다
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주로 누구와 면담하십니까?
- ① 시설장(또는 시설 종사자) ② 수급자
- ③ 시설장과 수급자 모두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附錄 2. 主觀式 問項 應答 結果: 未申告施設에 대한 政府 建議事項

□ 신고기준 완화

- 신고시설의 문턱이 높다. 보편적으로 완화 원함. 미신고시설 직원인 건비라도 도움 원함.
- 신고시설로 전환하기까지 적절한 설비규정이 완화되어 행정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소규모공동복지시설신고 조건완화. 의료비지출지원
- 사회복지법을 될 수 있는 한 완화시켜 신고시설 혹은 법인화가 가능하도록 자격요건 및 구비조건완화
- 시설기준을 완화시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복지시설이 주민의 반대보다 전문위원의 허가에 의해 설립해야함. 최소한 필수품은 필요한 만큼 지원요망
- 시설신고기준 완화조치
- 법에 적용되지 않는 미신고가 되니 중간격인 시설도 시에 등록이 될 수 있으면 함.
- 복지시설허가 완화. 비인가시설 연료비지원. 봉사자 월급여 지원
- 시설설비 및 규모기준이 까다로움. 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사통해 시설의 형편을 잘 파악하길 바람.
- 기준의 아동복지법은 미신고시설로서는 시설의 규모나 필요요건들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완화요망
- 한마디로 그림의 떡임.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규정에 맞도록 성장시켜주심이 합리적임.

- 인허가 기준을 낮추고 정부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신고시설의 허가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정부가 제시하는 평수 기준은 충족어려움.
- 시설별료 신고제에 대한 문제를 잘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바람. 사회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봐 주길 바람.
- 사회복지 시설 인허가시 자산소유액수 요구가 너무 많음. 사회단체는 상호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을 공유했으면 한다.
-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완화. 객관적 평가와 관찰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준다면 행정 재정적 지원필요
- 지원이 신고시설에 기준해 있기 때문에 후원받기 어렵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 법인신고시 자격기준이 까다롭다. 미신고시설은 지원받기 어려워 운영이 어렵다.
- 신고절차가 어려워 전환하기 힘듭니다.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의 비율이 달라져 힘들다.
- 법인내는 절차간편원함. 그린벨트해지되어 건축가능원함. 의료보험혜택원함.
- 시설신고 기준이 낮아졌으면 합니다.
-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속히 신고시설이 되게 하여 종사실무자의 정규직환원과 사회복지인력의 보강이 되었으면 한다.
-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보다는 지역사회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설의 이미지나 평가를 토대로 설치해야 함.
- 시설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기준을 가지고 신고기준을 정해야합니다.

- 허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이 낮으면 좋겠고 물품지원, 후원 등도 미신고시설에도 고루분배원함.
- 시설이 기준이하라 할지라도 수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 미신고시설이 오히려 가정적이며 개인적인 배려를 가지고 돌볼 수 있다. 정부는 원생수에다 중점을 두니 애로점이 많다.
- 신고시설 설치 기준 완화.
- 그룹홈 시설의 합법화 및 그룹홈의 자격여건을 하향조정바람.
- 미신고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할 시 조건을 완화시켜 주십시오.
- 신고기준을 낮추었으면 함. 정부에서 운영비전액이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지원요망.
- 운영비보조와 신고기준을 완화하여주고 사회단체는 자원봉사 후원 등을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 현행법상의 신고시설의 기준완화요망
- 신고시설로 전향하려고 해도 공탁금(6억)을 걸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
- 법인체가 되기까지가 워낙 어려우므로 힘이 듭니다. 기준을 낮추고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함.
- 시설의 규모를 신고기준에 맞출 비용이 없어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움
- 우리 나라도 연고지가 있든 없든 간에 시설수용상에 제약이 없으면 한다.
- 인가 미인가시설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확실하다.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위반자에게 정확히 전달 안됨.

- 현재 사회복지법인 및 신고시설의 설비 및 규모 인력등 전반적인 기준이 높습니다. 완화요망
-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의 신고를 위한 인원 기준 및 시설비기준의 완화를 요청함.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인원 기준및 시설기준의 완화. 20년된 한옥 건물 보수시 건축법규제 완화 및 시설신축요망.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인원 및 시설기준완화 요청. 무허가 컨테이너시설의 신축요망.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인원 및 시설기준완화. 정부의 편의시설지원 시급. 자활프로그램지원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인원 및 시설기준완화. 현행 무허가건물의 신축요망
- 신고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으면 한다.
- 사회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적극권장, 신고기준 완화하여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식필요
- 어느 정도 자립을 하였는데 미신고시설이라하여 관청에서 그 기준을 요구하면 어려움이 많다(부지확장 및 건물면적).
- 장애인시설로의 허가 절차가 어렵다. 신축허가를 해주시면 장애인들 위해서 복지혜택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 신고기준을 완화하여 제도권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부여. 시설 신축시 재정적 지원필요
- 유명무실한 보호자로 인해 실질적 도움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보호자유무에 상관없는 배려필요
- 사회복지법인 기준 하향 조정요망. 수용인원 초과 허용및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보호가능요망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그룹홈도 양성화 되길 바람.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복지사업을 인정해 주길 원함.
- 제도권으로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을 개정해 놓고도 개인시설도 법인시설 규정을 적용. 신고하여도 정부지원 보장 없음.
- 이미 사용중인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신고시설로 합법화하여 주고 운영비지원요구
- 신고단체기준을 완화하고 인건비시설운영비 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요망
-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규정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설립기준이 너무 높아서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고 싶으나 불가능하다.
- 시설설비 및 규모기준이 까다롭다. 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시설의 형편을 잘 파악하길 바람.
- 기준의 아동복지법은 미신고 시설로서는 시설의 규모나 필요조건들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완화요망
- 신고기준이 높다.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시설개조 및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요망. 공동요금배분에 더 많은 배려
- 정부에서 정하는 인가기준이 높다. 정부가 알고있는 미신고 시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오해와 편견에 아쉬움을 느낀다. 소규모그룹에 대한 지원과 후원. 필요이상의 행정규제와 간섭자체
- 정부지원요망. 시설기준이 너무 높으므로 기준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적 지원. 신고시설로 전환 시 허가조건 완화
- 인허가를 받기에는 높은 행정벽이 있기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신고처리하여 정부지원 혜택받길 원함.

- 신고규정을 완화하여 전국에 그룹홈이 확대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최소한의 인건비 등 지원요망
- 시설신고에 있어서 종교단체 등 선교목적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기준 완화. 종교자율성 요구
- 시설설치신고 요건 및 인력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신고시설로 전환되길 바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요구
- 신고시설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까다롭다. 규제와 기준보다는 그 시설의 현실에 알맞은 지원요망
- 사명이 있는 분들에게 규제를 완화시켜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떤 규모든지 10명이 넘으면 신고가 되어지길 바램. 시설체제의 확보보다 개인의 자율성과 인권의 확보. 지속적 자원봉사자필요
- 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기적인 양로원의 운영은 법인화 해야 한다.

□ 적극적인 지원 요망(재정/인력 지원 및 관심)

- 재정적 지원,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결, 비슷한 기관끼리 네트워크 형성하여 홍보 지원요망
- 정부와 사회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식들이 부양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양로원 노부모님들에게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수락 원함.
- 신고사항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업무능력배양. 신고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수준에 맞추어 개선추진요망
- 미신고 시설이 점유하는 대지를 무상임대 하여 주고 기초적 운영비도 무상지원바람.

- 장애인들이 복지홈이란 조그마한 시설에서 가족처럼 보살펴주고 인간적 삶을 살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바람.
-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관련행사나 교육에 참여기회제공바람.
- 정부는 미신고 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한다. 신고시설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음. 규제만이 능사는 아님.
- 공동기금모금회의 참여를 할 수 없다(행정적 절차가 치밀하지 못하다).
- 지방자치체에 연말정산에 따른 예산이 남으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필요한 난방비 및 주식비 지원 원함.
- 정부와 사회단체의 관심과 도움바람. 미신고시설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크게 보도합니다.
- 정부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요망. 후원자, 자원봉사자 많이 부탁드립니다.
-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고 진입로 포장을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 미신고 시설에도 어느 정도의 재정적 후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 신고된 시설의 대규모화와 사랑과 봉사의 이데올로기로만 풀려하지 말아야 한다.
- 국가공인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영세 복지시설이지 대형화된 복지시설이 아니다.
- 정부에서 영농을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양성화하여 장애인들이 자활자립의 길을 열수 있는 법정장치마련
-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책 강구요망.
- 관심과 프로그램 및 정보 TV, 비디오, 컴퓨터 등의 지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증축 개축시 은행대출 보증

- 후원자에게 연말에 기부금증명서 발급 못 하는 것.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타 정부기관에서 훈련받고 인정받는 것 같은 배려
- 소그룹의 공동체를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요망
-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금전적인 지원요청
- 생계비지원. 운영비지원
- 법률전문가에 의해 하자 없는 보완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 이유로 인가서류 보완받고 있다. 헌법소원에 해당된다 생각함.
- 신고시설과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미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필요
- 미신고시설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나 시설적인 운영에 있어 요건을 갖추어야함. 공동모금시 형식적인 지원보다 실질적인 지원요구
- 정부에서나 시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 했으면 합니다.
-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기초적인 지원 원함. 주변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정부정책필요
- 재정지원 필요성
- 인성교육 위한 프로그램지원비. 생활자를 그 지역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도움. 종사자들의 교육
- 행정적 지원(서류보다는 실제적인 지원)
- 미신고사회 복지시설에도 재정지원을 하였으면 함.
-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인가시설이나 미인가시설이나 똑같이 보호받아야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부양자가 능력없을 경우 수급권 인정

- 비영리시설은 비인가시설로 구분되어 정부지원 없다. 인가시설과는 다른 방향으로 구별하여 증축, 신축 지원배려
- 사회단체 또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적 성격을 띤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없어 인가신청불가능. 정부의 수혜도 받을 수 없다.
- 정부에서 신고복지로 전환시켜 당당하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미수급자 5명 모두 다 수급자(정부지원생활기초)요망
- 정부의 재정지원이 많길 바람.
- 제도권내로 끌어들여서 양성화하여줌으로써 그룹홈이 정부의 지도하에 친가정화에 맞도록 하고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 적극적 도움요망.
- 설비구조가 미달되더라도 양성화방향으로 했으면. 장애인 삶의 경제적 보장이 됨으로써 가족이 생업종사가능했으면.
-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 경제적 지원 필요.
- 비인가 미신고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여 일정액을 지원요망.
- 수용된학생들에 대한 최저생계비지원. 시설을 할 경우 행정부의 협력이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 행정기관에서 조사하여 양성조건에 어느정도 부합된다면 시설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형성원함.
- 장애인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 원함.
- 예산지원(연료비,급식비,유지비 등)
- 재정적 지원, 인력지원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크겠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 1종으로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의료보험혜택 받기위함)
- 입소자 생계비 지원요망.
- 미신고시설은 법적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소한다. 국민기초생활법을 행정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됨.
- 미신고시설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운영비나 생계비를 지원 바람.
- 미신고건축물이 노후되어 노인복지법상 설비기준에 미달 신고 원하나 건축비 부족, 운영비 지원 없음. 정부지원요망.
- 장갑기계 5대로 자활하나 재정이 어려우므로 정부지원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기준 및 정부보조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시설도 신고 후 보조받기를 원함.
- 사회복지시설설치분야가 세분화되지않아 아동시설설치에 부적합함. 미신고시설이더라도 소규모시설로 인정원함.
- 정부는 미신고시설을 실질적으로 양성화시켜 정부지원과 더불어 관심과 참여를 해야함.
- 미신고시설에도 사랑과 관심을.....
- 4명의 생계수당으로 5명이 공동생활하기에는 주거 및 생계에 부족함. 주거, 생계비 지원요망.
- 미신고시설의 평가가 이루어져서 겨울철 난방비 보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후원자가 없음. 편견이 있음. 건축신개축시 장기처리로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책을 부여하길 바람.
- 정부보조금 참여에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정부지원금의 배부. 사회복지사의 배치. 유관복지시설간의 연결체계.

- 복지사업에 관해서 바람직한 평가통한 지원. 필요한사업에는 포괄적 예산집행.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 도움.
- 아동그룹홈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고 적극적 지원원함.
- 운영과 집관리 수리등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유급실무교사에 대한 예산지원 및 파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여건 상황고려하여 적절한 지원바람.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의 정규적인 방문과 지도.
- 미신고시설의 성격이 사회의 중요문제를 다루는 곳일 경우 행정적 금전적 지원방안마련.
- 미신고시설일지라도 사회의 한부분을 책임지고 자격을 갖춘자가 운영하므로 정부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 장애인 공동체시설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전하게 운영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 도움주셨으면 합니다.
- 전기세나 가스비등을 좀 감면해 주었으면 한다.
-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함.
- 소규모 미신고시설에도 정부지원금이 배분되고 양성화시켜 시설개축비도 용자내지 지원원함.
- 시설을 잘해서 노인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 정부에서 전체예산의 15%지원하지만 모자르며 프로젝트신청시 많은 제약이 따르다. 후원자도 꺼림.
- 미신고시설을 제도화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면서 후원할 수 있는 곳을 연결했으면 한다.

- 지역내에 장애인시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저리의 융자나 대부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 건전하게 운영되는 곳은 양성화시켜 정부의 혜택을 받도록해야한다. 담당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
- 좋은 일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지원요망. 사회단체의 긍정적 인식과 홍보필요. 공무원의 부당한 대우개선.
- 미신고시설도 정부지원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 이제 한국에도 선진외국처럼 그룹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보다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유로운 의료지원과 건강진료. 명절 때 소외되어 외롭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
- 장애우들에게 가정적이고 자유로우며 편안한 공간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개인별 생계 운영비도 필요.
- 법적 규정이 해당되지 않아도 일정액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 금전적인 도움과 시설 증개축에 융통성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 미신고시설도 협력체계가 잘 되었으면 함. 안정적인 지원필요. 미신고시설도 복지시설로 인가되기 원함
- 저희들의 도움을 행정적으로 청할때 잘 도와 주었으면 합니다.
- 미신고시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부가 이름없는 봉사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비인가시설에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입소자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우선주차제 무료사용.

- 교육적 뒷받침을 위해 재정도움이 절실함.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마련필요.
- 사설에 대하여 보다 넓은 안목으로 봐주시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 미신고시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미신고시설장과 관이 협조해 나가길 바랍니다.
- 법이나 제도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나 사회단체가 보호해 주길바람.
- 미인가시설을 더욱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 미신고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요망.
- 실태를 파악하여 최소한의 의식주, 시설의 부족부분 보조 원함. 미신고시설을 신고가능하도록 애로사항을 들어주길 바람.
- 미신고시설이라 하더라도 불우한 노약자를 보양하는 곳이라면 정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 좋은 시각으로 지켜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 순수한 설립취지를 인정하고 사회복지사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올바른 운영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건의.
-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가 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 미신고시설이라도 정부의 재정적 협조와 사회단체의 적극적 후원이 필요함.
- 미신고시설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문제. 공동모금회가 인가시설에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적자운영이므로 운영비부족을 저리 장기 용자해줌을 기대합니다.

- 합리적인 법률제공. 지방자치의 행정적 도움.
- 정부가 설립운영자를 중심으로 보조나 후원하기보다는 개인중심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보조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자원봉사자나 학생봉사활동상황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필요함.
-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사회단체나 행정관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관서에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 신고시설로의 전환이나 복지법인 인가 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 정부지원이 필요함. 시설신축.
- 동절기 난방용 경유가 비싸서 농가에 제공되는 면세기름을 저희에게도 쓸수 있는 혜택바랍니다.
- 예산지원요망. 자원봉사자의 정기적 연결. 의료팀연결 요망.
- 서류상 무연고 영세민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어려운 사람 선별지원. 미신고시설도 규제보다는 양성화요망.
- 지원요건을 완화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재정보조 원함. 지원에 따른 관리방안마련.
-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자원봉사자가 없다.
- 소규모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 아쉽습니다. 양성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 시설의 설비부족으로 인한 미신고시설일때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 전액지원이 아니더라도 60~70%지원요망.
-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신고시설로 완전히 수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일단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후 정부에서 관리감독 해야 한다.

- 어느 정도의 정부지원요망. 사회단체에서 소규모시설에도 관심을 가지길 바람.
- 교육청의 임대료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으며, 복지법인으로 귀속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과 생산되는 물품판매 협조.
-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심과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 미신고시설도 정부에서 월별로 운영비를 조금이나마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전기료, 운영비일부)
- 정부측에서 농촌 산간지역에 차량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와병전 사전에 시설입주를 권고하는 것도 복지의무.
- 방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치매환자들을 입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해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 양성화시켜 성인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정부관심. 그린벨트지역에 장애인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완화. 사람들과 가까운 인근지역설치.
-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다.
-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의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을 해결해주시길바람. 그룹홈의 제도화 양성화요망.
-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 자가건물의 경우 복지시설개축시 건축비보조원함. 양성화, 지원해주길바람. 건물없고 재정적 열악한 곳은 유예기간후 정리.
-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용을 정부예산에 지원요망.
- 운영비지원 바람.
- 상시종사자인력부족이 시급하다. 공공근로자들을 한명 정도는 미신고 시설에 상시배치 원함.

- 시설들이 복지시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인 지원필요.
- 정부는 규모가 큰 것보다 소규모의 그룹홈을 많이 권장했으면 함. 재정적 지원과 고정관념의 변화필요.
- 미신고복지시설을 신고시설로 수용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의 금전적 지원보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심필요. 행정적 관심도 요망.
- 경제적인 문제로 신고하지 못할 뿐이니 그 부분을 정부기관에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미신고시설 양성화.
- 미신고시설이지만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기회부여요망.
- 자원봉사자를 소개부탁
- 아이가 대학 진학할 경우 추가지원은 못해주더라도 지원을 중단한다(기초생활수급자제외).
- 복지행정국가의 격에 맞게 연료비지원바람. 전기료, 오염(환경)부담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
-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피부에 다가오는 복지실천요망. 어느정도 시설이 되어있으면 인가해 주길 바람.
- 미신고시설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시설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필요.
- 국가에서 책임져야만 할 복지분야에 미신고시설이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형태든 지원이 있어야 한다.
- 미신고시설 양성화요망. 증축시 신설비 지원요구. 예로써 땅을 매입하면 건물은 도에서 지원.

- 관심제고. 자원봉사인력, 후원금지원 등.
- 재정적 어려움으로 정부의 지원요구.
-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시설의 안정적 운영위한 재정지원. 증개축 시 적극적 지원. 자원봉사자구하기 어려울 때 유급직원활용방안. 퇴소 후 직장알선.
- 신고시설운영이 바람직하다. 신고시설완화. 시설원장들의 교육프로그램이수 후 복지사자격증부여.
- 미신고시설생활자 대학등록금 지원요망.
- 사회복지차원에서 국가, 지방, 사회단체에서의 행정적, 재정적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함.
- 관내에 시설이 있을 시 수시로 또는 정기적 방문을 통해 관리감독, 도움주면서 같이 키우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 좀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 및 인건비, 네트워크 구조 등 체계적인 지원필요.
- 정규 지원금을 보조바랍니다.
-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한다면 물질적 지원 등 여러 방면의 지원과 담당자분들의 관심필요.

□ 미신고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

- 미신고 시설에 대한 오해해소. 미신고 시설에 대한 후원, 지원.
- 재소자들에 대한 사회일각의 시선개선.
- 오해나 주변의 색안경으로 보지 않길 바랍니다.
- 장애인시설 건축 반대하는 민원을 방지하는 법 제정, 세입시설에게 정부소유 부동산 매입할 수 있는 정보요구.

- 미신고 시설에 관해서도 통계적인 색안경을 벗고 단점보다는 장점도 있다는 관용의 마음을 갖고 무관심에서 탈피바람.
- 한 국민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자금 보조를 받고 싶습니다.
- 미신고 시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어 애로점이 많다. 경제적 이유로 신고시설하기 어려움.
- 한국의 모든 장애인을 학계의 뜻대로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 교수 등 사회복지의 전반적 개선필요.
- 정부는 비인가시설에 대한 시선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움도 필요.
- 미인가시설이지 미신고시설이 아니다. 선행을 하면서 법을 어긴 느낌을 정부나 사회단체가 벗겨야 한다.
- 미신고시설이지만 사업의 형편, 물질적 후원에 관심을 가져주고 신뢰해주었으면 합니다.
- 미신고시설인 관계로 사회단체가 후원을 하려다가도 기관도장이 없으면 후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 미신고시설의 애로점은 기초생활의 부담감, 보편인식의 저하, 신고시설의 대형화.
- 미신고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 없애라고 하는 말을 좀 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 미신고 시설과 신고시설의 편애가 없었으면 좋겠다. 지원방법이 동일형태로 이루어지면 하는 바람.
- 불법건축이라 하지 말고 준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길 바람. 요보호 대상인들이 혜택받기 원함. 인가조치.

- 미신고시설에 있을 수 있는 장점을 인정하고 미신고의 자유를 인정 해주었으면 합니다.
- 신고시설에 비하여 복지적 차원에서 수준이 낮다는 편견이 없으면 함.
- 미신고 시설을 불신하는 풍조가 없었으면 한다.
- 미신고 단체에도 그 단체의 규모에 맞는 지원을 요망. 나쁘게만 인식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함.
- 미신고 미인가 등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해소 바람. 인건비 신축개축 비지원. 종사자들 교육기회제공.
- 도와준다는 인식을 바꿔 '그 어떤 이유로 자기 몫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몫을 돌려준다'는 인식으로 전환.
- 타시설의 사고발생 시마다 우선 조사대상으로 지목하여 범죄집단 취급 받는 일이 불편함.
- 문제발생 시 미인가시설을 주로 지목하여 조사하므로 불편. 인가시설보다 복지수준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 인식.
- 행정기관에서 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꺼려한다. 미신고 시설도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이 많았으면 한다.

□ 의료서비스 및 교육 혜택

- 소규모시설은 신고하면 얼마나 지원해줄지 모르지만 행정서류 때문에 어린이들 지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 의료보험적용대상자 선정에 있어 미인가설도 혜택 원함. 교육비지원에서도 간접적 지원 혜택 원함.
- 아이들이 국민기초수급자 책정에서 호적상 어려운 점이 많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이들도 어려움.
- 장애인들의 교육문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 입소자에게 조건없는 기초생활보장자 인정. 국고로 인력고용. 중증 장애인대상으로 보건소의 재택 진료.
- 수양부모가정에 입시 머무는 동안 의료비, 보육비가 아무 절차 없이 혜택을 받게 했으면 합니다.
- 조선족동포들에게 특히 의료혜택이 필요. 공과금 등 물질적 지원과 동포들에 대한 관심필요.

□ 허가 요망

- 신고시설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신고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해나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제도 요망.
- 미신고시설에게도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셔서 일정한 정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형식적인 절차나 시설구비에 제한 없이 미신고시설의 상황에 따라 법인신고시설로 인가 받기 원함.
- 현재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시설등록, 승인절차에 의하여 승인처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 건물증축하고 싶은데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 종사자 처우 개선(임금, 교육 혜택)

- 경력인정이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사 급수향상에 애로사항 있음.
- 근무자들의 근무 년한 인정. 기초생활보호대상 아닌 시설책임자 인건비보장. 심리 정신치료사 재정적 책임과 배정.
- 시설종사자 인건비마련.
- 미신고시설 종사자 교육의 양성화. 신고시설 종사자교육에 정보제공, 교류. 미신고시설 준한 평가요망.

- 종사자 인건비의 일부분만이라도 지원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전문가 등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실습과정으로서 비인가 시설들은 봉사경력 인정해 주지 않음.

□ 자율적 운영에 맡기도록

-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좋다.
- 행정측면에는 입소대상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현행유지바람.
- 소규모공동체처럼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다. 행정업무로 빼앗긴 시간을 공동체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다.
- 작은 시설도 그 나름대로 장점을 살려서 가정 같은 분위기와 운영의 유연성으로 잘 개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시설의 자율적이고 투명하며 객관성이 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봄.
- 시설자체의 성격에 맞게 자유보장. 의미없는 규제나 감사불필요. 최소한의 건축물, 재정지원요망.
- 소규모시설을 인정해야하며, 시설종사자가 현명한 종교인이라면 인정해야한다. 소규모시설은 종교시설을 요한다.
-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건의사항 없음. 나와 식구들이 봉사자의 도움없이 생활하고 싶음.
-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하기를 원함.
-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나름대로의 시설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간섭이나 통제로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

□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차별화 정책 반대

-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의 차별화정책 철폐하고 똑같은 대우 원함.
- 신고시설에 준하여 똑같이 이해, 취급하여 지도편달요망. 미신고 시설이 양성화되도록 지원바람.
- 미신고시설이나 신고시설이나 동등하게 혜택받고 합법적인 대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미신고시설이라도 국민의 여러가지혜택을 조금이라도 신고시설처럼 대우하여 주었으면.....
- 미시설이란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중환자를 모시고 생활한다. 시설과 같은 도움 원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보여준다.
- 정부지원받는 신고시설은 미신고시설과는 달리 공공근로 기회제공 등 많은 혜택을 받고있다.
- 미신고시설이더라도 신고시설과 동일한 환경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복지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 정부에서 시설신축위한 국가소유땅을 회사해주길 바람. 신고시설처럼 매월 운영비지원 요망.
- 정부에서 신고시설처럼 미신고시설도 매월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 시기를 원함.
-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도 신고된 시설처럼 매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해 소외감을 느낀다. 사회복지를 위한 곳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미신고시설에도 신고시설과 같이 일정규모의 정기적인 지원요망.

- 허가시설과 미신고시설 구분하지 않고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인 것인지 확실한 내용을 갖고 민간주도형으로 유도원함.
- 미신고시설이라 하여 정부지원 공동모금에서 소외감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균형적인 예산편성바람.
-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지방세, 국세)
- 신고시설은 너무도 넘쳐나는 반면 미신고시설은 너무도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 군이나 도에 도움요청하면 도와주지는 않고 해쳐버린다고 하는 어름장을 놓는다. 미시설이라서 죄인 취급받는 설움.
- 신고시설이나 미신고시설이나 무엇이 다른가! 시설지원과 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같아지길 바람.
- 미신고시설도 신고시설과 동일한 대우. 노인과 장애인, 부랑인 등 복합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의 허가 원함.

□ 시설 규정에 의한 정착화 요청

- 실직노숙인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시설규정에 의거하여 하루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 노숙자시설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신고가 안 되는데 속히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시설 확충 등 시설에 관한 규정 완화

- 미신고시설은 시설이 열악하므로 시설을 확충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무허가 건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함.
- 시설자리부족, 주민들의 항의, 무관심, 재개발될 땅 이용하기 어려움.
- 시설건축에 따른 주택용자금 용자요망
- 미신고시설에도 개축 신축 시 허가를 배려해주면 좋겠다.
- 복지시설 설립 법 기준이나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서비스체계가 필요합니다.
- 그린벨트지역에서 건물신축을 적극 강구하여 주었으면 좋겠음.
- 복지시설 허가 완화를 건의. 미신고시설도 행정 감독 원함.
- 노후건물개축. 부양의무 있으나 실재도움 주지 못함으로 수급자 선정불가. 재정적 지원.
- 정부는 신고기준 중 건축물연면적 제한을 낮추었으면 한다. 사회단체에게는 형평성있는 지원바람
- 물리치료실요망
- 폐교되는 학교를 임대하여 지역노인을 수용하기를 바람. 차제에 신고시설로 등록되길 요망
- 생활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합니다.
- 그린벨트지역이라 할지라도 노인복지시설이 절대적 부족하므로 정부는 예외규정을 적용해서라도 지원바람.
- 저는 정말 이 일을 생명을 다해 하고 싶습니다. 보람도 느낍니다. 물리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 현재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창고로만 사용하라는 관계 법령을 완화하여 강당으로 변경해 주었으면 함.
- 건축물 규제 완화요함.
- 앞으로 시설확장하여 경노회 인가를 받고 싶은 것이 부락주민의 숙원임.

□ 기타

- 호스피스시설기준법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스피스기관은 현재 의료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의료전문과정필요. 정부운영의 시범호스피스센터필요.
- 보호시설마다 1년 1회 병검진 및 관심으로 방문을 하는 사회라면 좋겠습니다.
- 정부운영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라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미신고시설에 입소문의가 많습니다.
- 너무 많아서 말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 미신고시설에 설문지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지만 제도개선은 전혀 없고 학술용으로 사용된 점이 아쉽다.
- 정신지체성인 그룹홈처럼 장애아동들에게도 정부관할 그룹홈형식의 서비스가 여러곳에서 가능해지길 원함.
- 현 결핵요양시설은 복지사각지대에 서있다. 난치성결핵합병증 환자에게 치료, 요양 및 재활프로그램이 요구됨.
-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없어 입소한 분들에게 먼저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하였으면 좋겠음.
- 서류 상으로 부양가족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행정절차 및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에 인허가를 낸다면 사명감과 기독교정신이 약해질 것 같다. 사회단체는 봉사보다는 홍보목적 많다.
- 소규모양성. 공공근로고정투입. 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완화. 보호자가 형편되는 경우는 행정법강화요망.
- 입원한 아이들의 신상을 확인해서 비치해 두었으면.....

- 신고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원인파악이 행정 편의적이다. 원인의 다양성을 포함 수용해야 신고가 자유롭다.
- 미신고에서 신고시설 시 입소자 대상을 시설에 맡김. 서류간소화요망

附錄 3. 老人住居福祉施設의 施設基準 및 職員配置基準 (第17條 第1項 關聯)

1. 共通사항

가. 施設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입소정원 10인 이상
- (2) 유료양로시설: 입소정원 5인 이상
- (3) 실비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 30세대 이상

나. 施設의 구조 및 설비

-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3)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및 다. <삭제>

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
-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 마. 유료양로시설 및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2)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 (3) 보증가입기간: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4) 보증가입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5) 보험금 수령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별 기준

1) 설비시설

시설의 종류 구분	양로시설	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설비노인 복지주택	유료노인 복지주택
설비 기준	가. 거실 나. 사무실 및 숙직실 다. 면회실 (상담실) 라. 식당 및 조리실 마. 세면장 및 목욕실 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사. 오락실 아. 체력단련실 자. 화장실 차. 의무실 카. 창고 및 부속시설 타. 등화설비 파. 소화설비 하. 자원봉사실 다만, ‘다’는 ‘하’ 와 ‘샤’는 ‘아’와 각각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사무실 및 숙직실 다. 면회실 (상담실) 라. 식당 및 조리실 마. 세면장 및 목욕실 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사. 오락실 아. 체력단련실 자. 화장실 차. 의무실 카. 창고 및 부속시설 타. 등화설비 파. 소화설비 하. 자원봉사실 다만, ‘다’는 ‘하’ 와 ‘샤’는 ‘아’와 각각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사무실 및 숙직실 다. 면회실 (상담실) 라. 식당 및 조리실 마. 세면장 및 목욕실 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세탁 물 전량을 위탁처리하 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오락실 아. 체력단련실 자. 화장실 차. 의무실 카. 창고 및 부속시설 타. 등화설비 파. 소화설비 하. 관내방송 설비 거. 취사실 (자 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거실 나. 관리실 (사무실, 숙직실포함) 다. 식당 및 조리실 라. 오락실 마. 체력단련실 바. 의무실 사. 식료품점 또는 매점 아. 등화설비 자. 소화설비 차. 경보장치 카. 관내방송설 치	가. 거실 나. 관리실 (사무실, 숙직실 포함) 다. 식당 및 조리실 라. 오락실 마. 체력단련실 바. 의무실 사. 식료품점 또는 매점 아. 등화설비 자. 소화설비 차. 경보장치 카. 관내방송설 비

※ 비 고

1. 생활지도원: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 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생활보조원: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지도원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3. 상담지도원: 입소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설비기준

① 양로시설

가. 거실

- (1) 합숙용·동거용 거실을 둘 수 있다.
-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 (3)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4)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 (5) 합숙용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 (1) 수용인원 10인까지 1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고 매 10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를 증설하여야 한다.
- (2) 대변기 수의 3분의 1 이상을 좌식 양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의무실: 진료에 필요한 상용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아. 경사로: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기타

-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실비양로시설

가. 거실

- (1) 독신용·합숙용·동거용 거실을 둘 수 있다.
-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 (3)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4)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 (5) 합숙용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 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 (1) 수용인원 10인까지 1개 이상의大便기를 설치하고 매 10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를 증설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수의 3분의 1 이상을 좌식 양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의무실: 진료에 필요한 상용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아. 경사로: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 한다.

③ 유료양로시설

가. 거실

(1) 독신용·합숙용·동거용 거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거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삭제>

(4)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거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자취형의 거실을 둘 경우 조리시설을 갖춘 취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오락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수용인원 10인까지 1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고 매 10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를 증설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수의 3분의 1 이상을 좌식 양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의무실: 진료에 필요한 상용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아. 경사로: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비노인복지주택

가. 거실

- (1) 독신용·동거용 거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2) 취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목욕실·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오락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무실: 진료에 필요한 상용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경보장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우릴 수 있도록 거실·화장실·욕실·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타

-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유료노인복지주택

가. 거실

(1) <삭제>

(2) 취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목욕실·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오락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무실: 진료에 필요한 상용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경보장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우릴 수 있도록 거실·화장실·욕실·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거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타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직원의 배치기준

① 양로시설

- 가. 시설의 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나. 총무
- 다. 생활지도원(여자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여자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 라. 생활보조원(입소자 2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마. 의사 또는 촉탁의사
- 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5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사. 사무원(입소자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아.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자. 취사부(입소자 5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차. 세탁부(입소자 5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실비양로시설

- 가. 시설의 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나. 총무
- 다. 생활지도원(여자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여자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 라. 생활보조원(입소자 2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마. 의사 또는 촉탁의사
- 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5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사. 사무원(입소자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아.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자. 취사부(입소자 5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차. 세탁부(입소자 5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③ 유료양로시설

가. 시설의 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총무

다. 생활지도원(여자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여자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라. 생활보조원(입소자 2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마. 의사 또는 축탁의사

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4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사. 사무원

아.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자. 취사부(입소자 5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차. 세탁부(입소자 5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카. 관리인

다만 10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나”. “다”. “마”. “바”. “자”. “차” 및 “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실비노인복지주택

가. 시설의 장

나. 상담지도원

다. 사무원

라. 관리인(부대복리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를 포함한다)

마. 영양사

⑤ 유료노인복지주택

가. 시설의 장

나. 상담지도원

다. 사무원

라. 관리인(부대복리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를 포함한다)

마. 영양사

附錄 4. 兒童福祉施設의 施設基準(第11條 關聯)

1. 公同시설 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규모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2)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용을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 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3세 미만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 3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 ④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 급배수시설

- ① 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 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③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 (1) 강당 또는 오락실: 66제곱미터 이상
- (2) 도서실: 열람좌석수 10석 이상, 도서 500권 이상을 갖추
- (3) 놀이터: 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소·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을 갖추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다음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1) 심리검사·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
- (2) 직업훈련장: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이 직업 훈련과목 및 그 과목 수에 따라 적절히 가감한다.

다. 자립지원시설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라. 아동상담소

- (1)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 (2) 심리검사·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 (3)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 이상

마. 아동복지관

- (1) 강당: 99제곱미터 이상
- (2) 오락실: 50제곱미터 이상
- (3) 도서실: 열람좌석수 20석 이상으로 하되, 도서 1,000권 이상을 갖출 것
- (4) 놀이터: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소,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 등을 갖출 것
- (5) 상담실: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 (6)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바. 종합시설

- (1) 당해 종합시설이 행하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놀이터,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외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유사업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조리실·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2) 거실: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 (3) 심리검사·치료실: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 (3) 심리검사·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형 숙사를 갖출 것

사. 방과후아동지도사업

-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2) 조리실 및 식당: 33제곱미터 이상
- (3) 집단지도실: 66제곱미터 이상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1조관련)

가. 건강관리

- (1) 아동의 입소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2)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3)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급식위생

- (1)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3)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상수도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규정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라.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증명서
- (3) 시설운영일지
- (4)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 (5) 예산서 및 결산서
-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8)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 (9) 소속법인인 정관 및 관계 의결서류
- (10) 입·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마.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 (1) 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보육사 기타 필요한 직원중 1인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 (2) 시설안에서는 보호아동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바. 아동의 보호조치

- (1)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한 때에는 입소된 날부터 2주동안 그 심신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 (2)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육체적·정신적 정상생활이 될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附錄 5. 障礙人福祉施設의 設置·運營基準(第33條 關聯)

I. 공통기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수련시설·장애인심부름센터·수화통역센터·점자 도서관 및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예외로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 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및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설은 각각 1인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 이상,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인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6)의 설비중 한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 (가) 겨울에도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4)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보장에 필요한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후원자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7) 조리실
 -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8)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9)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10인당 2개 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기 2개, 소변기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급·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 라. 마. 바. 아. 카 및 타의 요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의 장: 1인

나. 총 무: 1인

다.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 1인 이상. 다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간호사: 1인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0인당 1인 이상

마. 생활보조원: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는 10인당 1인 이상, 아동 및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인당 1인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4인당 1인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인당 1인 이상. 다만,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두어야 할 인원보다 1.5배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바. 영양사: 1인 이상

사. 사무원: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아. 사회재활교사: 1인 이상. 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점자해독이 가능한 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인의 여성교사를 두어야 한다.

자.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차. 시설관리기사: 1인 이상. 다만,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이 2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카. 취사원: 시설당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5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타. 세탁원: 취사원과 동일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장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입소대상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재활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직업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6.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시설별 기준

1. 설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일부로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를 겸하게 할 수 있다.

가.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시설별	설비 기준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	<p>(1)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p> <p>(가) 시설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p> <p>(나)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운동장·모래밭·경사지 등 옥외기능회복훈련장을 갖추어야 한다.</p> <p>(2)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p> <p>(가) 재활사업별로 그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나) 옥외운동장을 갖추어야 한다.</p> <p>(다)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 이상의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p>(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p> <p>(가)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훈련실 및 직업훈련용 기계·기구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나) 가능한 한 청능훈련실·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p> <p>(4)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p> <p>(가)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p> <p>(나) 중증의 정신지체인을 수용하는 거실은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p> <p>(다)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 및 2인용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p>

시설별	설비기준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행성질염 감염에 대비하여 격리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래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훈련, 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5)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진단, 치료에 필요한 각종기구와 진료실, 간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영유아들이 휠체어·유모차 등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및 주거공간 등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종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허약아·미숙아·전염가능 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격리보호실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4) 신생아를 치료·보호할 수 있는 관계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 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치료를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인 복지관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기준의 추가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다) 휴게실(또는 쉼터) (라) 직업재활실 (마)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바)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의료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장애인 주간 또는 단기보호 시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아) 기타 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보호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1) 기본설비 (가) 거실(1인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나) 조리실 (다) 화장실 (라) 기타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설비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최소 생활인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인 체육시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900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체련실 (나) 경기장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화장실 (바) 기타 장애인의 체육재활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 수련시설	(1) 대지 및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숙소(100인 이상의 동시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조리실 (바) 목욕실 (사) 화장실 (아) 기타 장애인의 수심수련에 필요한 설비
점자 도서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1) 기본설비: 사무실, 제판실, 인쇄실, 교정실, 체본실, 창고 (2) 기본장비: 제판기, 교정대, 인쇄기, 원판호책체본가공용기구, 체본작업대, 서가점자용지재단기, 지절기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인 작업 활동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7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활동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훈련성격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3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직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20인 이상으로 하고 훈련실의 규모는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훈련업종 및 시설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 생산품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은 상담 및 판매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상담 평가요원	청능 치료사	언어 치료사	보행 훈련사	근로시 설기사
(1)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 (가) 지체 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1인 이상. 다만, 시설 거주장애인이 매 3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1인 이상.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 이상.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위와 같음				1인
(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위와 같음	1인 이상	1인 이상		
(라)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지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위와 같음		1인 이상		
(2)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인 이상		
(3)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인 이상		
(4) 장애인근로 작업시설	1인 이상		1인.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 이상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20인 이상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의료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인원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인 이상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3인 이상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바) 장애인체육시설: 3인 이상

(사) 장애인수련시설: 5인 이상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전원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자) 수화통역센터: 3인 이상

(차) 점자도서관: 관장,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각 1인 이상. 다만, 교정원은 점자지도원이 겸할 수 있다.

(카) 점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소장, 편집인, 재판원, 교정원, 인쇄원, 제본원 각 1인 이상

(2)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구분	자 격 기 준
관장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사무국장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1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구분	자격기준
3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9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기능직	운전·타자·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고용직	청소·취사 및 세탁 등 당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점자도서관·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편집원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 기타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Ⅲ. 시설운영의 기준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 나.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한다.
- 다. 입소 또는 이용 대상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건강관리

- 가.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시설거주자 건강관리의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의한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를 두어야 한다.
- 다.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라. 생활시설의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급 식

생활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

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잡지·라디오·도서(특히 시각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점자도서 등)를 비치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적절한 오락용품도 갖추어 시설거주자 등의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다.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시설거주(이용)자의 생활수칙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바.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 (1) 직원관계철
- (2) 회의록철
- (3) 사업일지
- (4) 문서철
- (5) 문서 접수·발송대장
-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 (1) 시설거주(이용)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3)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 (4) 급식관계대장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3) 예산서 및 결산서
- (4) 비품수불대장
- (5) 비품(장비)대장
-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8)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음의 장부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 (2) 자재(원료)구매대장
- (3) 자재(원료)수불부
- (4) 제품수불부
- (5) 제품매출대장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 가.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장비 및 도구의 정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거주자

- 가. 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거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인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설안에서는 시설거주자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9. 시설의 개방운영

- 가. 시설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사업

가.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의학적·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나.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재활훈련은 시설안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 기타 시설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라. 시설종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A. 장애인생활시설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료재활

의료재활은 다음의 치료와 훈련을 혼합하여 행한다. 다만, 그 세부적 방법은 보편화된 치료방법과 훈련방법에 의한다.

(가) 의학적 진단

의학적 진단은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현 증상과 치료에 의한 기능적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재활치료

정형외과적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 재활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심리·사회적 재활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거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각 개인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와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 ① 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 ① 집단지도로서 연극·레크리에이션, 각종 그룹활동 및 토론 등을 실시한다.
- ② 개별지도로서 심리요법적 상담지도를 행할 때에는 그 심리적 재활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처치, 기능회복훈련 등 재활지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시설거주자의 적성에 따라 준비훈련 및 응용훈련을 나누어 실시한다.
- (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훈련과목은 시설의 작업환경,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
되, 장애인의 희망, 적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당해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과목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교육재활

교육재활은 해당 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
에 의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

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현 증상과 그 기능적 상태를 정확히 파
악하고 그에 알맞은 재활훈련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과목의 직업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고 다
음의 준비훈련 및 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생활훈련

시설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에 숙달되도
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보행훈련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의사소통훈련

점자, 통신, 컴퓨터 등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CCTV사용훈련

저시력자의 시력 활용 증진에 관한 훈련 및 보조기기 활용

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의학적 진단에 있어서는 임상진단과 동시에 청각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치료에 있어서는 시설거주자의 장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의 방침을 세워야 한다.

(2)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청력의 검사는 주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행하되, 난청의 종류·청력손실·연령 등에 의하여 타각적 청력검사·어음명료도 검사 등도 함께 행할 수 있다. 또한 청력검사는 청능훈련 및 독화 훈련 중에도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한다.

(3) 청각훈련

(가) 보청기 사용훈련

보청기 사용훈련은 보청기의 일일 사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청기의 검사 및 선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① 보청기의 검사는 그 출력·감도·주파수의 특성·음량압축·내구력 등 그 성능에 관하여 상세히 하여야 한다.
- ② 보청기의 선정은 청력측정 및 어음명료도 검사 등에 의하여 청력장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보청기의 착용에 의하여 어음명료도 및 어음쾌적도의 검사를 행한 후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청능훈련

청능훈련은 잔존 청력을 훈련하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능훈련 기

재 등을 이용하여 음성 및 언어에 따라 판별능력을 훈련함과 동시에 도로·집회장 등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훈련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독화훈련

독화훈련은 청각을 대신하여 회화의 이해를 쉽게하는 것으로 청능훈련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운동기능훈련

평형기능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원인 및 종류에 따라 운동기능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4) 음성·언어기능 재활훈련

시각적 방법·촉각적 방법 등과 특수한 기계장치 활용에 의한 언어기능 재활훈련을 실시하되,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과 관련시켜 실시하여야 한다.

(5)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보청기 등의 활용에 의하여 직업적응이 쉽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재활·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사회적 개발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직업훈련 과목은 그 지역의 실정과 시설거주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종을 광범위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지도

필요한 경우 시설거주자가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를 하되,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리·사회적 재활 및 의료적 재활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사회적, 의료적 재활사업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 ① 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되, 특히 정신지체인 또는

(4) 직업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직업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직업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 보호조치

- (가) 시설내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 (다) 입소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단보호와 함께 개별보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거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료재활

- (가) 잔존기능의 퇴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재활의학치료, 소아과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 (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 (다) 특수 보장구를 이용하여 대체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생활지도

-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 등 정서의 안정 및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생활 지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 (나) 전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일상생활에 있어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 시설거주자 및 보호자 가족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상담 활동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4) 특수교육

유치원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5) 다른 시설로의 전원

시설거주자중 잔존능력의 향상으로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에 적합한 다른 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내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장애영유아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있어서의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조기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조기특수교육사업이 전개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른 시설로의 전원

장애영유아의 잔존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때, 또는 유아기가 지나 7세 이상이 된 때에는 장애유형에 알맞은 다른 생활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B.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의 복지요구를 고려하여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C.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교육·훈련

이용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재활사업

(가)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와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다) 작업훈련: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라) 통근훈련: 지역사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 (마) 취미 및 여가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 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훈련관리

-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 및 직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 재활사업

(가) 보호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직업전훈련: 기능학습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 ② 직업적응훈련: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 ③ 직업평가: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 ④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 ⑤ 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
- ⑥ 전환고용훈련

(4) 작업환경

(가)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 재활사업

(가) 근로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재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

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은 다음의 내용으로 주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사회적응훈련: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 ② 직업평가: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 ③ 취업 및 사후지도: 직업상담, 알선, 사후관리
- ④ 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전환고용, 지원고용

(2)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통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근로환경

(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라)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 용도외에는 사

용할 수 없다.

- (마)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 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1) 직업훈련·평가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잠재능력과 현재의 직업능력의 수준을 파악,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직업평가, 고용알선(지원고용 포함), 사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활사업

- (가) 직업준비훈련: 기술훈련이나 취업에 앞서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의식, 태도, 예절 등을 훈련하여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나) 직업훈련: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기술과 기능을 훈련하여 적합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능인으로 양성한다.
- (다) 사회적응훈련: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술 외에 각종 지역사회 시설 이용, 대인관계, 직장예절, 작업태도, 금전관리기술 등을 습득하여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 (라) 상담지도: 개인의 신상, 사회적응, 동료관계, 가정문제 등을 상담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여 원만한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한다.
- (마) 현장훈련 및 고용전환: 현장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바)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훈련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합직종에 취업을 알선하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사업내용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 (가) 상담사업: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조달관련사업 등
 (다) 홍보사업: 홍보물의 제작, 배포
 (라) 개발사업: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

(2) 생산품 선정 및 관리

-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판매제품 선정시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과정에 70퍼센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마)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판매기술의 확보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D.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과 같다.

附錄 6. 母子福祉施設의 施設基準(第10條 第1項 關聯)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교통편의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성질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재해방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시설별기준

구분	모자보호 시설	모자자립 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 시설	여성복지관
1. 시설의 최소 면적	44㎡×입소정원세대	44㎡×입소정원세대	20.79㎡×입소정원	9.9㎡×입소정원	
2. 시설의 규모	상시 20세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상시 1세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상시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3. 설비 시설	가. 거실 (부엌을 포함함) 나. 사무실 다. 상담실 라. 도서실 또는 오락실 마. 화장실 바. 경비실, 창고 등 부속시설 사. 급수 및 배수시설 아. 소화설비	가. 거실 (부엌을 포함함) 나. 사무실 (입소정원 세대가 5세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입소정원 세대가 30세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라. 화장실 마. 경비실, 창고 등 부속시설 (입소정원 세대가 5세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바. 급수 및 배수시설 사. 소화설비	가. 거실 나. 사무실 다. 교양교육실 라. 의무실 마. 상담실 바. 도서실 또는 오락실 사. 산후회복실 아. 식당 및 조리실 자. 목욕탕 차. 화장실 카. 경비실, 창고 등 부속시설 타. 급수 및 배수시설 파. 소화설비	가. 거실 나. 사무실 다. 목욕탕 및 화장실 라. 소화설비	복지·평생교육·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시설

※ 비고: 각 시설별 부지면적은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거실

- 1)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 3)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며, 거실의 실제 면적은 세대당 27.65㎡ 이상이어야 한다.
- 4) 미혼모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이용자 1인당 3.3㎡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교양교육실

교양교육을 위한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의무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 등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도서실 또는 오락실

- 1) 도서실의 열람좌석의 수는 10석 이상(부녀복지관의 경우에는 30석 이상)이어야 하고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서적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오락실은 적당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산후회복실

분만 후 산부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식당 및 조리실

- 1) 식탁·의자 등 식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조리실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목욕탕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 세탁장 및 건조실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카. 화장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되,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타. 급·배수시설

- 1)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물에 의하되 우물의 주위에는 변소·하수저류장 등이 없어야 한다.
- 2) 우물의 경우에는 우물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우물에 뚜껑을 덮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더러운 물·빗물 등이 잘처리 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한다.

파. 비상재해대비 시설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 모자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총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 분야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행정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여성학·사회학·사회사업학·법학·신학·의학·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시설장의 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附錄 7. 浮浪人福祉施設設置·運營規則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동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랑인(浮浪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를 말한다.
2.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부랑인의 보호 및 재활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 2 장 입·퇴소관리

제3조(입소대상)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호기관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랑인

2.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부랑인
3.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설보호의 요청을 받은 부랑인

제4조(보호기관의 입소요청) 보호기관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을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랑인시설보호요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병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입소요청)

- ① 관계기관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을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랑인시설보호요청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부랑인시설보호를 요청받은 때에는 보호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랑인시설보호요청서의 접수인란에 날인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관계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랑인시설보호요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병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보호)

- ① 보호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부랑인을 시설에 위탁

하여 보호하되,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시설의 장은 위탁보호 기간 중 당해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조사·상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보호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 ① 부랑인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에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문가, 종교인, 의사, 교육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시설의 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보호기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기관이 정한다.

제8조(입소심사)

- ① 보호기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퇴)소심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에 기재하여 이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이 시설에 위탁보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 입소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대상자를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의 입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랑인입소의뢰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심사)

-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된 자(이하 “원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원생 중에 퇴소를 원하는 자 또는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의 장은 퇴소를 원하거나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를 작성하여 보호기관에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랑인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당연퇴소)

- ① 보호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연고자가 원생의 인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연고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퇴소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와 원생의 사망 또는 무단퇴소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퇴소보고서에 의하여 보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2. 입소정원 1인당 면적을 15.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입소정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갖추는 것

$$\text{시설 면적} = 15.48 \text{제곱미터} \times 100 + 15.48 \text{제곱미터} \times 0.7(\text{입소정원} - 100)$$
3.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침실의 면적은 원생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남·녀별, 장애별로 구분하여 보호할 것
5. 정신질환자·알코올중독자 및 전염병환자 등은 격리하여 수용할 것
6.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설비를 갖추는 것
 - 가. 위탁보호실
 - 나. 의무실
진찰·건강상담 등 치료를 위한 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다. 전문상담실
상담을 위한 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 라. 직업훈련실
입소자의 재활을 위하여 소질에 따라 필요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실 및 직업훈련용 기계·기구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마. 도서실 또는 오락실
원생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서적류와 적당한

오락용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바. 조리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목욕실

아. 수세식 화장실

자. 급·배수시설

차. 비상재해대비시설

카. 적당한 면적의 옥외운동장

타. 주·부식 및 시설의 비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적당한 면적의 창고시설

제12조(종사자)

① 18세 이상의 부랑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1. 시설장: 1인
2. 총 무: 1인
3. 상담원(사회복지사 1급): 1인 이상
4.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원생 50인당 1인 이상
5. 의사 또는 축탁의사: 1인 이상
6.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사: 1인 이상
7. 보조원: 원생 50인당 1인 이상
8. 영양사: 1인(원생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9. 사무원: 1인 이상
10. 경비원: 1인 이상
11. 설비기사: 1인 이상

12.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 ② 18세 미만의 부랑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1. 시설장: 1인
 2. 총 무: 1인
 3. 상담원(사회복지사 1급): 1인 이상
 4. 보육사: 원생 10인당 1인 이상
 5.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 이상
 6.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사: 1인 이상
 7. 영양사: 1인(원생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③ 상담요원은 원생의 상담·관찰 및 연고자 확인에 관한 사항과 원생의 분류(직업보호대상·전원조치대상 및 장기보호대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월 1회 이상 원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④ 생활지도원은 매일 원생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생관리기록)

- ① 시설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원생연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원생의 신상기록카드와 원생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연고자 조회)

- ① 시설의 장은 매 분기마다 연고지의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연고자확인의를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연고자를 조

회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연고자 확인의뢰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고자조회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관리) 시설의 장은 원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원생의 입소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2. 시설안에서의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원생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원생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비치할 것

제16조(급식위생) 시설의 장은 원생의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원생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3. 전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

- 4.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할 것

제17조(후생복지의 증진)

- ① 보호기관은 원생이 자유로운 전화연락 또는 서신연락을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와 우체통을 원생의 사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의 장은 원생의 자율적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원조치 등) 시설의 장은 원생의 성별·연령별·직업별 특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거나, 관찰·지도를 하고 특이한 사항은 이를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경과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에 대한 교육보호) 시설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에 준하여 보호중인 아동을 취학시켜야 한다.

제20조(사망자의 처리)

- ① 시설의 장은 원생이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교부받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② 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③ 시설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망자처리사항보고서에 의하여 원생의 사망일시·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관에 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품의 보관 등) 시설의 장은 부랑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때에 소지한 금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원생이 퇴소할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0. 입소자의 입·퇴소명단, 보호의 경과 및 지도와 신상에 관한 서류
11. 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제 4 장 직업보도관리

제23조(직업보도)

-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여건, 원생의 적성 및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

하여 필요한 직업보도를 실시할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의 장은 원생으로 하여금 무리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설의 장은 원생으로 하여금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보도 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직종) 시설의 장은 지역여건, 원생의 적성 및 취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자활이 가능한 직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5조(작업시간) 직업보도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수익금관리)

- ① 직업보도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그 직업보도에 따른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은 원생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생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원생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퇴소 후 자립·자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요구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원생의 퇴소시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작업환경)

- ① 시설의 장은 작업상의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설비를 갖추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업보도에 따른 안전과 보건의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의 장은 원생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8조(실적보고)

- ① 시설의 장은 매월 보호기관에게, 보호기관은 매 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업보도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직업보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실적보고에 따른 분석결과 직업보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종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 장 지도·감독

제29조(보고)

- ① 시설의 장 및 보호기관은 원생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매주 1회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랑인복지시설원생현황에 의하여 원생의 변동상황을 보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보호기관은 월 1회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랑인복지시설원생현황에 의하여 시설별로 원생의 변동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매 분기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랑인복지시설원생현황에 의하여 시설별로 원생의 변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감독) 보호기관은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著者 略歷 □

● 金 美 淑

美國 University of Akron 社會學 碩士
美國 Purdue University 社會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主要 著書〉

『女性社會福祉人力 地位向上 方案』, 保健福祉部·韓國保健社會
研究院, 2001.(共著)

『2001年度 公務員의 삶의 質에 관한 研究』, 中央人事委員會·韓國
保健社會研究院, 2001.(共著)

● 趙 娟 淑

明知大學校 哲學 博士(行政學 專攻)
現 明知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客員研究員

● 鄭 茂 晟

美國 University of Chicago 社會福祉學 博士
現 가톨릭大學校 社會福祉學科 教授

● 鄭 熙 貞

延世大學校 社會福祉學 碩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研究員

研究報告書 2001-24

未申告 社會福祉施設의 實態分析과 改善方案

A Study on Unregister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Related Policy Issues

2001年 12月 日 印刷 畵 7,000원

2001年 12月 日 發行

著 者 金 美 淑 外

發行人 鄭 敬 培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02) 380-8000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대명기획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2001

ISBN 89-8187-259-7 93330